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교수)
조운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 ▶ 보조연구원 : 이상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매매에 관해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안마련을 위해 2차년도에 걸쳐 기획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책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성가족부의 관계자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현장전문가, 공동연구자로 수고해 주신 윤옥경교수님, 조운오교수님과 그 외 자문위원 및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담당한 이유진박사와 강지명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전문가 의견조사(예비조사 7명, 설문조사 484명)와 면접조사(14명), 사례조사(6개 지역)를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 정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연계되었다가 나중에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연계됨으로써 2차피해를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해청소년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욕구가 높았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부모가정인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불안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 결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이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 제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강화,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그것을 노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설 및 아동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을 학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지역연대 예방사업이 쉽게 읍면동 단위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범죄예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실제 성범죄 문제행동의 변화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단계별로 구체화시켜 운영해야 하며, 각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적합한 모델은 가족집단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가해자 유형패널을 통해서 심적 치유가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연구목적

-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의 흉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과 전자발찌의 소급입법이나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주민고지제도 등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음.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그 동안의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음. 또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프라와 성인여성 대상의 인프라를 통합해가는 추세에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안전망으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의 확대가 요망됨.
-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는 성폭력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학교폭력으로써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청소년이고,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심각한 고통이 따르므로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피해자의 화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회복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임. 성폭력 관련 시설은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임.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전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성폭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Wee센터를 포함했음. 각 시설별 종사자 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추산으로 총 1,382명임. 전문가 의견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진행되었음. 먼저 예비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별로 각 1명씩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음.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본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들 중에서 30% 내외의 회수를 목표로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음. 484명의 조사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35%), 회수된 설문지 전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음. 이들 자료에 대해 SPSS/WIN(ver.12.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했고,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했음.

○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받고 있는 가해청소년과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임. 가해청소년 4명, 피해 아동·청소년 6명, 보호자 4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 사례조사는 6개 지역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담당공무원을 만나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하였음. 여성가족부로부터 추천받은 우수사례 해당기관으로 대상기관은 강원도청, 순천시청, 경상남도청, 서울 중랑구청, 경기도 군포시청임. 조사기간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3. 주요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의 우선순위는 1순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순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3순위 ‘성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1순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순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3순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순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음.
-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 모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과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성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란물 등 유해환경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면접조사

○ 피해아동·청소년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연계되었다가 나중에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연계됨으로써 2차피해를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 형태의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고,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소규모 성교육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피해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해청소년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욕구가 높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욕구를 나타냈음.

○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형량이 강화되고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형과 같은 강력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부모가정인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불안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사례조사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이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연대 회의 시 상담소나 지원센터에 비해 범죄예방을 본 업무로 담당하는 검찰, 법원, 교정 등의 국가기관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지역연대는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내 사업들이 지역연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연대는 기존 사업들과 지역연대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지역연대에서 1차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은 잘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아동·성폭력 사후 피해지원 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지역연대가 남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의 지역연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 지역연대 운영비는 720만원 정도로 대부분 참가 위원들의 인건비 및 식사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피해자 생활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많은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함.
-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성폭력 매뉴얼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학교를 떠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함.
-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과 함께 이미 6개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동성폭력 대응매뉴얼이 실제상황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이나 갈등조절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강화되어야 함.

- 성폭력은 가정폭력, 성매매와의 중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궤적을 미루어볼 때 지원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전문가들은 성폭력의 피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축적과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모두 갖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그것을 노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함.
- 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함.
-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needs)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피해자와 청소년 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성폭력의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중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병행하여 상담, 치료,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이 필요함.
-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간의 기관간 연계와 협력은 서비스 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역할 중복 조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필요함.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이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므로 학교에서 관련 수업시간과 연계되어 안전지도 제작을 필수 수업 내용으로 지정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된 안전지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임.
- 지역연대를 통해 피해 고위험 아동의 반복피해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 개입,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안에 따라 피해아동 지원 문제를 지역연대 속에서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 및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개입할 방안이 필요함.

○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연대가 필요한데,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역연대 예방 사업이 쉽게 읍면동 단위로 전파될 수 있음.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비용-편익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여성아동은 보통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남성아동에 대한 지원 여부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는 지역이 대다수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사후지원 서비스가 지역연대를 통해 보다 일반화·전문화될 수 있다면, 그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별-적합 치료 차원의 남성 피해아동에 적합한 개별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역연대에서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의 성폭력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면, 국가 범죄예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실제 성범죄 문제행동의 변화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단계별로 구체화시켜 운영해야 하며, 각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적합한 모델은 가족집단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우선, 기소전, 재판단계, 교정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성사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기소중지, 양형에서의 참작, 가석방에서의 고려 등 다양한 단계에서 회복되는 만큼 다양한 법적 효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밀행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공동체 구성원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피의사실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형사조정위원의 비밀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와 가해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할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이 경우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가 중점이 되어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음. 현재에도 형사합의를 통해서 감형의 효과를 노리는 가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음.
-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화해권고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적용이 가능할 것임.

- 당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가해자 유형패널을 통해서 심적 치유가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패널이 서로의 비밀을 엄수한다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심리적 치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	9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9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현황	9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11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	11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71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81
1)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	8
2)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0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론	24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	24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결과	26
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관련연구	27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8
1) 회복적 사법정의모델의 배경	92
2) 공동체의 구축과 회복적 사법	24
3) 성폭력사건과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64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외국사례	75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9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정책 분석	9
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법령 분석	4
2.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17
1) 미국	117
2) 호주	123
3) 독일	129
4) 일본	145
제 4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73
1. 조사개요	173
1) 전문가 의견조사	173
2) 면접조사	177
3) 사례조사	179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80
1) 예비조사	180
2) 설문조사	195
3. 면접조사 결과분석	210
1) 가해청소년대상 면접조사	210
2) 피해아동·청소년대상 면접조사	215
3)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대상 면접조사	218
4) 소결	223
4. 사례조사 결과분석	225
1) 강원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5
2) 순천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6
3) 경남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6
4) 대전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6
5) 서울 중랑구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6
6) 경기 군포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6

제 5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7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269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269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275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28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278
2)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	28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25
1) 법적 과제	285
2) 실무적 과제	288
3) 단계별 운영방안	290
4) 활용능력 제고방안	291
 참 고 문 헌	 295
 부 록	 307
1. 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31
2. 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31
3.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지	318
4.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320
5. 피해아동·청소년 부모 면접조사지	322
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조사지	324

표 목 차

<표 II-1-1> 성폭력피해 신고 현황	0 1
<표 II-1-2>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0 1
<표 II-1-3> 성폭력 가해자 현황	1 1
<표 II-5-1>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의 비교	1 3
<표 II-5-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	8 4
<표 II-5-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4가지 모델의 비교분석	9· 4
<표 III-1-1> 통합지원센터 설치현황	3 6
<표 III-1-2> 통합지원센터 비교	3 6
<표 III-1-3> 해마라기 아동센터 설치현황(9개소)	4· 6
<표 III-1-4> 해마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현황	56
<표 III-1-5> 성폭력상담소 현황	6 6
<표 III-1-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	7 6
<표 III-1-7>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표준운영모델	4· 7
<표 III-1-8>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9 7
<표 III-1-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4 8
<표 III-1-10> 서비스별 제공 내용	6 8
<표 III-1-11> 소년원의 성폭력예방교육현황	9 8
<표 III-1-12> 소년원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실시인원	9· 8
<표 III-1-13> 수강명령 대상자 중 분야별 집행 현황	0 9
<표 III-1-14>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내용	0 9
<표 III-1-15> Wee 프로젝트 체계	4 9
<표 III-2-1> 형법범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641
<표 III-2-2> 강간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741
<표 III-2-3> 강제추행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741
<표 III-2-4> 형법범에 관계되는 13세 미만의 아동의 피해건수의 추이 ..	741

<표 III-2-5> 13세 미만의 아동의 죄명별 피해상황	841
<표 III-2-6> 복지법의 피해소년의 학력별현황	941
<표 IV-1-1> 조사대상시설의 전국분포 현황	471
<표 IV-1-2> 전문가 의견조사(예비조사) 대상자의 특성	671
<표 IV-1-3>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671
<표 IV-1-4>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81
<표 IV-1-5> 사례조사 대상자의 특성	81
<표 IV-2-1> 예방 정책	95
<표 IV-2-2> 피해지원 정책	91
<표 IV-2-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61
<표 IV-2-4> 13세 미만 및 13-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의 필요성	17
<표 IV-2-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구축과 공동체의식회복 도움도에 대한 의견	201
<표 IV-2-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02
<표 IV-2-7>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203
<표 IV-2-8>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대책의 개선사항	402
<표 IV-2-9>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	502
<표 IV-2-10>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205
<표 IV-2-11>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의 실효성 정도	9
<표 IV-2-1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20
<표 V-3-1>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가능한 방안	092
<표 V-3-2>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	192

그림 목 차

【그림 II-5-1】	회복적 사법원리의 실현단계	74
【그림 III-1-1】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8
【그림 III-1-2】	연계체계	6
【그림 III-1-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48
【그림 III-1-4】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도	58
【그림 III-1-5】	교육적 선도 대상청소년 지원내용 및 교육절차	78
【그림 III-1-6】	Wee 프로젝트 전체 체계	29
【그림 III-1-7】	Wee 프로젝트의 체계도	39
【그림 III-2-1】	호주의 아동 보호 종합대책 “공중보건 모델”	126
【그림 III-2-2】	일본의 성범죄자의 소재확인제도의 개요	71
【그림 III-2-3】	우라소에마키미나토(浦添牧港) 소학교구 안전지도	361
【그림 III-2-4】	기타야나히노데(北矢名日の出)자치회 수상한 자 지도	461
【그림 III-2-5】	나라사키시립(葦崎市立)나라사키북동(葦崎北東)소학교 지역안전지도	166
【그림 IV-2-1】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81
【그림 IV-2-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민간 주도 재구성에 대한 의견	91
【그림 IV-2-3】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	92
【그림 IV-2-4】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 처우여부	92
【그림 IV-2-5】	남성 아동이나 남성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07
【그림 IV-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208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¹⁾

1. 연구목적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매매에 관해 많은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안마련을 위해 2차년도에 걸쳐 기획되었다.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책으로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의 흉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과 전자발찌의 소급입법이나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주민고지제도 등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감독·치료 등 가해자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개선에

1)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그 동안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피해자 관점의 선행연구가 적지 않게 수행되었는데,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다. 성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연령인지적인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프라와 성인여성 대상의 인프라를 통합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 없이 함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나간다는 공동체의식이 있다면 흉악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안전망으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의 확대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연대의 소규모화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는 성폭력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폭력유형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향후 문제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학교폭력으로써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청소년이고,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심각한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인 가해자에 비하면 경미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격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가해자에 대한 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피해자의 화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회복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폭력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하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책 및 피해자 지원방안과 관련된 입법례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책 및 피해자 지원방안과 관련된 정책사례를 수집해 분석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현장전문가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연대 사례를 수집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공식통계 자료 등을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례 등에 관한 문헌자료를 살펴본다.

둘째, 조사연구²⁾로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양적 방법으로는 성폭력 관련

2)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4장 제1절 조사개요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시설 종사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질적 방법으로는 성폭력 관련 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욕구를 파악한다. 또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이 외에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론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³⁾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폭력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유형·무형의 강제력 행사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유재두·송병호, 2009 : 138; 이재희·이기숙, 2009 : 163; 이춘화, 2011 : 66-67, 재인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란 이러한 성폭력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및 제6호의 죄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현황

성폭력피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3)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발생건수는 21,848건으로 2010년 대비 7.23% 증가하였다. 검거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18,469건으로 2010년 대비 2.24%가 증가하였다. 검거인원은 2011년 20,159명으로 그중 구속 조치가 2,612건, 불구속 조치가 17,547건을 차지했다. 검거인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에 비해 구속조치는 2007년 18%, 2010년 15%, 2011년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성폭력피해 신고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조 치	
				구속	불구속
2007년	15,325	13,940	16,500	2,927(18%)	13,573 (82%)
2008년	17,178	15,609	17,825	3,157(18%)	14,668 (82%)
2009년	18,351	17,027	18,810	2,811(15%)	15,999 (85%)
2010년	20,375	18,065	19,712	2,973(15%)	16,739 (85%)
2011년	21,848	18,469	20,159	2,612(13%)	17,547 (87%)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표 II-1-2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	15,325	17,178	18,351	20,375	21,848(100%)
13세 미만 (총계 대비%)	1,081(7.1%)	1,220(7.1%)	1,017(5.6%)	1,179(5.8%)	949(4.7%)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발생 현황 중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총 발생 15,325건 중 13세 미만이 1,081건(7.1%), 2008년에 총 17,178건 중 1,220건(7.1%), 2009년에 총 18,351건 중 1,017건(5.6%), 2010년에 총 20,375건 중 1,179(5.8%), 2011년에는 총 발생 21,848건 중 13세 미만 대상 발생 건수가 949건으로 총계 대비 4.7%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해마다 총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발생건수는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16,500	17,825	18,810	19,712	20,159(100%)
19세 미만	1,890(11%)	2,346(13%)	2,583(14%)	2,452(12%)	2,199(11%)
19세 이상	14,120(86%)	14,766(83%)	15,924(85%)	16,876(86%)	17,633(87%)
미상	244	342	303	384	327(2%)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가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검거인원 총 16,500명 중 19세 미만이 1,890명(11%), 19세 이상이 14,120명(86%), 미상이 244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총 17,825명 중 19세 미만이 2,346명(13%), 19세 이상이 14,766명(83%), 미상이 342명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총 18,810명 중 19세 미만이 2,583명(14%), 19세 이상이 15,924명(85%), 미상이 303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총 19,712명 중 19세 미만이 2,452명(12%), 19세 이상이 16,876(86%), 미상이 384명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에는 총 20,159명중 19세 미만이 2,199명(11%), 19세 이상이 17,633명(87%), 미상이 2%인 327명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가해자중 19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5년 평균 12.2%이고, 2009년부터는 19세 미만의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⁴⁾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

성폭력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성폭력이 발생한 나이, 성폭력의 기간과 빈도,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그 피해와 후유증이 달리 나타난다(주소희, 2010 : 35).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인피해자와는 달리 아직 성장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신기숙, 2011 : 1256).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피해자들보다 불안장애, 공포, 우울증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4) 이 부분은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있다(Friedrich, 1990; 권희경, 장재홍, 2003 : 36에서 재인용). 성폭력이 다른 폭력에 비해 아동·청소년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아동의 정신성적 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신의진, 2010 : 173). 또한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도 피해경험의 회복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경험을 노출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 노출되고 주위로부터 지지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와 부정적인 평가와 해석이 뒤따르는 경우, 그리고 피해에 대한 귀인여부에 따라서도 성폭력 피해의 증상과 그 정도는 달리 나타난다(이신영, 박선영, 2010 : 31).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해마라기 아동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어린이성폭력과 성인성폭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아동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성인을 압도할만한 신체적인 능력이 없다.
2.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
3. 성폭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4. 특히 2세에서 7세에 이르는 어린 아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는 다르게 사물을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해자와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 따라서 폭행현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 아동들은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도 그 일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기도 나쁘다고 간주하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받게 되는 경우 그 말을 따르게 된다.
6. 아동의 보호자가 그 일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분개하여 이성을 잃거나 지나치게 불안과 걱정이 증가하게 되면 아동의 죄책감을 증가시키거나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7. 부모나 보호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 아동은 자신의 혼란감을 억제하면서 표면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애쓰기도 한다.

(<http://www.child1375.or.kr>, 2012.06.08.)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피해 이후의 경험에 있어서의 독특성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 피해의 증상을 피해 직후 나타나는 급성 증상과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증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증상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 급성단계

- 혼란스러움/기억상실 및 해리
- 악몽과 수면장애
- 신경질/짜증
-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 울음이나 안절부절
- 식욕부진이나 섭식장애
- 수치심/부끄러움
- 분노
- 죄책감/자기혐오/열등감
- 의욕상실
- 억압(혼란함과 불안감을 억제)

○ 만성단계

- 자존감 와해, 무력감, 만성적 우울증
- 퇴행행동이나 관심끄는 행동
- 불면증
- 두통, 복통
- 부적절한 성행위나 자위행위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한 행동
-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또는 유혹하는 태도
- 집중력 저하, 학업성적 저하
- 등교거부
- 또래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증상들은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학령전)인지 학령기 아동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학령전 아동

손가락 빨기, 대소변 실수, 지나치게 부모에게 매달리는 퇴행행동
 악몽
 분리불안
 성에 대한 관심 증가
 자위행위의 증가

○ 학령기 아동

우울
 공격성과 권위에 반항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
 부정적인 신체상
 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주의집중력 약화 및 학업부진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http://www.child1375.or.kr, 2012.06.08.)

종합해 보자면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주변사람들의 태도의 파악에서부터 성폭력 이후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후유증과 학업생활,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활동 영역에서의 변화까지를 단기적 증상과 장기적 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성폭력 피해당시의 연령에 따른 증상의 차이와 욕구의 차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 피해자의 심리 진행 단계

주소희(2010 : 37-38)는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진행단계를 여섯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충격 및 혼란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과 함께 아무일도 아닌 듯 간주하려는 마음과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좌절감 사이에서의 혼란함,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둘째는 부정의 단계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진다.

셋째 단계는 우울 및 죄책감의 단계로 수치심과 자기비난과 절망감이 혼재하는 시기이다.

넷째 단계는 공포와 불안감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보여줄 반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을 약점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는 단계이다.

다섯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분노, 사법기관이나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주위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전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전체 남성에게 대한 분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재수용의 단계로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삶이 그 사건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과 기대감, 그리고 자기자신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진행단계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경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2) 심리적 증상들

아동기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피해아동들이 정서장애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면 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Mash and Wolfe, 1999; 박태영, 박소영, 2007 : 346에서 재인용).

또한 일회적인 성폭력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상처가 더 깊고 친족으로부터의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보다 상처가 더 깊다고 한다.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반응이 피해자의 피해극복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특성이다. 가족들이 성폭력을 수치로 느끼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성폭력 피해아동의 상처는 더 크다고도 한다(박태영, 박소영, 2007 : 346).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의 하나인 신기숙(2011)의 연구에서는 강간이나 유사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12세에서 15세(아동후기단계) 사이의 피해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피해양상을 피해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피해아동은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의 경험은 그들의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로 인한 장기적 영향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증상과 행동들을 분석해내고 있다.

신기숙(2011 : 1278)은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에 대한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보면 가해자의 성행동이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불안, 공포, 슬픔, 두려움 등의 정서반응이 나타나지만 상황에 압도되어 강한 저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사건 후에는 슬프고 두렵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수면장애나 악몽, 섭식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사건에 대한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떠오르게 된다.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사건에 대한 소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건이 알려졌을 경우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왕따에 대한 두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아동들은 소문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니던 학교를 전학하거나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은 성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켜 부정적 남성관과 성적 혐오감, 증가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컸다는 내적 귀인을 가지는 경우가 15사례 중 14사례나 되었으며 자기이미지도 내 몸이 더럽혀졌다거나 가치가 없어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후기 성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증상과 생각변화 등을 분석한 후 이러한 결과를 10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한 것을 보면 심리적 피해의 양상은 유사한 특성을 보였지만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아동후기 연령의 피해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서 피해아동들의 남성에 대한 혐오감, 학업중단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성을 가졌거나 성관계를 원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성적인 피해 및 후유증

성폭력피해로 인해 ‘성행동은 무섭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거나 성기능장애,

성적 활동의 감소, 성만족도 저하, 성에 대한 피해망상적 사고 등 성기능 및 성활동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성인피해자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증상(권희경, 장재홍, 2003 : 36)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성활동이 활발해 지거나 성적인 표현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Glasser와 Frosch(1988)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놀이나 말에서 잦은 성적인 몰두나 표현을 하며 잦은 성애적 관계를 맺고 잦은 자위행동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성적인 요구에 대해 무력감을 경험하였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성간의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받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주소희, 2010 : 42에서 재인용). 가해자의 눈을 통하여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게 되며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행위를 애정과 친밀함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다(권희경, 장재홍, 2003 : 37).

권희경과 장재홍(2003)은 성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성적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부적절한 성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행동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자포자기에 의해 성매매나 원조교제에 쉽게 빠지고 자기의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자신을 손상된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어 성적으로 무가치하고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손상된 상품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가 모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의 성적 요구에 대해 적절히 거절하지 못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으로 성관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권희경, 장재홍, 2003 : 37)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성적인 학대와 성폭력에 재차 희생될 우려가 크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 본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의 여러 가지 증상과 후유증은 그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폭력을 누구로부터 당했느냐, 피해경험을 비밀로 했느냐, 그리고 성폭력피해경험을 노출한 후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귀인이 어떤가 등이 피해아

동·청소년의 그 이후의 생활과 행동 그리고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내적귀인의 비율이 높다고 할 때 자기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손상된 상품 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 사건을 주위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주위사람에게 알려진 경우 그들의 반응에 따라 심리적 증상의 심각성이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업중단의 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또 이들의 피해경험과 그 부작용이 지속되는 기간은 성인보다 훨씬 더 길다. 달리 말하면 피해의 누적적 결과는 이들의 재피해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자포자기에 의한 범죄세계로의 진입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⁵⁾

1)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론과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 및 변화가 범죄예방 전략의 핵심이라는 가정 하에, Finkelhor(1990)가 1990년에 제시한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과 공중보건 모델에 속하는 3단계 범죄예방 접근법(crime prevention approach)을 살펴본다.

먼저, Finkelhor(1990)가 제시한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은 다양한 범죄유형 중 특히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 CSA)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해 크게 네 가지 활동 영역을 강조하며, 각각의 활동들이 아동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본 틀이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강조하는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Bolen, 2003 : 181).

네 가지 활동을 정리하면 첫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를 ‘고위험군’을 선발해 내는 것(targeting high-risk population), 둘째, 아동대상

5) 이 부분은 조윤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그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것(deterrence), 셋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sexual socializ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성 역할을 변화시키는 사회정화 노력(altering the male sex role)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전제로 하므로 Finkelhor(1990)의 CSA 예방 틀은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회복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 과악과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전제로 할 때 그 효과성이 극대화되므로, 이 두 가지 활동이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특정 범죄자군을 아동대상 성범죄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판별방식이 필요하고, 동시에 형사사법기관과 민간의 공식·비공식적 사후 범죄 대응전략도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나 처우 방법도 당연히 범죄자의 문제행동 수정 및 재범억제 차원에서 더욱 개별화·과학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에 속하는 성 역할 사회화 교육과 남성의 역할변화는 앞의 두 활동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 두 활동은 종국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 일반시민의 전통적인 인식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Finkelhor(1990)는 모든 아동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에게 자신이 겪은 성적 피해경험에 대해 항상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생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적절히 아동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구나 감정, 상황 등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눈높이 방식의 새로운 아동 대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가정 및 학교 내에서의 부모,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범죄 인식 및 성적 감정 표현능력 증대 쪽으로 확대되어야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네 번째 활동에서 속하는 전통적인 남성 역할 변화(altering the male sex role)는 특히 사회 전반에 흐르는 왜곡된 “남성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및 회복이 전제되어야 불합리한 남성중심주의가 없어지고,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반 성인들의 올바른 성 역할 인식이 없다면, 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활동 역시 지역공동체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가부장적인 남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가해자 개인의 낮은 자존감과 폭력성이 성적 학대와 통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Marshall & Barbaree, 1990 : 260). 남성성이나 남성우월주의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회의 성적 폭력 발생 정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Herman, 1990 : 178; Bolen, 2003 : 181).

이런 맥락에서 Finkelhor(1990)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남성 우월성에 대한 불합리한 신념이 가장 먼저 사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요약해 보면, Finkelhor(1990)의 사회학적 차원의 아동 성범죄 예방틀(sociological framework for considering prevention efforts in CSA)은 아동 성범죄 고위험 집단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 신속성, 엄격성, 확실성을 기반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 그리고 아동에 대한 올바른 성 교육 실시와 성인들의 왜곡된 성역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활동 저변에는 결국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이념이 흐르고 있다(Bolen, 2003 : 180).

2)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1) 1차 예방활동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접근법(approach)으로 3단계 공중보건(public health)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Daro, 1994 : 20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공중보건 모델은 원래 지역사회 질병예방 전략에 사용되었던 예방모델을 범죄문제에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간략히 3단계 공중보건 모델 내용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공중보건 모델에서는 질병이 사회 구성원들 전체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시민들을 상대로 외출 후 “손 씻기 운동”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에 속한다(NCCD: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2007 : 32). 즉, 1차 예방은 궁극적으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심각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거시적인 형태의 예방활동을 의미한다.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인 수준의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이나, 아동, 면역체계가 약한 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이미 질병이 확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 이후에 동일한 질병에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병에 걸렸던 환자가 상태가

자칫 더 나빠진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조기에 발견한 병을 치료하고, 완쾌 이후에도 다시 환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형적인 3차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1차 예방이란 일반 지역사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문화 일소 캠페인, 아동권리 보호운동, 성역할 의식변화 등의 광범위한 활동 전체를 말한다(Oates, 1996 : 21).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능성이 높은 해체가정이나 빈곤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활동은 2차 예방에 속한다. 만약 국가의 성폭력 예방 서비스가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게 된 정상적인 일반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부모들을 직접 만나 가정방문 형태로 자녀 성교육 및 양육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활동이 대표적인 1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에 속하고, 가정 중에서도 특히 소외가정,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빈곤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2차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1차 예방은 교육장소나 대상, 방법 등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성폭력 대처요령 및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특정 아동의 피해 위험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1차 예방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공중보건 모델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은 정상적인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일반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전에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경고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사후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연에 일반가정, 아동,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그 발생 자체를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바, 1차 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광범위한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1차 예방활동은 학자에 따라 “보편적인(universal)”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awareness)을 불러일으켜 그 예방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Lampert & Walsh, 2010 : 148).

1차 예방을 일반 보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심각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 접종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투입(input)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병이나 커다란 독감, 또는 위험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적은 비용 투입을 통해 사후 병원입원이나 수술 등의 과도한 치료비용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에게 “외출 후 손 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주변 내부 공간을 자주 환기하여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질병 예방

차원의 1차 예방 사례가 되므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두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지역사회 일선 기관 레벨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1차 예방 전략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 아동에 대한 자기보호 능력 확대, 부모에 대한 아동 성폭력 위험환경 변화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관련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지역사회 내 활동 전반이 1차 예방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교육 및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중심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 교육도 대표적인 1차 예방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처 방법 및 문제 심각성을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한 아동 그림책(Children's picture book) 제공이 아동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예방에 속하고, 그 효과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Macdonald, 2001 : 27).

(2) 2차 예방활동

1차 예방과 달리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정 예방 활동을 말한다. 즉,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 극빈층 아동·청소년이나, 사회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 혹은 부모의 자녀 양육 기술이 현저히 부족하여 자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차 예방인 것이다. 일반 아동·청소년보다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차원에서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서비스 개입활동을 만들어가므로, 1차 예방보다는 보다 단기간에 극명한 효과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차 예방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강하게 의심되는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이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과학적·객관적 방식으로 고위험군을 선발하느냐에 달려있다(Hunt & Walsh, 2011 : 67). 2차 예방은 아동·청소년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부나 한 부모 가족, 10대 전후에 출산을 하게 된 부부, 정신적 불안 및 약물남용 경력 부부, 주거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의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에 속하므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집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근거-중심 정책 평가(Evidence-based policy) 결과가 위험군 선발에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객관적인 위험 평가 사정표를 통해, 고위험 가족을 선별하여 개별화된 지원, 처우 전략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의 관건이다(Daro, 1994 : 405).

보건복지 차원에서 2차 예방은 잦은 독감 징후, 유전적 위험 상황, 질병 고위험 생활습관 등을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일반인들보다 국가가 더 집중적인 치료와 사전 점검을 특정 위험 집단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전략도 빈곤 가정이나, 실직 가정, 알코올/약물 남용 가정, 주거부정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전 점검 및 지원, 예방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3) 3차 예방활동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지원체계 전반을 3차 예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Lampert & Walsh, 2010 : 149). 앞에서 논의한 1차, 2차 예방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전 예방 전략이라면, 3차 예방은 피해자 개인, 부모, 지역사회, 정부 조직 등을 통한 사후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형벌, 재범억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3차 예방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역할이 강조되고, 일반 지역사회와 국가사법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빈도와 정도, 심각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 지원, 보호 방식도 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후 재범방지를 위한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3차 예방 단계에서 다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피해자, 부모, 학교, 지역사회, 가해자 전체가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재범억제와 접근차단, 그리고 피해자 회복 및 지원, 치료가 가장 중요한 3차 예방 업무에 속한다(Daro, 1994 : 202).

1차 예방 및 2차 예방이 아직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3차 예방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한 가정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동일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가해 부모가 가진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략들 역시 중요한 3차 예방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에 형사사법 기관들과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바로 3차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피해자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반복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 모델

역시 앞에서 살펴본 Finkelhor(1990)의 사회학적 예방 틀과 같이 1차, 2차, 3차 예방 활동을 통해 가정, 학교, 보건당국, 형사사법기관, 일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회복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론⁶⁾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

(1) 위험요인(Risk Factors)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개인적 요인, 가족 구조적·기능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요인들을 크게 위험요인(risk factors)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 구분하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전략이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Ammerman, 1991 : 89).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미국의 “범죄 및 비행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NCCD)” 역시 “익명의 부모들이 밝힌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 of Parents Anonymous)”를 통해 성폭력 원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바 있다(NCCD, 2007 : 18).

먼저 위험요인(risk factors)에는 아동·청소년의 개별 인구사회학적 요인(child characteristics)이 포함된다. 보통 연령이 어리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고, 정상적인 아동·청소년보다 더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Powers & Eckenrode, 1988 : 191; Crosse, Kaye & Ratnofsky, 1993 : 42).

위험요인으로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여성 아동이 남성 아동보다 더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Ammerman, 1991 : 87).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단순히 최초 성폭력 피해를 유발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피해상황을 지속시키는 개별특성이 어떻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관되는가에 더 연구초점을

6) 이 부분은 조윤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Finkelhor, 1994 : 409). 달리 말하면 여성이라는 개인의 성별이 남성보다 최초 성폭력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지 모르나, 이후 피해 취약성을 지속시키는 것은 성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이라는 피해 경험이 더 쉽게 성적 각성(sexual arousal)을 불러와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의 범죄피해 반복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NCCD, 2007 : 27).

위험요인에 부모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도 중요한 관련 변수로 작용한다. 아동복지국의 공식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족의 67%가 피해 부모에게서 약물치료 및 알코올 남용 예방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1 : 96). 그러나 Widom(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알코올 남용과 아동학대 행위가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부모의 알코올 습관이라는 변수가 빈곤과 사회문화적 허용 수준이라는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모 알코올 남용과 아동 학대 관련성은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보다 세심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NCCD, 2007 : 13).

추가적인 부모 관련 위험요인으로 정신적 질환, 아동양육 능력 및 자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은 특히 피해 아동의 가정이 일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엄마가 없는 한 부모 가정이거나, 보호자가 몸이 아파 제대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혹은 빈곤 등을 이유로 제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 훈육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Finkelhor, 1994 : 410; Children's Research Center, 1998 : 48).

(2)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에는 아동 개인의 사회적·감정적 발달 수준(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이 포함된다. 만약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건강하여 피해상황에 대해 올바른 위기 대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동 성폭력 상황에서 슬기롭게 위기 상황을 모면하거나, 신속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속적인 재범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Shonkoff & Phillips, 2000 : 7). 아동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거나,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대로 일반 아동보다 성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 자체도 크고, 첫 피해 이후 대처반응도 부적절해 반복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추가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요인으로 부모가 아동과 형성한 초기 애착정도, 신뢰관계, 아동에

대한 이해심 정도, 아동 성폭력 메커니즘 이해정도도 중요한 보요요인이 된다(Horton, 2003 : 24). 부모가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능한 범죄를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즉, 부모가 아동과 얼마나 긴밀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사후 피해 회복정도가 달라지고, 동시에 부모가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폭력 피해 예방 가능성도 달라진다고 하겠다(Egeland, Bosquet & Chung, 2002 : 89; NCCD, 2007 : 16).

특히,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 정도 및 아동 보호 정보 및 체계가 중요한 성폭력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정확히 아동이 가진 발달 상황이나 인지능력을 이해한다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자녀-갈등 상황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학대 경우가 줄어들은 물론, 동시에 낮은 타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모가 아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거나, 자녀의 발달 과정이나 행동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부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 방임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타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범죄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Reppucci, Britner & Woolard, 1997 : 155).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은 사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초기 아동·청소년기의 학대 경험은 특히 아동·청소년의 뇌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정신적·신체적 발달 문제 및 지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Kendall-Tackett, 2003 : 47).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의 성폭력 경험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정서적 불안, 우울, 관계형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정서적·심리적 불안은 이후의 인지발달 장애 및 행동장애를 불러올 수도 있다(Hunt & Walsh, 2011 : 65).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폭행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폭력 피해 징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정상적인 발달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

그러나 모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일부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족들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해경험을 잘 극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결국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age at onset)가 언제이고, 처음 성폭력을 경험한 상황이 어떠했고, 그 성폭력 정도 및 피해범위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Putnam, 2003 : 270). 즉, 처음 성폭력피해 시점이 피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부모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피해정도가 신체적으로 매우 중대함에도 제대로 피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장기간 서로 가해-피해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가해-피해 관계가 친족관계일 때 그 피해 지속성으로 인해 심각한 성폭력 폐해가 발생한다. 연구 결과, 아동 성폭력 관련 피해경험은 이후의 폭력행동 및 문제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dom(1998)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의 49%가 20년 후에 범죄행위로 경찰에 체포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통제집단의 체포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 특히, 학대받은 아동은 이후에 성장하여 폭력행위로 체포될 확률이 일반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각각 18% vs. 14%). 또한, Smith와 Thornberry(199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그렇지 않은 일반아동보다 학업 수행능력이 훨씬 저조하고, 약물남용 가능성도 증가하고, 정신적 질병과 심대 임신을 경험할 확률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mith & Thornberry, 1995 : 452).

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관련연구

아동·청소년 성폭력(Child Sexual Abuse, CSA)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부모, 소년교육 전문가, 소년사법 관계자,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Hunt & Walsh, 2011 : 66).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연구들이 부모가 갖고 있는 성폭력 예방관련 정보 수준 및 깊이가 핵심적인 범죄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acIntyre & Carr, 1999 : 1308). 즉, 부모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실제 얼마나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그에 따른 지침행동을 가정에서 실현하느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 가능성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 범죄예방 지식 전달 외에도 “부모익명 폭력방지 모임(parents anonymous groups)”과 같은 자조집단 형성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Wolfe, 1999 : 359). 미국의 경우, 한 해 평균 800,000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부모양육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s) 참가명령을 부여받고 있다. 물론, 국가로부터 그런 강제적인 명령을 받는 부모들은 대개 자녀 학대 및 문제행동 경력을 갖고 있는 폭력 부모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익명 폭력방지 모임에 참석한 가정이 부모 스스로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녀 양육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데 다른 부모 양육 프로그램보다 더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CCD, 2007 : 20; Wolfe, 1999 : 400). 많은 경우 타인에 의한 아동·성폭력보다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나 양육자에 의한 성폭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익명 폭력방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익명 폭력방지 프로그램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단주모임 프로그램과 같이 부모들로 하여금 상호 참여자들 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치료프로그램이다. 개인적·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문제행동을 부모 스스로 수정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 부모들이 서로 돕는다는데 그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부모익명 폭력방지 모임은 사전에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일반 부모가 함께 모여 성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1차 예방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범죄를 저지른 부모나 위험성이 높은 보호자들이 익명으로 서로 모여 그들의 폭력행동과 잘못된 성적 왜곡인식, 가정폭력, 알코올 문제를 해결해 가는 2차, 3차 범죄예방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⁷⁾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피해의 회복’을 범죄해결의 중심에 두자는 이론이다. 응보적이고 가해중심적인 범죄해결과정과 회복적이고 피해 중심적인 두 범죄해결방법 모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범죄해결방법은 그 지향점이

7) 이 부분은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다르고 과정도 결과도 다르다. 전자는 피해자에게 본인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구를 피해자 별로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하지만 후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별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가해행위인 응보가 아니라 피해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범죄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그래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소년법에 의한 특별절차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의한 성인 피해자는 오히려 범죄해결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인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을 놓치지 않고 소년성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회복적 사법정의이다.

또한 지역연대의 구축이 회복적 사법정의의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한다.

1) 회복적 사법정의모델의 배경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노심과 복수심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회복 또는 충족에 기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회복적 사법절차가 피해에 대한 회복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Walgrave, 2000 : 255).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용어는 알버트 애글래쉬가 1977년 처음으로 문헌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Walgrave, 2004 : 543). 그러나 이 용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5년 하워드 제어가 피해자-가해자 화해/조정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때부터였다고 한다(Hole & Young, 2002 : 529).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중후반 사회복지학에서 ‘회복적 정의’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형법학에서 2000년 이전에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로 연구되다가 2000년도 이후부터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는 관련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사법으로도 해석가능하고 정의로도 해석 가능한 justice라는 용어를 없애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안적 용어를 제안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한다(Hole & Young, 2002 : 527).

아직까지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확립된 정의는 없다. 2000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UN의 제 10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에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비엔나 선언’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을 권장하고 있는 동보고서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한 어려움은 회복적 사법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사용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 ‘relational justice’, ‘positive justice’, ‘reintegrative justice’, ‘transformative justice’, ‘reparative justice’, ‘satisfying justice’, ‘community justice’, ‘social justice’, ‘Peace Justice’ 등이 사용된다. 이는 제도로써 정착 되어 가는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식 등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이백철, 2002 : 142).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공통적 요소인 목적, 결과,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들, 특별한 절차, 프로그램 등의 어느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Hole & Young, 2002 : 527).

(1) 기존의 형사사법과의 비교를 통한 개념정의

회복적 사법이 무엇이라는 정의가 한마디로 내려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형사사법과 비교를 해가면서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들을 설명한다(Zehr, 1990 : 211). 응보적인 형사사법에서는 범죄를 국가 및 국가의 규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법제도는 범죄자의 유죄를 확인하는데 무게중심을 둔다. 그래서 범죄자에게 일련의 고통이 부과하여 범죄를 해결한다.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남김없이 찾아내는 과정에서 범죄자는 국가에 대적하게 되고, 결과물에 보다는 규칙과 의미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 결국, 한 쪽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패자가 된다.

이에 비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법제도도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정의는 대화와 상호합의를 독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충족되고 개인 및 관계의 치유가 어느 정도로 장려되었는가 하는 결과가 중요시된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과 기존의 전통적 형사사법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존의 시스템도 피해자를 무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과거지향적으로 비난일색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사회화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미래를 향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정의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김성돈(2005 : 420)은 회복적

사법과 기존 사법과의 차이에 대해서 '1. 절차상의 차이, 2. 대응방식의 차이, 3. 감정적 요소의 배제와 감정적 요소의 활용, 4. 국가의 역할 차이, 5. 커뮤니티의 역할 차이'를 비교점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예방적 형사사법은 여전히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범죄자의 규범순응적 행동을 목표로 하여 처우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사법을 완성하게 된다. 응보적 형사사법, 특별예방적 형사사법,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소년사법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5-1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의 비교

	응보적 형사사법 (소년형사사건)	특별예방적 형사사법 (소년보호사건)	회복적 사법
초점	범죄	범죄자(가해소년)	관계
범죄에 대한 대응	형벌	처우	회복
목적	예방	순응	회복
피해자의 지위	이차적	이차적	중심적
사회적 맥락	권위주의	복지, 교육	민주적
소년의 반응	분노	종속	책임

* 출처 : Wernham, M.(2005), p.125.

소년사법의 경우 현재 특별예방적 형사사법에 속한다. 현행 소년사법은 범죄보다는 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소년이 규범에 순응하는 건전한 일반시민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범죄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차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응보적 형사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응보감정이 충족될 수도 있었지만 소년사법에서는 응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소년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처분에 종속되게 된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해의 회복을 통한 관계의 회복이다. 가해소년은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본인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피해도 회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피해의 회복을 민주적인 맥락에서 범죄를 소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해소년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2) 순수론과 확장론에서의 개념정의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는 있다. 이것은 실천모델에서 기존의 형사사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정의이다. 먼저, 절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마샬이 제시한 ‘특정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가 그 범죄가 미친 영향 및 그 범죄가 장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절차라는 정의가 있다(Marshall, 1996 : 37). 이는 루벤선언(1997)과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연합 NGO동맹이 채택하였고 순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순수론의 입장에 의하면, 범죄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상호협력에 의하여 결과의 취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요구를 충족해야하고 그에 의하여 피해자, 가해자 기타 사람들의 재통합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가 충족되고, 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 피해자 또는 범죄자와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 간에 존재하는 분쟁해결의 기회가 관계자들에게 제공되고, 또한 범죄자에게 사죄와 회복활동을 통하여 용서받을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다(조현지, 2008 : 49). 즉, 순수모델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로 ①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 ②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의 절차 ③ 사회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들고 있다(이호중, 2004 : 501-503).

또 다른 개념정의는 웰그레이브 등이 주장한 것으로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정의를 이루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된다(Walgrave, 2000 : 254).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가 회복적 이라면 회복적 사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강제적 회복적 제재도 회복적 수단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모델을 확장론 또는 최대화모델(maximalist model)이라고 한다. 김용세(2005 : 226-231)는 순수모델을 협의의 회복적 사법, 확장론을 광의의 회복적 사법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확장주의자는, 순수론자의 정의에 대해서 회복적 사법의 핵심을 단순히 절차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회복적 사법의 여러 원칙 중 대화, 대면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재들을 회복적 사법의 범주에 넣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한다. 확장론자들은 순수론자들이 회복적 사법조치가 ‘특정한 범죄의 이해당사자가 모이지 않고도 수행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해자가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도 회복적 사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Walgrave, 2000 : 255). 그래서 확장주의자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 폭은 순수론자들보다는 더 넓어지게 되고 이러한 정의를 광의의 회복적 사법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김용세, 2005 : 226-227).

순수론, 확장론 모두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에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등의 사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모색해가는 자율적 협동절차를 통하여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과정 또는 절차를 강조하는 순수론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정의개념 자체에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이 정의 개념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범죄의 이해관계자인 피해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회복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치료중심적이거나 비난적, 또는 특별예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순수론의 입장이든, 확장론의 입장이든 회복적 사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칙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들게 하는데,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란 무엇인가? 그 손해를 누가(무엇이)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 손해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사법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손해, 피해자, 회복, 사법정의의 달성에 관한 질문에 답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Walgrave, 2000 : 260).

(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

가. 피해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사법의 중점을 두는 태도는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회복적 사법을 전통적인 응보주의 및 특별예방주의 형사사법모델로부터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패러다임의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범죄가 야기한 피해를 통하여 고려되어야하고, 범죄에 대한 주된 반작용기능은 처벌도 재사회화도 아닌, 피해의 회복 또는 보상이라고 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알려진 가해자가 없더라도 작동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알 수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지지, 원조,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잡히지 않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의 회복적 행동을 통해 더욱 회복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질적

손실, 신체적 상해, 심리적 결과, 관계상의 문제 및 사회적 기능장애(범죄의 발생으로 야기된 이상) 등 모든 종류의 피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응보주의는 추상적인 사법도덕적 질서에 대한 손해를 고려하고, 가해자에 대한 평등한 피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 특별예방주의는 피해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법기관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춘다.

나. 피해의 산정

손해를 누가 입었다고 봐야 하는가와 관련한 피해자의 범주문제가 논의 될 수 있다. 현실의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상해와 손실이 회복적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회복적 사법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정의하거나 공동체가 입은 손해를 구체화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회가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사회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 국가가 스스로를 주된 피해자로 설정하고 현실적 피해자는 부수적인 위치로 밀어내버리는 응보주의적 상황으로 후퇴할 수 있다. 학자들은 공동체를 필수적 요건으로 넣으려고는 하지만 공동체에 사회를 포함하여 정부가 다시 피해자의 대변인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화된 사회는 범죄의 해결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된다. 회복적 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현실의 회복적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규범강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을 상정하는 것이다.

다. 회복

어떻게 회복이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절차와 그 절차의 결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논점이 있다.

첫째, 달성 가능한 회복적 결과는 원상회복, 보상, 배상, 화해 및 사과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들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고, 구체적이거나 상징적일 수 있다. 문제되는 피해의 성격에 따라 회복적 결과는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공동체로 정향될 수 있다. 일부 피해자 원상회복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그러한 행동의 전형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실무가의 창의성에 따라 아직까지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회복을 고안해낼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회복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가구 손괴의 경우에 피해자가 가구의 구입 비용보상과 가해자의 가구 쇼핑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가구를 구입하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⁸⁾

둘째, 회복적 결과를 목표로 하는 상이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구별기준은 자발성이다. 회복적인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별적으로 또는 친척의 후원으로) 사이의 직간접적인 자발적 협상과 협조 절차이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회복적 그룹 회합 등). 그러나 (사법적) 절차와 강제가 회복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분분하다. 순수모델 지지자들은 회복적 사법 절차의 자발성을 고수하여, 강제의 사용을 회복적 사법에서 배제한다.

라. 정의의 달성

회복적 사법정의를 회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옳고 그름의 주관적 균형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받는다라는 평등감을 말한다.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정의를 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의 최적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보상 및 공동체 지원이 자기의 고통과 손실과 합리적 균형을 이룬다고 느껴야 한다. 가해자는 사회적 수인한계를 침범하였고, 자기의 잘못을 건설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느껴야 한다(Walgrave, 2000 : 262).

한편 정의는 적법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회복적 사법정의를 회복적 절차와 그 결과가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법적 보장조항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의 자발적 해결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예를 들어, 조정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참여는 어떤 식으로든 부과될 수 없고, 합의는 손해의 심각성과 당사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용인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Walgrave, 2000 : 262). 강제적 절차가 개시되면, 적법성, 적법절차 및 비례성원칙 등 법적 보장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질적으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국가와 사법시스템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일으킨다.

(4) 확장론과 소년사법

8) 가구손괴사례는 2011년 8월 11일 회복적 사법의 대부라고 불리는 하워드 제어(Howard Zehr)교수 초청 공개강연에서 제어교수가 든 사례이다.(하워드 제어(Howard Zehr) 초청 공개강연, 일시: 2011년 8월 11일 (목) 14:00~15:30, 장소: 이화여대 법학관 231호, 주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회복적 사법의 도입 논거 중에는 기존의 공식적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그로 인해 회복적 사법을 '공동체주의적 절차로 생각하고 절차에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비공식적, 자발적 해결의 장점에 주목하여 공식화와 국가의 지배에 의한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절차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시스템으로부터의 다이버전으로 유지하고자한다.

회복적 사법을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받아들이지는 학자들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최대한 많은 사건을 끌어내려고 한다. 그들은 공동체에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적 접근방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설득력 있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범죄적 갈등을 시스템 외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방법론적 기술을 개선하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킨다. 또한 범죄에 대한 자발적, 회복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태도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사법부에게 개입 권한의 사용을 더욱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형사사법시스템에는 관여하지 않으려한다.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동체와 협력하여서는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시스템을 자신들의 성찰과 실험에서 아예 배제시킨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정부적) 공식적 대응을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 특별예방적 사법이 맡게 된다.

이것은 순수론자 자신들이 지적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기존의 형사사법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회복적 사법실무가 다이버전으로서의 옵션으로만 존재한다면, 심각성이 덜한 사건만 회복적으로 해결에 맡겨지기 쉽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일수록 배상과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더 큰 피해를 외면하는 사법패러다임이 되고 만다.

회복적 사법이 관련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가해자 및 공동체 사이의 자발적 해결모델만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던 응보적 형사사법에 대한 예외가 될 뿐이다. 웰그레이브는 이것을 '형사사법이라는 중핵의 주변부에 자리잡은 부드러운 장식물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Walgrave, 2000 : 263).

회복적 사법에 관한 논문의 대부분은 조정에 중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조정절차에서의 대면은 회복적, 치유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정은 사과, 원상회복, 배상, 보상, 용서, 화해 및 재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공동체가 관여하는 경우, 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도 직접적으로 관찰 및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절차는 모두 관찰

및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한다.

회복적 사법 확장론을 주장하는 웰그레이브는 다음과 같이 조정(형태를 불문하고)을 회복적 사법의 동의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Walgrave, 2000 : 264).

확장주의적 회복적 사법정의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해 회복적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문제와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야한다. 그러나 조정은 범죄의 해결을 피해자와 가해자(및 그 친척)의 상호작용으로 축소시키고, 공동체의 불안과 요구는 무시한다. 그리고 조정은 힘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범죄를 회복적 접근 밖에 둬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확장론에서 해결해야할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준다. 먼저, 범죄의 결과를 해결하는데 개별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자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합적 당사자가 관여해야하는지, 관여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여해야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5) 회복적 사법에서의 제3자의 필요성

모든 회복적 사법 논의에서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제3자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친척이 공동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오히려 별도의 제3자를 개입시키면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Fattah, 1993; Harland and Rosen, 1990; Walgrave, 2000 : 265에서 재인용). 하지만 회복적 사법시스템에서 제3자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가해자 중심의 '교환'에만 중점을 두고 이것으로만 제한 한다면 범죄는 다시 두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되고, 범죄가 두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라면 형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진다. 민법은 2인 이상의 시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고소가 있을 때에만 작동되는 반작용이다.

반면 회복적 사법정의는 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다룬다. 형법은 스스로 작동한다. 형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절차를 개시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왜 국가가 가져갔을까? 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입은 피해는 공공의 법질서가 침해되었고

공공의 안전이 상실된다는 등의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서술밖에 할 수 없다. 사회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뒤집어 생각해볼 수 있다. 공동체(사회)가 범죄 발생 후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결에만 맡겨두고 범죄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감소시킨다면 대부분의 범죄가 도박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다.

절도를 예를 들면, ‘차를 훔쳐서 잡힌다면, 피해자와 조정하고 차 값을 물어주면 되고, 다음날 또 시도하면 된다: 운 좋게 체포되지 않으면, 차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Walgrave, 2000 : 266)

이와 같이 제3자의 개입의 필요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으로서의 공동체와 국가의 각각의 역할은 설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브레이스웨이트는 도미니언(domin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 정부(국가)의 역할

회복적 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범죄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피해자-가해자 이외의 제3자로서 ‘공동체를 포함시키는데, 국가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애매모호하다. 회복적 사법실무가 지역적이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서 더 그러하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을 공식적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해자, 회복적 사법절차,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실무 운영기관과 공식적 사회(국가)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벤선언(Declaration of Leuven) (1997)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Walgrave, 2000 : 268).

범죄에 대한 반작용에서 공공당국의 역할은 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을 위한 조건 마련;
- 절차의 정확성과 개인의 법적 권리 존중 보장;
- 자발적인 회복적 행위가 성공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법적 강제 부과;
- 범죄와 그에 대한 공적 반작용이 순수하게 비공식적인 자발적 규제로는 불충분한

경우 사법적 절차 수행.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이 상정되면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는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와 나누어 가져야한다. 즉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은 범죄의 해결에 있어서는 공동체에게 권한을 넘긴 보조적으로 기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회복적 사법이념에서의 공동체와 정부의 역할 이외의 실질적인 문제는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상황의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범죄에 대한 회복적 대응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나. 회복적 강제

대다수의 회복적 사법 관련 문헌은 배상, 화해 및 재통합으로 이어지는 자발적 토론, 재통합적 수치심 유발, 존중 및 공동체에 건설적으로 재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회복적 범죄대응이 그 적용범위를 넓히더라도, 그 한계로서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가해자로부터 그리고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낳는다(Marshall, 1996 : 26). 바로 이점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다이버전'으로 받아들이는 순수론이 형사사법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기대고 있는 것이고, 확장론이 회복적인 강제적 사법시스템의 개발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 회복적 활동의 강제집행 가능성

정부(국가)의 강제적인 개입은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가장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다. 강제적인 회복적 제재에서는 대면이 없고 참여가 크게 줄어들며, 재통합이 불확실하고 배상이 유일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응보적 또는 특별예방적 제재보다 강제적인 회복적 제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피해자와 공동체에게 무언가 현실적으로 행해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응보적 대응보다 유익하다. 마틴 라이트는 응보적 대응을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로 균형 잡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손해의 양만 늘릴 뿐이라고 한다(Wright, 1992 : 525).

둘째, 재사회화를 위한 제재의 효과와 같은 것이다.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공동체 내에서 회복적 제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회봉사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공동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 재통합의 가능성도 높인다(Walgrave, 2000 : 274). 재사회화 이념이 소년사법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동체 봉사는 대체로 재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나 공동체 또는 사회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공동체의 손실은 흔히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구로 오용되기도 한다.

셋째, 범죄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Walgrave, 2000 : 274). 개인 또는 공동체가 회복적 대응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가가 회복적 원칙을 지키면서 범죄에 회복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강제적인 회복적 제재와 법

회복적 행위의 부과에 있어서 강제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부과된 원상회복 또는 사회봉사는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자유제한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공화주의 이론에 따르면, 형사사법의 근본적 기능은 모든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및 기타 시민)의 ‘도미니언(모든 시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의 전 범위)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회복중심성은 이러한 관념에 적합해 보인다. 피해자와 시민의 도미니언의 인식과 회복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통하여, 공동체 봉사에 의한 상징적 또는 (부분적으로)물질적인 배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물질적 배상과 심리적 회복으로 표현된다. Braithwaite와 Pettit도 회복적 옵션을 포함하는 ‘형벌’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는 곧 사회를 정연한 공동체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공화주의 이론에서, 어떤 자유의 제한도 당연히 정당화되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의 도미니언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이익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도미니언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강한 간섭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최소 간섭적인 입법, 집행 및 양형 옵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과 같은 간섭 정책에 대한 대안(도미니언을 촉진할 수 있는)을 능동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Braithwaite & Pettit, 1990 : 79-80).

따라서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적 갈등에 대한 사법외적 해법을 우선시하게 되고, 공동체 내로 '도미니언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parsimony는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론은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는 시민의 도미니언에 대한 침해가 되고, 그 침해는 엄격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형사사법 권리의 인식'에 구속되고, '그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을 증명하여야 한다(Braithwaite & Pettit, 1990 : 75). 절차의 공식화는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비난(denunciation)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심적 정당화 요소이고,' 이는 '공동체에게 중요한 비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침해에 대한 공적 대응은 도미니언의 방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는 공적 기관이 도미니언을 지지한다는 안전감과 믿음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적 절차의 공적 특징은 사회적 통제자를 공적 통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절차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힘의 관계에서 평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웰그레이브는 좋은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은 '만족가능성'이라고 하면서 이 요건은 범죄의 심각성과 허용되는 국가적 개입의 상한선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비례성 원칙에 의하여 충족된다고 한다. 조정에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비례적이라고 느꼈음을 의미한다(Walgrave, 2000 : 274).

그러나 이것은 원상회복이나 공동체 봉사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협상결과에 문제가 없고, 범죄와 보상 사이의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확장론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이다. 이론적으로 비례성은 회복적 사법의 틀 안에서 구성될 수 있지만, 회복적 비례성은 전통적인 형법적 비례성의 원칙과 크게 다르다. 여기서는 범죄로 야기된 물질적, 관계적 및 사회적 손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회복적 노력의 정도 사이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올바른 회복'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설정, 올바른 회복, 회복적 비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

호주의 캔버라에서 상점절도를 한 12세 소년에 대한 회합에서 그 소년의 어머니와 상점주인이 제안하고 회합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소년은 상점 앞에서 '나는 도둑입니다.'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서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회복적 사법의 절대적인 지지자인 브레이스웨이트에게 '회복적 사법의 미팅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가' 등의 문제를 심사숙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Walgrave, 2000 : 275).

이 문제는 오늘날 형사정책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회복적 사법의 절차 속에서 주홍글씨가 재등장할 수도 있고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억압적 조치를 취해버릴 수도 있다(이호중, 2009 : 11). 회복적 사법의 작동이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리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천 속에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치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철시켜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경향은 공동체주의적 경향과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회복적 사법 진영에서의 이론적 논의의 테마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무한하고 탄력적인 잠재력을 순진하게 신뢰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놓여있다(이호중, 2009 : 12).

2) 공동체의 구축과 회복적 사법

(1)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브레이스웨이트로 대변되는 개인중심의 공동체주의이다. 브레이스웨이트는 순수론의 회복적 사법을 염두에 두면서 회복적 사법의 절차에 대한 원리로 불지배(non-dominance)의 원리와 함께 공동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회복과 자유의 회복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한다. 그는 오늘날 공식적인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기준인 인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Braithwaite, 2002 : 569; 이호중, 2009 : 12에서 재인용).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의 원리는 회복적 사법의 절차에는 도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경향은 웰그레이브나 반 네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준수뿐만 아니라 회복의 원리로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한 시간의 노동봉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례성의 원칙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인권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지를 판별할 방법이 없다. 확장론에서 주장하는 '강제된 회복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며, 인권과 비례성의 원칙은

회복적 사법의 작동과정에서 한계가치로 설정되어있다(이호중, 2009 : 12).

(2)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는 다르게, 이호중(2009)은 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동체의 불확실성과 남용가능성에 대응하여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범죄를 민사적 사건화하여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한다. 그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위의 ‘공적 성격’을 제거하고, ‘사적 피해와 그것의 회복’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범죄를 사적 자치의 영역에 놓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손해상채의 법원리로서의 비례성의 원칙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하는 회합이나 서클 모델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모델에 훨씬 친화적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피해자의 손해의 회복은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라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손해의 회복은 피해자가해자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제3의 대리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왔다갔다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손해의 회복, 특히 금전배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의 회복은 법원이 부과하는 배상명령의 형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이호중, 2009 : 13).

이러한 자유주의적 회복적 사법경향은 조정모델을 형사절차에서 경미한 사건을 다이버전으로 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입법례를 가진 국가에게서 볼 수 있다. 특히 독일 형사사법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은 1999년 개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 a 와 제155조 a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형사절차와의 연계에 있어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과 법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다이버전 방식을 채택하였다.

독일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재량적 다이버전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기소단계에서 검찰은 소추의 공익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고유의 논리에 의하여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게 되고, 둘째, 주로 보호관찰관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종사자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선자가 되고 검사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적 자원으로서의 회복적 사법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비형법적인 수단으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트렌젝은 독일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형사절차에 시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하고 있다(Trenczek, 2003 : 272).

이러한 분석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호중(2009)은 다음과 같이 자유주의적 경향 속에서 입법화되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독일 형법 제46조 a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경우에 그것을 형사사법체계의 예방목적에 비추어 재량적으로 형감경 내지 형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특이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피해자조정이라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일차적인 형감경의 혜택 대상이다. 또 하나는 행위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손해배상을 한 것만으로 형감경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부가적 노력(예를 들어 집을 판다거나, 은행 빚을 얻어 장기간 갚아야한다거나 등)이 수반된 경우에만 형감경의 혜택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의 부가적 노력은 그가 조정절차에 차명한 것과 등가적인 가치를 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형사사법체계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손해배상에 형벌의 공익적 필요성을 상쇄하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의 가치이다.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경향이 형사사법체계의 다이버전 모델과 결합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이 검사나 판사의 입장, 그리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저 형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이호중, 2009 : 14).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앞서 제3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 속에서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공동체의 실질적인 피해이상으로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러간다면,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조절은 누구의 몫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편도 아니고 피해자편도 아닌, 프로그램의 주선자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대화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권력적 개입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조정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나 주선자 또는 조정자가 (특정한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무리한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면, 그는 법관과 함께 객관적 정의의 수호자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이호중(2009)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길항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사법체계를 관통하는 원리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적 원리의 정확한 준수가 사법체계의 결정을 정당화한다. 형사사법체계를 판사와 검사에게 일정정도의 재량을 부여하지만 그 재량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 역시 재량의 법적 요건의 구비여부, 삼심제 등의 규정을 통해서 법치주의적 틀 속에 있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법치주의 원리를 최소화하면서 그 대신 정당성을 민주주의 특히 평등한 참여와 자율적 대화를 통한 결정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채우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사회에서 유행하는 대안적 갈등해결운동(ADR)과 요즘 우리 사회의 행정영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영역의 대안적 갈등해결프로그램은 선택지가 주어졌거나 비교적 제한적이다(이호중, 2009 : 15)⁹⁾. 그러나 회복적 사법에서는 당사자의 대화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열려 있으며, 때로는 선택이 현재의 헌법적 가치체계에 기초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양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적 정당화의 경향 속에서 이 차이는 미묘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며 문제의 요체는 회복적 사법과 거기에서 산출되는 결정물들이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가 얼마만큼 법치주의 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하는 점이라고 한다(이호중, 2009 : 15).

(4) 회복적 사법에서 지역연대의 역할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가능하게 하는 재원이면서 동시에 범죄해결 권이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던 범죄해결권을 공동체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넘겨받게 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피·가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지지를 위한 지역연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학교 등 피해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대부분 지역연대에 속해있다. 그리고 지역연대에는 당연히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도 포함되어 있다.

9) 천정산 터널의 문제에서 참여적 결정주체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터널 공사의 적절성의 여부일 뿐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결정의 남용가능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이호중, 2009 : 15).

3) 성폭력사건과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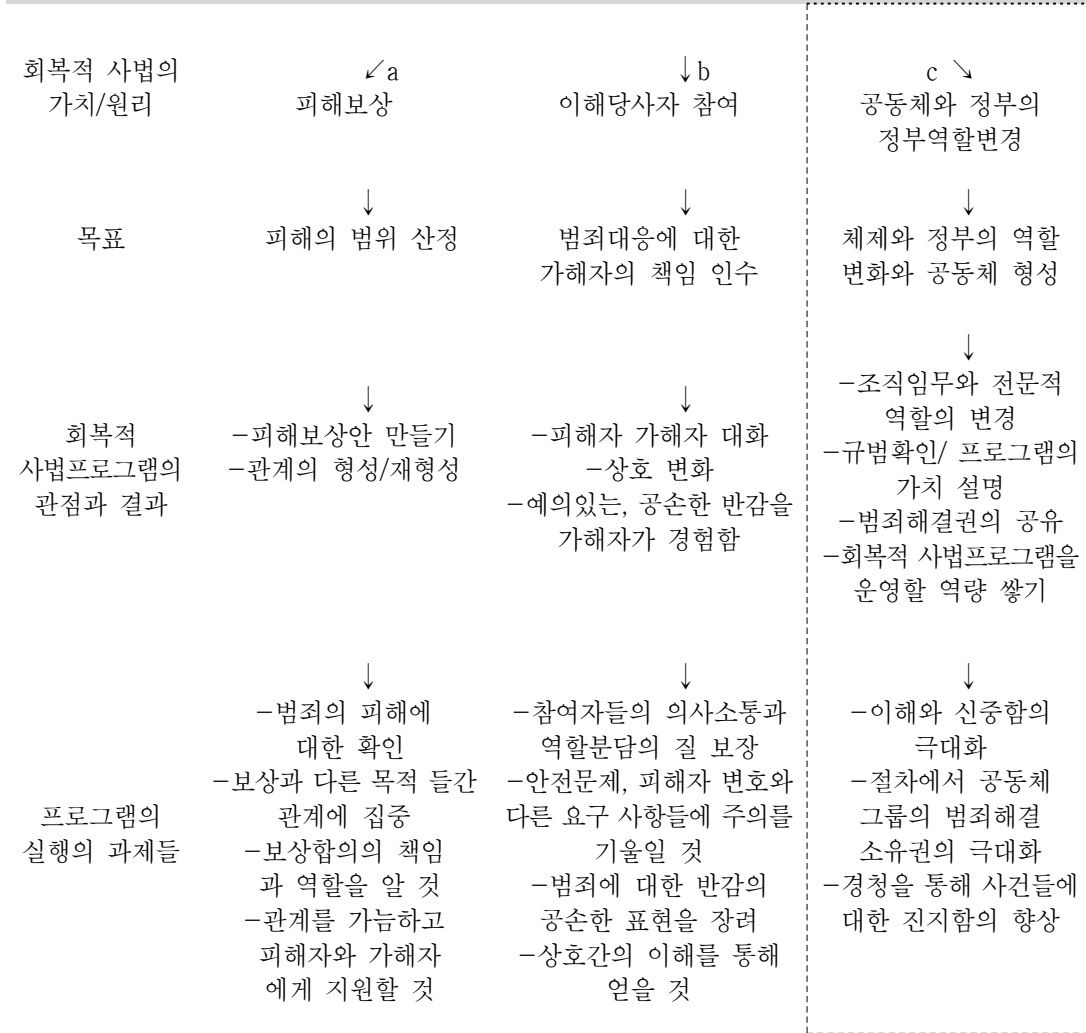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선정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운영될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피·가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의 참여가 전제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회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원리)들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는지, 피해보상 및 가해자의 책임인수를 위한 피해자·가해자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등 목표와 그 목표에 의한 수단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는지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다. 정책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c흐름이다. 성폭력 사건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정부 모두 기존의 역할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물론 형사사법에서도 아동·청소년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대응을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과 지지를 실질적으로 도맡아하고 있는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도움 없이 성폭력사건은 해결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범죄해결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기관이 주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구별해내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정



* 출처 : Bazemore & Schiff(2005), p.89의 표를 수정 보완함

【그림 II-5-1】 회복적 사법원리의 실현단계

이러한 평가방법 이외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회복적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의 정도를 달리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분석 할 수도 있다. 가장 회복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와 최소로 회복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이다(Bazemore & Umbreit, 2001 : 16).

표 II-5-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

최소 회복적 모델	최대 회복적 모델
중점을 두는 것은 금적적 배상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범죄의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함.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을 허용함.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의 인간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기 전에 조정자와의 준비 만남이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는 따로 사전면담을 거침. 이때에는 범죄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듣는 것,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 조정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초점임
피해자에게 만남의 장소(피해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장소)나 참여에의 선택권이 없음. 사전설명 없이 조정기일 참석통지만 받음.	피해자는 프로그램 과정 전체에서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가짐 : 만나는 장소, 참가자들에 대한 성향 등.
조정자나 촉진자가 범죄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가해자가 발언함. 피해자는 단순하게 질문을 하거나 조정자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함.	피해자에게는 첫발언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범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독려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조정자가 발언하고 양당사자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의 없는 조정과 화해(facilitation)의 고도의 직접적인 방식	조정자의 최소개입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본주의적이거나 변화지향적 조정모델이 사용됨.
침묵의 순간이나 감정의 표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	침묵과 감정표현에 관대하며 범죄의 영향전체에 대해서 논의함.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발성을 요구하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책임의 인수여부에 상관없이 출석이 요구됨.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
합의 도출을 위주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매우 짧게 진행됨.	대화를 위주로 진행하며 약 한 시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보통 필요함.
유급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 들이 조정자로서 임함.	훈련된 공동체 자원봉사자들이 조정자나 촉진자로서 기관직원과 함께 임함.

* 출처 : Bazemore & Umbreit, 2001 : 16

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종류

회복적 사법 실무 프로그램은 북미와 유럽에서 많이 도입된 화해조정,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상위원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시행되는 가족집단협의, 캐나다 일부 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양형서클 등을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피스메이킹, 치유서클 등 원주민의 특성에 따른 다른 이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그 형식이나 진행방법, 목적 등을 살펴보면 조정, 보상위원회, 가족집단협의, 양형서클의 4가지 정도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Bazemore & Umbreit, 2001 : 1-11). 4가지 모델 중 피·가해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은 가족집단협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족집단협의 프로그램의 유형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고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상의 ‘화해권고’는 현재 조정프로그램의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는 소년사건의 케이스워크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실무진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내지 변형이 가능하도록 세부프로그램의 유형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표 II-5-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4가지 모델의 비교분석

		형사화해·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	보상위원회 (Reparative Boards)	가족집단협의 (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서클 (Circle Sentencing)
행정 및 절차 (Administ ration and Process)	기원(Origin)	1970년대 중반 이후	1995년 이후(유사한 청소년패널(youth panels)은 1920년대 이후	뉴질랜드, 1989; 호주, 1991.	대략 1992년 이후
	현재 시행지 (Current Applications)	북미 및 유럽전역	Vermont주 등	호주; 뉴질랜드; 미국(1990년대이후), Montana, Minnesota, Pennsylvania 등	주로 캐나다의 Yukon 등, 미국의 Minnesota, Colorado, MA.

	형사화해·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	보상위원회 (Reparative Boards)	가족집단협의 (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서클 (Circle Sentencing)
회부시점 (Referral Point in system)	대부분 다이버전 및 보호관찰 조건, 경우에 따라 중범죄의 경우 수형중 이용	보호관찰 조건 중 하나 (youth panels: 대부분 다이버전)	뉴질랜드: 소년사법시스템. 호주와가와가모델: 경찰 다이버전 미국: 대부분 다이버전, 경우에 따라 학교 및 재판후사용	다양한 단계. 공식적 법원심리나 기소범죄의 교정질차에 대한 다이버전이나 대안으로 사용
자격요건 및 대상집단 (Eligibility and target group)	다양함. 주로 다이버전 사건과 재산범. 지역에 따라 중요 폭력범에 대하여(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	비폭력적 범죄; 보호관찰 대상범죄자로 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한정	뉴질랜드: 모든 소년범(살인사건제 외) 호주 와가와가모델: 경찰 재량 또는 다이버전 기준에 따라 결정	유죄임을 시인한 범죄자. 모든 종류의 범죄 및 범죄자 가능. 상습범 대상.
담당자 (Staffing)	조정자(Mediator)	배상 코디네이터 (보호관찰관)	지역사법 코디네이터	지역사법 코디네이터
장소 (Setting)	중립적 장소(도서관, 교회, 자치센터의 회의실) 등	공공건물 또는 자치센터(community center)	사회복지기관, 학교, 공공건물, 경찰시설	자치센터, 학교, 기타 공공건물, 교회
절차 (Process and Protocols)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후 조정자가 피해자-가해자간의 대화를 돕고 독려하나, 대본(script)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진술을 들은 후 위원회가 비공개 심의(private deliberation). 지역위원회에서 변형된 형태로 행해지기도 한다(youth panel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심의한다)	호주 와가와가모델: 코디네이터가 대본(script)에 따라 가해자가 먼저 진술하고 피해자 등이 진술하게 한다. 뉴질랜드: 대본은 없고, 가족구성원들의 협의 후 합의에 의한 결정이 허용된다.	법관 논평기회. 검찰과 변호사가(보다 중한 범죄의 경우) 사안의 법률적 사실을 제시한다. 모든 참가자는 '발언표(talking piece)'가 자신에게 넘어오면 발언기회를 갖는다. 합의에 의한 결정
진행 (managing dialog)	조정자가 진행	위원장이 진행. 참가자는 질문받는 경우 진술	코디네이터가 진행	개회 후, 대화는 '발언표'의 전달 절차로 진행

		형사화해·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	보상위원회 (Reparative Boards)	가족집단협의 (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서클 (Circle Sentencing)
지역사회 참가 및 기타 (Community Involvement and Other Dimensions)	참가자 (Who participate?) (지역사회)	조정자, 피해자, 가해자는 기본적 참가자. 경우에 따라 부모 등 참가	보상 코디네이터 (Reparative coordinator) (보호관찰관), 지역사회보상위원, 가해자 및 지원자, 피해자(제한적 허용), Youth panels는 다이버전 직원.	코디네이터가 주요 참가자를 규명.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친지, 경찰, 사회복지 기타 지원인(support persons)도 초대. 지역사회가 폭넓게 참가하지는 않는다.	법관, 검찰, 변호사가 중한 경우 참가. 피해자, 가해자, 지원단체 등 참석.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 공개.
	피해자 역할 (Victim role)	범죄에 관한 감정표현. 회복 계획의 내용과 가해자 의무에 관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 절대적 권리인 거부권, 동의를 절대불가결.	위원들의 계획 마련에 의견제공(input). 드물지만 피해자의 포함도 현재 장려되고 있음; 더욱 적극적 역할 이 고려되고 있음.	범죄에 관한 감정을 표현하고, 보상계획(reparative plan)에 의견제공(input).	서클 및 의사결정에 참가; 가해자의 적격성(eligibility)에 의견개진하고, 지원단체 선정 및 치유회합(healing conference)에도 참가 가능.
	회부기관 (Gate- keepers)	법원 및 기타 기관(entities)에서 회부할 수 있다.	법관	뉴질랜드: 법원 및 지역사법(community justice) 코디네이터. 호주 및 미국: 경찰과 학교 관료	지역사법위원회 (community justice committee)
	공식절차와 관계 (Relationship to formal system)	다이버전 및 처분(disposition)의 핵심 절차(core process)로부터 법원 업무부담에 최소 영향을 미치는 주변적 프로그램(marginal programs)과의 관련에 따라 다양	최소복역필요가 있는 저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 중의 하나. 확대될 예정. 업무부담에 대한 다소간 효과가 기대됨.	호주(와가와가) 및 미국: 경찰주도 절차, 업무부담에 대한 다양한 영향, 통제망확대에 대한 우려; 미국에서는 경미범죄(가장 흔하게는 상점절도(shoplifting)) 에 이용	법관, 경찰, 법원공무원(court officials)이 지역사회와 권한을 공유. 즉, 선정(selection), 제재(sanction), 후속조치(followup). 현재 법원 업무부담(caseloads) 에는 최소 효과(minimal impact)

	형사화해·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	보상위원회 (Reparative Boards)	가족집단협의 (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서클 (Circle Sentencing)
준비 (Preparation)	전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대면(face-to-face) 준비작업. 경우에 따라 전화통화 접촉.	위원회 구성원에게 서비스전단계 훈련(preservice training) 제공 개별심리(individual hearing)에 대한 사전준비 없음.	모든 참가자에 대한 전화접촉으로 참가를 장려하고 절차를 설명함. 뉴질랜드 모델은 가해자, 가해자 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방문을 요함.	서클 개최전 가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광범위한 작업(estensive work). 서클 절차를 설명. 규칙을 설명.
후속조치 (Followup) 집행 및 감시 (enforcement and monitoring)	다양함. 조정자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기타 프로그램 직원이 책임담당.	보호관찰의조건. 코디네이터가 감시(monitor)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신청(petition of revocation).	불명확. 호주(와가와가): 경찰, 뉴질랜드: 코디네이터. 미국 및 캐나다: 기타	지역사법위원회(Community Justice committee). 법관은 범죄자의 계획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징역형을 유예(hold)할 수 있다.
주요 목표 (Primaty outcome(s) sought)	피해자가 범죄의 영향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relay), 감정과 필요사항(needs)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 피해자가 절차에 만족하며, 가해자가 해악에 대한 인식을 체고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감하고, 회복 계획에 합의하는 것.	의사결정절차에 시민이 관여하고 참가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회복계획을 결정하고; 피해자 인식, 교육, 기타 장래 재범방지를 위한 방식에 대한 기타 활동을 요한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 가해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한편,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며 가해자의 재통합을 촉진한다. “필요(need)가 아니라 행위(deed)” (즉, 가해자의 필요가 아니라, 범죄가 및 행해진 해악(harm)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경우 집단적 책임(collective accountability)이 강조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분쟁해결 및 범죄예방능력을 증강시키고, 보상적 재활계획(reparative and rehabilitative plan)을 발전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의 안전문제를 고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그룹에 책임을 부과하고(assign responsibility) 자원(resource)을 확인한다(identify)

* 출처 : Bazemore & Umbreit, 2001 : 1-11, 김지선(역), 2004(2) : 12-13

(2)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적용사례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성폭력사건에 적용한 실험사례는 아직 없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이 성범죄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 호주에서 시행되었던 2가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이 심층조사는 진행과정과 범주의 법적 절차에 관한 관계자들의 감정변화와 그 효과, 영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하에 요약 제시될 로지의 사례와 타냐의 사례의 자세한 기록은 K.Daly and S.Curtis-Fawley의 글에 나와있다(박강우, 2007 : 55-70).

가. 로지의 사례

로지는 매우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10대 소녀로 병영캠프에 참가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17세의 릭이라는 소년으로 같은 병영캠프에 참가했다. 훈련생은 은폐와 엄폐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로지는 낮에 발목을 다쳐 걷기 힘들었고 릭은 다른 훈련생을 먼저 보내고 로지와 남게 되었다. 릭은 로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로지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고 로지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국부주변을 움켜쥐었다. 로지에 따르면 이러한 릭의 행위는 4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릭은 로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로지는 계속 저항하면서 릭의 배를 팔꿈치로 가격한 후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였다. 릭은 로지의 벨트를 잡고 로지가 도망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로지는 도망갔다. 로지는 캠프로 귀환하여 바로 다른 생도에게 알렸고 약 3시간 후 여성경찰관이 캠프에 도착하여 로지를 인터뷰하였다.

릭은 부모 입회하에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다. 가슴과 등을 문지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부주변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는 성폭력(indecent assault) 혐의로 기소되었다.

처음 인터뷰한 여경은 전문가답게 로지를 위로하고 공포를 제거해주었으나 캠프 관계자들이 그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두었다는 점이 로지에게 사건처리의 부정적인 기억이었다. 사건이후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해 항불안제 처방을 받았다.

입건이후 협의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법원에 보고하는데 4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지와 릭 모두 절차의 지연으로 고통을 받았다. 협의프로그램 전에 릭은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서 상담가인 그웬을 몇 번 만났고 그웬도 협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협의프로그램 당일 버스를 5시간이나 타고 로지와 할머니는 남호주 에들레이드 시에

도착하였고 여비는 모두 자비를 부담했다. 협의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로지와 할머니가 비행기로 되돌아갈 때 공항까지의 택시비만을 지원하였다. 거리 때문에 로지의 상담가는 참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협의 참가자 구성의 불균형이 왔다. 릭, 릭의 부모, 릭의 상담가(그웬)와 로지, 로지의 할머니만 참석했다. 소년사법보좌관이 협의를 주재하였고 남성경찰관이 참석하였다. 사건 후 15개월이 지나, 릭은 18세, 로지는 13세였다.

릭의 상담가가 다른 모임으로 먼저 자리를 떠나야 되자 소년사법보좌관은 로지보다 그웬에게 우선발언권을 주었다. 피해자보다 그웬과 같은 전문가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다음으로 릭에게 사건에 관한 진술권이 부여되었다. 릭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when it happened)”와 같이 매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자 소년사법보좌관은 이런 모호한 표현을 제지하면서 “네가 성폭력을 했을 때(when you indecently assaulted)”와 같이 말하도록 정정하였다.

가해자와 그 지지자들이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할 때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개입하고 있었다. 참여경찰관도 로지를 강력히 변호하였으며, 그는 릭에게 릭은 법을 위반했으며 협의에 회부된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로지는 빨간 모자를 쓰고 나온 릭에게 놀라서 나중에 빨간 모자만 봐도 불안해졌지만, “이 사건으로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릭에게 말했으며 이점이 회합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년사법보좌관은 말하였다. 릭은 직접적 사과가 아니라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였고 릭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릭, 로지를 보고 말해라”라고 깨우쳐 주었다. 로지는 “이봐 릭,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네 사과를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네가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라고 대답하는 등 로지는 매우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로지가 원했던 릭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양로원 봉사는 협의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협의 이후 로지는 더 이상 릭에 대해 화가 나거나 릭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협의가 불공평하고 힘의 불균형이 있는 등의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지만 로지는 이번 사건 처리방식에 만족했다. 즉, 법원에 가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타냐의 사례(가정내 성폭력)

타냐가 12살이었을 때 타냐의 엄마인 내시는 닉과 재혼했다. 닉에게는 앤디(11세)와 잭(16세)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잭은 타냐를 몇 번에 걸쳐서 성폭행하였으나 잭은 모두 타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신고이후 타냐는 조부모의 집으로 이사했고 잭은 친부와 계모의 갈등으로 부모집으로부터

쫓겨났다. 이후 친모의 집으로 옮겼는데 친모를 칼로 협박하여 쫓겨났다. 이후 주거가 부정하여 정신병원에도 잠깐 수용되었다. 타냐는 책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하지 않았는데 타냐의 거친 행동이 학교선생님에게 인지되어 엄마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타냐의 할머니가 타냐를 학교에서 픽업한 후 왜 말썽을 피우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타냐가 사건을 털어놓았다. 타냐는 책이 처벌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 협의회부에 분개했다. 타냐는 책을 보거나 책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거절했었다.

타냐는 나중에 여경의 설득으로 협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타냐는 책을 두려워한 점도 있었지만, 타냐의 편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친모와 계부는 참석하고 그녀의 편인 조부모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 점이 불참을 주장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타냐는 자신을 지지할 사회복지가의 참석을 원했다. 친모와 계부는 타냐와 책 모두 잘못했고 사과해야하며, 이 사건은 두 청소년의 억제되지 않는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친모와 계부는 타냐를 완전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고 조부모는 타냐를 완전한 피해자로 보고 지지하고 있었다.

사건발생 후 16개월이 지나 협의가 개최되었으며 소년사법보좌관, 여경, 책, 계부, 친모, 타냐, 타냐의 사회복지가가 참석하였다. 협의 초반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폭력적 언사가 돌출되었다. 소년사법전문가는 협의 장소를 더 큰 방을 옮겨가며 사람들을 떨어뜨려 앉혀야 되었다. 타냐를 테이블 한 쪽 끝에 앉혀서 책의 폭력과 소란으로부터 타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협의 도중에 책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책을 때리려고 하기도 했다.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냐에게 이 사건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타냐의 친모와 계부는 협의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시작 전의 태도와는 달리 책의 여러 행동과 말들을 꾸짖고 타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타냐는 합의문이 책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가족문제나 책의 난동을 정리하느라 회합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 배가 고프는 점이 힘들었다고 한다. 타냐가 주장한 책의 사회봉사명령이 다른 참여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책의 정신건강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책은 양극성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고, 협의 중 성관계를 가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책은 “나는 머리로 생각하는 대신에 거시기(사타구니를 가리키며)를 생각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책에 대해 관대해 보이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타냐는 협의에 참석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친모, 계부 등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시간낭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나쁘니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협의 전후에 책에 대한 타냐의 감정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며 타냐의 심리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별로 도움을 못주었다.

소년사법조작관은 재판보다 협의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으며 피해자도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나는 협의보다는 잭이 재판을 통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다.

다. 시사점

로지와 타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따라서 정서적인 치유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협의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이나 가해자의 사과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나의 사례에서는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친모와 계부와의 관계도 망가졌다.

타나 사례의 경우 잭에 대한 관대한 합의문 때문에 타나는 불만이 있고 피해자의 정서적 치유가 완전히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타나에 대한 친모와 계부의 시각이 이번 협의로 인해서 달라지게 된 점, 타나의 생각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잭이 재판을 통해 강력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었지만 타나에게는 응보적 쾌감 외에 얻는 소득을 없었을 것이다. 정신이 불온전한 아들을 향한 계부의 눈먼 사랑으로 인해서 타나의 성폭행 피해사실은 계속 부정되었을 것이고 친모조차 잭과 타나의 불장난에서 기인한 사고라고 계속 생각했을 것이다. 정신적인 문제성이 보이는 잭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라, 타나가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이며, 보호받고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타나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속해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타나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타나의 피해 회복에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잭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타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협의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외국사례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2.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외국사례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정책 분석¹⁰⁾

(1) 정책현황

아동·청소년 성보호관련 국가정책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먼저, 성범죄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게 되면 국가정책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대응정책으로 나뉘어지며 대응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나뉘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예방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성교육이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벌 외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예방정책의 하나이다. 가해자에 대한 사후대응책으로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충동역제 약물투입,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으로 정신과치료프로그램, 쉼터제공, 법률지원 등이 있다. 성폭력관련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으로

10) 이 부분은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나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개념’에 피해자만 들어가지 않고 가해아동·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응징’의 시각만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점도 들어간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속해있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소년사건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정책은 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Wee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가해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해서는 성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포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동학대에 성학대가 포함되므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정책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의 공개와 취업제한제도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성폭력예방에 관련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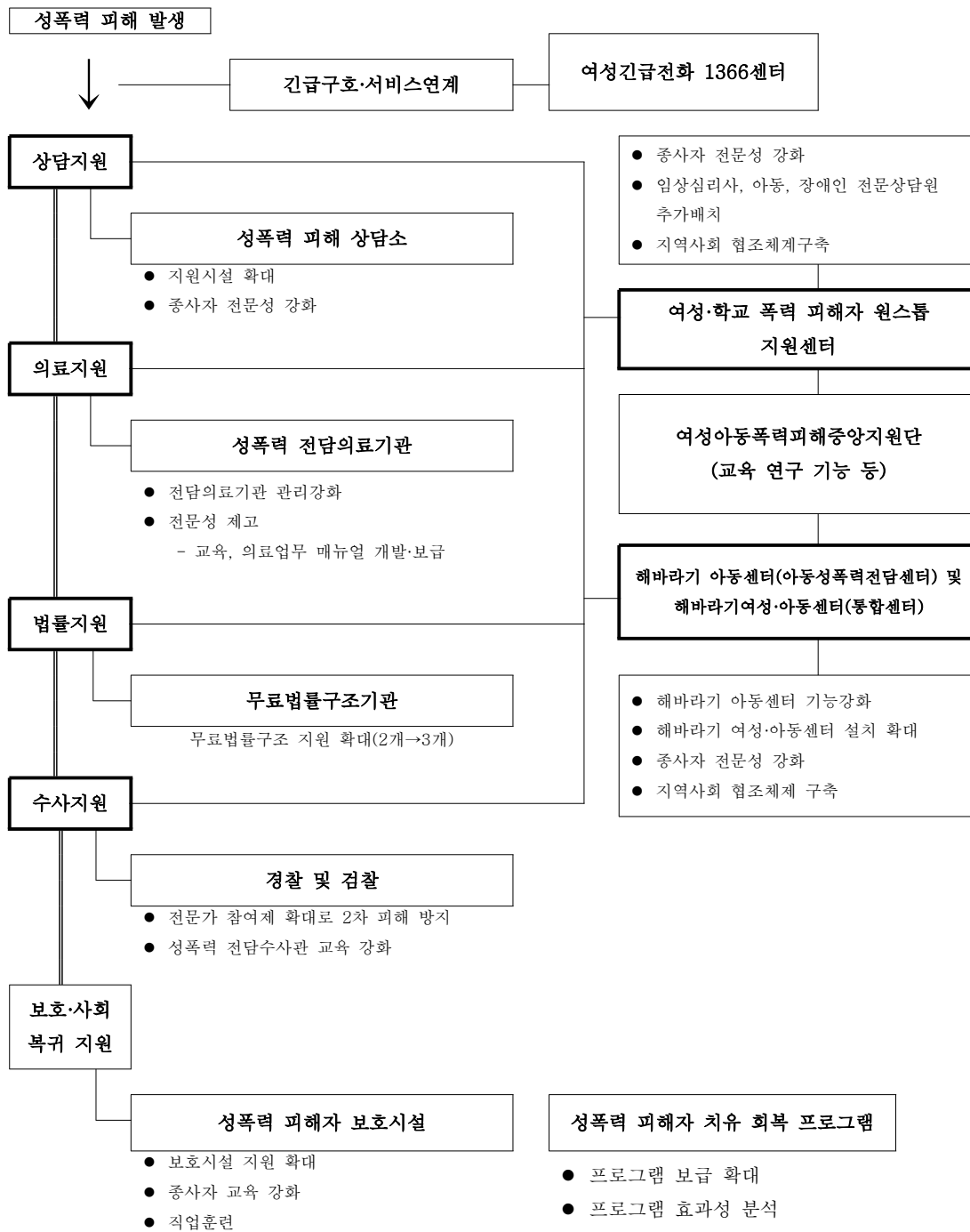
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크게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보호 및 사회복귀지원으로 나뉜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무료법률구조기관, 경찰 및 검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비롯하여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이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필수적인 긴급구호 및 지원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상담지원의 허브인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대해서는 지원시설의 확대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의료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의료기관 관리의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지원에 있어서는 무료법률구조기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수사지원에 있어서는

경찰 및 검찰의 형사절차단계에서 성폭력 전담수사관 교육의 강화와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하여 2차 피해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의 확대와 종사자의 교육강화, 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의 확대를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이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과제이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임상심리사 및 아동·장애인 전문상담원의 추가배치,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p.385

【그림 III-1-1】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가) 성폭력전담센터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ONE-STOP 지원센터가 16개소,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9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6개소 설치되어 있다.

표 III-1-1 통합지원센터 설치현황

구분	개소수	소재지역
ONE-STOP 지원센터	16개소	서울, 보라매(서울동작),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기북부, 경남, 제주, 충남, 전남
해바라기 아동센터	9개소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북, 경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6개소	부산, 강원, 전남, 서울, 울산, 경북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재구성

표 III-1-2 통합지원센터 비교

구분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대상	성폭·가폭·성매매·학교폭력피해자	13세 미만 아동·정신지체 장애인	성폭·가폭·성매매
현황	16개소	9개소	6개소
근무형태	365일 24시간	09:00~18:00 * 퇴근이후 재택당직근무 실시	365일 24시간
경찰근무	여경 파견	-	여경 파견
위치 및 규모	병원 내(內) 20~30평 규모	병원 외(外) 100평 규모	병원 내(內) 20~30평 규모
주요업무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심리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심리·의료지원
예산지원 방식	서울 : 국고 50% 지방 : 국고 70%	국고 100%	국고 100%
비고	피해자 긴급지원, 수사지원	전문적 심리치료	원스톱+해바라기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대상으로 한다.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병원 내(內)에 위치하고 20~30평 규모인 것에 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병원 외(外)에 위치하며 100평 규모로 위치 및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 통합지원센터 중에서 아동전담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다.

㉠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아동·청소년은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하고,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2003년 11월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립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2004년 6월 연세대학교 병원에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문을 연 뒤 2005년 6월에 영남과 호남에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문을 열었고 2008년 12월에는 경기도에서 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에는 <표 III-1-3>과 같이 전국에 9개소가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전문 피해상담,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평가, 산부인과와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자문 변호사에 의한 법률 및 소송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 등의 예방사업도 하고 있다.

표 III-1-3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치현황(9개소)

소재지	위탁운영기관	개소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병원	2004.6.18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2005.6.9
인천 남동구	길병원	2009.7.17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2005.6.29
경기 성남시	차병원	2008.12.26
강원 춘천시	강원대병원	2009.7.21
충북 충주시	건대충주병원	2009.7.22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	2009.7.6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2009.8.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안내, p.4

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기존의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통합모델에 해당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010년 2월 기존 부산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부산 원스톱지원센터가 기능강화의 목적 하에 통합되어 동아대학교 병원에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개소하여 현재 6개소가 있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여성가족부, 시·도, 경찰청, 수탁병원 4자 협약으로 센터의 운영이 위탁된다.

표 III-1-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현황

소재지	위탁운영기관	개소일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2010.12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2010.2.9
울산	울산병원	2011.12.14
강원	강릉동인병원	2010.9.8
전남	목포중앙병원	2010.9.29
경북	선린병원	2011.11.2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c),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사업안내, p.6.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선 대응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연계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하며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도 행하고 있다.

표 III-1-5 성폭력상담소 현황

(2012년 6월말 기준/단위: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폭력 상담소	179 (20)	20 (2)	6 (1)	4 (1)	6 (1)	13 (1)	5 (1)	4 (1)	42 (3)	6	7 (1)	11 (2)	12 (2)	10 (1)	16 (1)	14 (1)	3 (1)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입

(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등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2012년 6월말 기준 전국에 20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219명이다. 20개소 중에 부산·광주·충북시설은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친족성폭력 아동·청소년전용쉼터가 경북과 경남에 각각 1개씩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입소정원은 개소 당 15명씩 총 30명이다. 이 외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국에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6월말 기준/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0	2	2	1	1	2	-	1	5	1	2	-	2	-	-	-	1
입소정원	219	20	30	12	10	20	-	10	50	10	25	-	20	-	-	-	12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장애인시설 - 부산 1(15명), 광주1(10명), 충북1(15명)

시설 입소 대상자는 성폭력 피해자이며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하게 된다.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현황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친족성폭력피해자, 정신지체인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성폭력피해지원시설에서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하고 있다.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하고 있다. 입소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특별보호가 이루어진다. 학령 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때 주소지외 지역에서 전·입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성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에 있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학할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입학 요청하게 된다. 이때 '성폭력 발생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전용쉼터 포함)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퇴소한다. 장애인 입소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게 되어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기본적으로 6개월이 보호기간이나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통해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통해서 만 18세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퇴소한 자가 재입소한 경우 위 보호기간을 새로이 적용하게 된다.

(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전용쉼터(여성가족부, 2012a : 88)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증가함에 따라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성년이 되어 자립 시까지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치료, 보호, 학업 및 자활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 사회적응 및 복귀 추진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의 목적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전용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운영된다. 전국에 경북과 경남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친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 상담 치료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자가 동행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숙식 및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한다. 그리고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피해배상청구 등 사업처리 절차에 대한 관계 기관(법률구조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한다. 피해자의 학교생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자립지원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한다. 이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외에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사업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전용쉼터의 설치기준 및 절차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입소대상자는 19세 미만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친권자가 입소에 동의를 하는 경우를 입소 조건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 입소조건을 준용한다. 퇴소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가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 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친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쉼터에서 도저히 생활하기 곤란한 자는 퇴소조치 당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시·도와 협의한 후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득한 후에 퇴소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간 입소일로부터 만 18세가 달할 때까지이며, 만 18세 도달하였으나 학업(고등학교에 한함)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학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토록 조치가능하다. 다만,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퇴소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 조치 후 퇴소 조치하고 있다. 전용쉼터의 관리·운영은 보호시설 규정을 준용하며 매일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한다.

(마)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여성가족부, 2012a : 95)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 한해 지원하고, 만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도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의사의 소견서 첨부)하다. 특히, 정신과 진료의 경우 가급적 대상자(피해자·보호자 포함)를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가·대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㉓ 의료지원의 범위

의료지원의 범위는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성폭력피해의 치료,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진단서 발급, 기타 성폭력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이다.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고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치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가정·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하고 있다.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지원 시 지원기관별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타 법률과 저축이 우려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하지만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된다. 특히, 정신과 진료의 경우, 정신과 진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리치료비(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피해자를 범피기금사업으로 수행 중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저소득 의료급여(1,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을 지니는 바, 고가의 한방 첩약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므로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4~6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의 소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인근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가능하다. 임대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대료만을 지원하고 있다.

㉠ 치료보호지원기한

치료보호 지원기한은 피해발행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 치료보호비용 예산

치료보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대상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선기관인 시·군·구,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이다. 배정방법은 시·도의 경우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

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지원 일부를 자체 보유(전체 의료비 예산의 10% 정도)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에 예산 배정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없는 상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 대상에서 제외 원칙이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내의 치료보호 실적이 특히 높은 상담소를 비롯하여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피해자 진료에 적극적인 대형 ‘전담 의료기관’ 등의 예산소요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배정 또는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정산관리한다. 이는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도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급은 불가능하다.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는 필요 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치료보호 조치해야한다(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상담소 및 보호 시설 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취지).

성폭력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속한 관할지역의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등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별 과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배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의료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지역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㉔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이 내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한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이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의 ‘피해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가능하다.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③ 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경우(해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혹은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서만 제출)

㉞ 의료비의 청구

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혹은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한다.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다.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등¹¹⁾을 첨부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혹은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한다.

㉞ 비밀준수 의무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 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11)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㉔ 성폭력 응급키트¹²⁾

성폭력 응급키트는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응급 의료용품으로 의료기관 등에 무상 보급되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 성폭력응급키트 사용에 따른 처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바)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과 지적장애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운영된다. 사업수행기관은 교정기관 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의 범죄 기록과 법정 판결문(사건경위서), 위탁서, 의견서, 동의서를 넘겨받아 가해자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로 및 상담료와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㉕ 프로그램 운영 기준

프로그램은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 교정·치료상담, 최종교정·치료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은 intake 단계로 나이, 범행 유형, 범행 횟수, 가해자 의식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적합한 치료모형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때 강사는 전문강사(Ⅱ)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집단 교정·치료 상담은 주진행 1인,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되며,

12) 구성물품

- 종이봉투(겉옷·속옷·이물질 수집봉투 각 1장, 단계별 증거채취용 봉투 8장, 서식봉투 1장)
- 종이보 2장, 종이수건 1장
- 멸균 포장된 면봉세트 5개(면봉 2개/세트)
- 멸균 포장된 슬라이드글라스 보관세트 4개(슬라이드글라스 2개/세트)
- 손톱깎기와 손톱밀 긁개(Scraper) 각 1개
- EDTA 튜브 1개(EDTA: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 빗 1개
- 동의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검진결과 채취물목록, 사용안내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시 유의사항, 증거채취물흐름도 각 1부
- 일회용 장갑 1컬레, Police evidence 표시라벨, biohazard 라벨, 성폭력응급 키트 포장상자 1개

주진행 강사의 경우 대상자 10인을 기준으로 최소 4인을 확보하고 대상자 5인 증가시마다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매뉴얼이 활용된다. 최종 개별 교정·치료 상담에서는 가해자의 변화 정도 및 변화 지속 여부가 확인된다. 가해자에 따라 초기 개별 교정·치료 상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알코올 치료, 사이코 드라마, 소시오 드라마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미술치료·심신회복캠프·문화체험 등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㉞ 표준 운영모델

표준 운영모델은 수용자를 전제로 한다. 수용자에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와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가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담소 내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교정 및 치료 상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강사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갖춘 전문강사이다. 가해자 10인을 기준으로 4인 이상의 전문강사를 확보해야하며 가해자 5인 증가마다 1인을 추가해서 확보해야한다. 개별상담의 경우 1회 1시간 내외, 집단상담의 경우 1회 2~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집단상담 중에 구성원의 추가 참여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폐쇄형 집단 프로그램과 개방형 집단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상담대상자들이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난폭 행동 등의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경우를 대비해 사전 계약 때 비폭력을 명시하고 경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표 III-1-7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표준운영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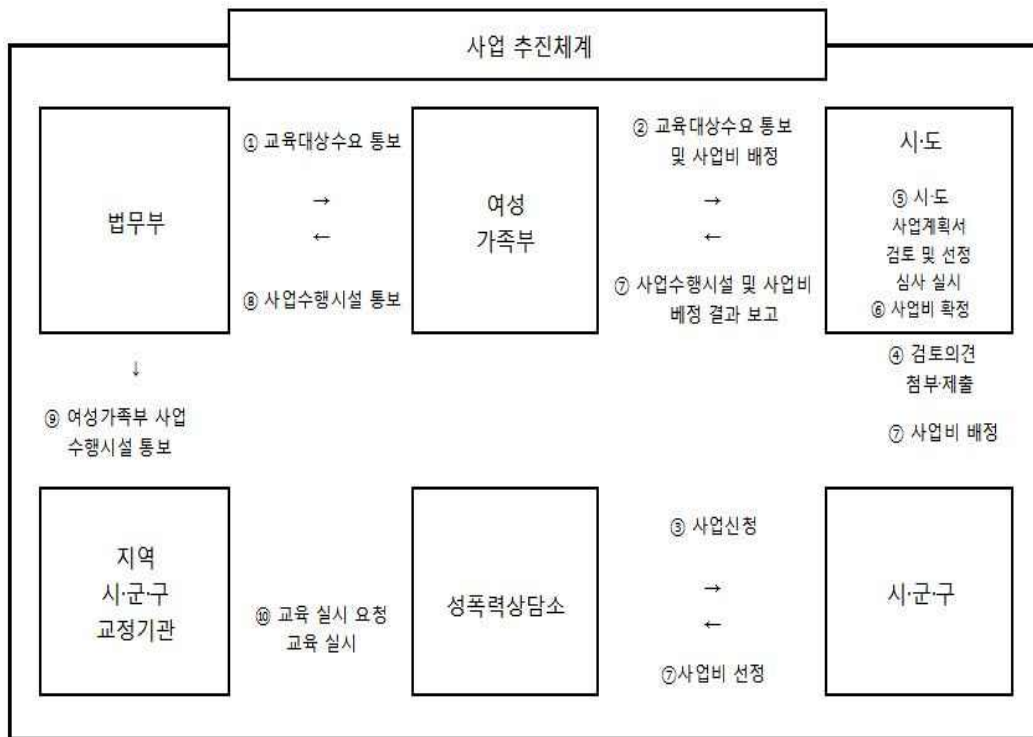
구 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장 소	○ 교도소, 구치소 수감자 → 교도소, 구치소 ○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담소 내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교정·치료 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진행자	○ 모든 강사는 공통기준을 갖추어야 함 ○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진행 : 전문강사 1, 2 ○ 집단 교정·치료 상담 진행 - 주진행 1인 : 전문강사 1, 2 - 보조진행 2인 : 전문강사 1
전문 강사	○ 전문 강사의 자격요함 ○ 가해자 10인 기준으로 4인 이상 확보 - 가해자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 확보

구 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운영 빈도	○ 개별 교정·치료 상담 1회 1시간 내외 ○ 집단 교정·치료 상담 1회 2~4시간
집단구성의 원칙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집단의 개방과 폐쇄	○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 으나,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인으나에 따라 구분 - 폐쇄형 집단 원칙 - 수요가 많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집단을 시작한 후 신규 수요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위기 대처	○ 행위자가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난폭 행동 등으로 통제 불능의 경우 - 사전 계약 시 비폭력 명시 -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의뢰한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 의뢰한 기관으로 반드시 통보할 것
교정·치료의 기본관점	○ 여성주의 인지행동적 관점 - 가해자의 성인식 및 통념의 인식체계를 수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시키는데 초점
기록관리	○ 대상자(행위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사후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 출처 : 여성가족부(2012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117.

㉔ 성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시·도, 시·군·구, 성폭력 상담소, 지역 시·군·구 교정기관은 연계되어 있다. 법무부(교정기관 등)에서 교육대상의 수요를 파악해서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면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교육수요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업비를 시·도에 교부한다. 프로그램 운영시설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접수하면 시·군·구에서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 사업수행시설을 선정하게 된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12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119.

【그림 III-1-2】 연계체계

(사)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일부로 가족 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갈등, On·Off-Line 상 유포되는 각종 폭력 및 음란물, 배금주의에 따른 성의 상품화 등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무료 법률지원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18개 지부 및 39개 출장소가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각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연계되어 있다. 주요지원대상은 국내거주

외국여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이고 입증자료¹³⁾만 있으면 된다.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 초과되면 여성가족부 담당 과장과 시설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수(3~5인)에서 추가지급여부가 논의된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게 통역비(수화통역 포함)의 지급이 가능하다.

선임된 변호인은 피해자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임 선임의 특례) 개정(2011. 9. 15. 시행 2012. 8. 2.)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외에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계몽사업도 펼치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을 하고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 대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 현황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다.¹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며 파견형태 등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취업중(사실상 노무 제공중)인 자의 경우 직권조회가 가능하다.

13)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14) 선고유예, 기소유예자, 형 면제, 공소기각 된 자는 대상이 아님

<취업제한 기간 및 적용시점>

- 2006. 6. 30~2008.2.3.까지 : 5년
 - 2006.6.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08.2.4. 이후 : 10년
 - 2008.2.4.~2009.12.31. : 2008.2.4.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
 - 2010.1.1.~2010.4.1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 2010.4.15. 이후 : 2010.4.15.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로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적용

<기관별 적용시점>

- 2006.6.30.부터 적용
 - 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2008.2.4.부터 적용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 2010.1.1.부터 적용
 -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2010.4.15.부터 적용 :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표 III-1-8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방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육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호,3호	"	※개인과의 교습자: '10.4.15일부터 적용
4.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1.1부터 적용
4-1.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	'10년 1.1부터 적용
5.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	
6.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문화의집·특화시설·아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공연시설:공연장,영화산영관, 야회음악당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문고 -기타: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의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방부처	비고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등			
	과학관	과학관육성법 제2조1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2호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3,14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1호	"	
	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시행령 제17조8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 (시행령 제17조8호)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체육시설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7. 청소년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8.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9.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	

취업제한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방부처	비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제2조제5호, 제16조		
10.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1.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1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2호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12. 체육시설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 출처 : 여성가족부(2012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192-194.

(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보와 가치관을 주로 인터넷 음란물 및 포대를 통해서 그릇된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으로 진행되어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립에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를 시작으로 성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참여형 성교육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목적이다.

2007년 기준 5개소에 더하여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2010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1년 현재 41개소가 있으며 이동형 버스가 한 대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간의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유대강화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다) 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강화정책

(가)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폭력추방주간 실시

㉠ 성폭력예방교육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추방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을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 - 관 협력 · 연계와 자원 · 정보교류의 기반 이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인 「아동·여성보호 종합 대책」(’08.5월) 및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09.10월), 「아동안전 보완 대책」(’10.6월)의 핵심과제로 특히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매매, 학교내 성폭력 포함), 가정폭력(아동학대포함)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성매매(성인 대상), 학교 폭력, 유괴 등도 포함된다.

광역지역연대(광역시·도)는 운영위원회(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분과)로 구성되고 기초지역연대(시·군·구)는 운영위원회(소위원회)와 사례관리팀(공동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된다. 지역연대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구성·운영하며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 아동업무 관련 부서 및 여성업무 관련부서, 여성·아동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과 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아동보호관련 기관과 시설(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아동 및 가족지원 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교육기관(교육청, 초·중등학교 등), 경찰 및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지역주민대표(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단체, 대한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패트롤맘, 녹색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어머니연합회, 주부교실, 자율방범대, 어머니(여성)자율방범대, 여성의용소방대, 여성회, 여성지도사회, 여성유권자 연맹, 적십자봉사회, 노인회, 안전지킴이, 학부모회(육성회) 등),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등의 기관 유형 중 5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히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아동보호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은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다.

향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의 정책방향은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허브로서 안전망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연대의 과제이다. CYS Net,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Wee 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의체와 연계하게 된다. 피해자 및 가족보호·지원을 위한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연계강화를 위한 운영모델의 보급하고 점검, 평가 체계화를 통한 예방 등이 준비되고 있다.

(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CYS-Net)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의료서비스, 자립 등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지원체계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 안정망 정책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5개 지역에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16개 시·도 및 17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센터의 개소수가 연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2009년 11월 이후 증가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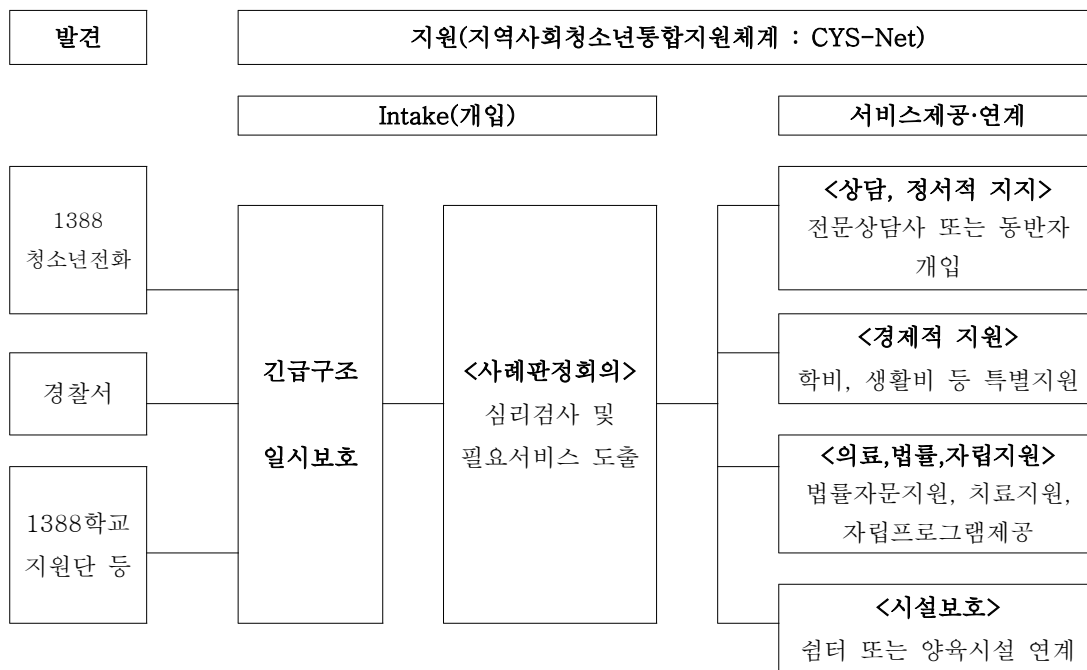
표 III-1-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도	5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시군구	-	52개소	65개소	81개소	150개소	170개소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p.179.

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1388청소년전화, 경찰서, 1388학교지원단 등을 통해서 발견된 지원대상청소년에 대해서 개입과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이나 연계를 하고 있다. 긴급구조와 일시보호가 이루어지고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심리 검사 및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전문상담사나 동반자가 개입하여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비나 생활비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법률자문지원과 치료지원은 물론이고 쉼터 또는 양육시설과 연계해주시기도 한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자립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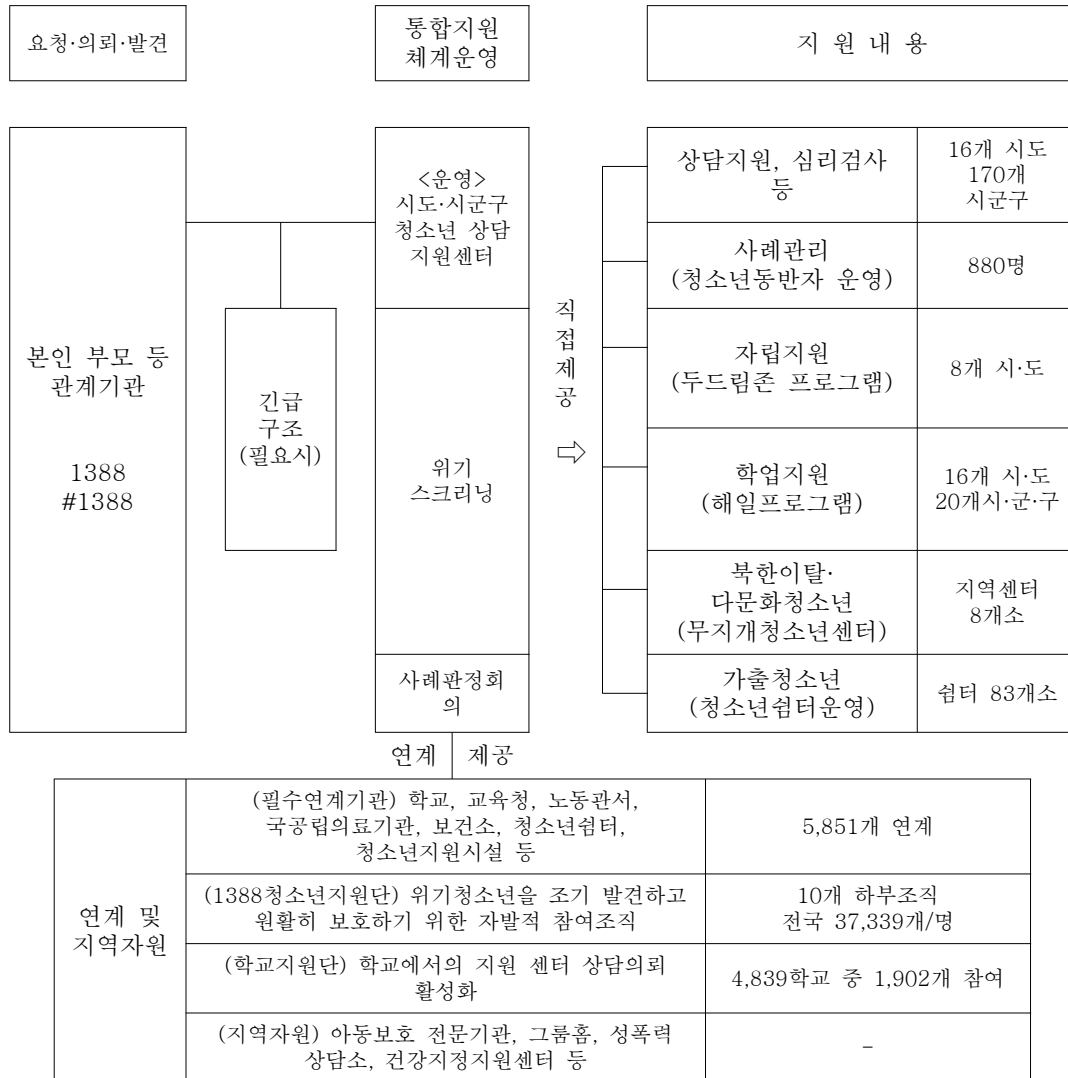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p.178.

【그림 III-1-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및 1388에 의해서 요청·의뢰·발견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담지원 및 심리검사, 청소년 동반자 운영, 현물지원, 자립지원, 학업지원,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지원, 가출청소년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 통합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p.179.

【그림 III-1-4】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도

㉔ CYS-Net 서비스별 제공 내용

CYS-Net 서비스별 제공 내용에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등이 있다. 연차적으로 모든 서비스별 제공 실적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의 증가폭이 크다.

표 서비스별 제공 내용

구분	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 생활 및 경제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및 권리 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07년	412,811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08년	434,281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09년	715,58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10년	1,403,494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1.6말	662,293	439,351	20,800	85,924	52,568	6,642	2,061	731	54,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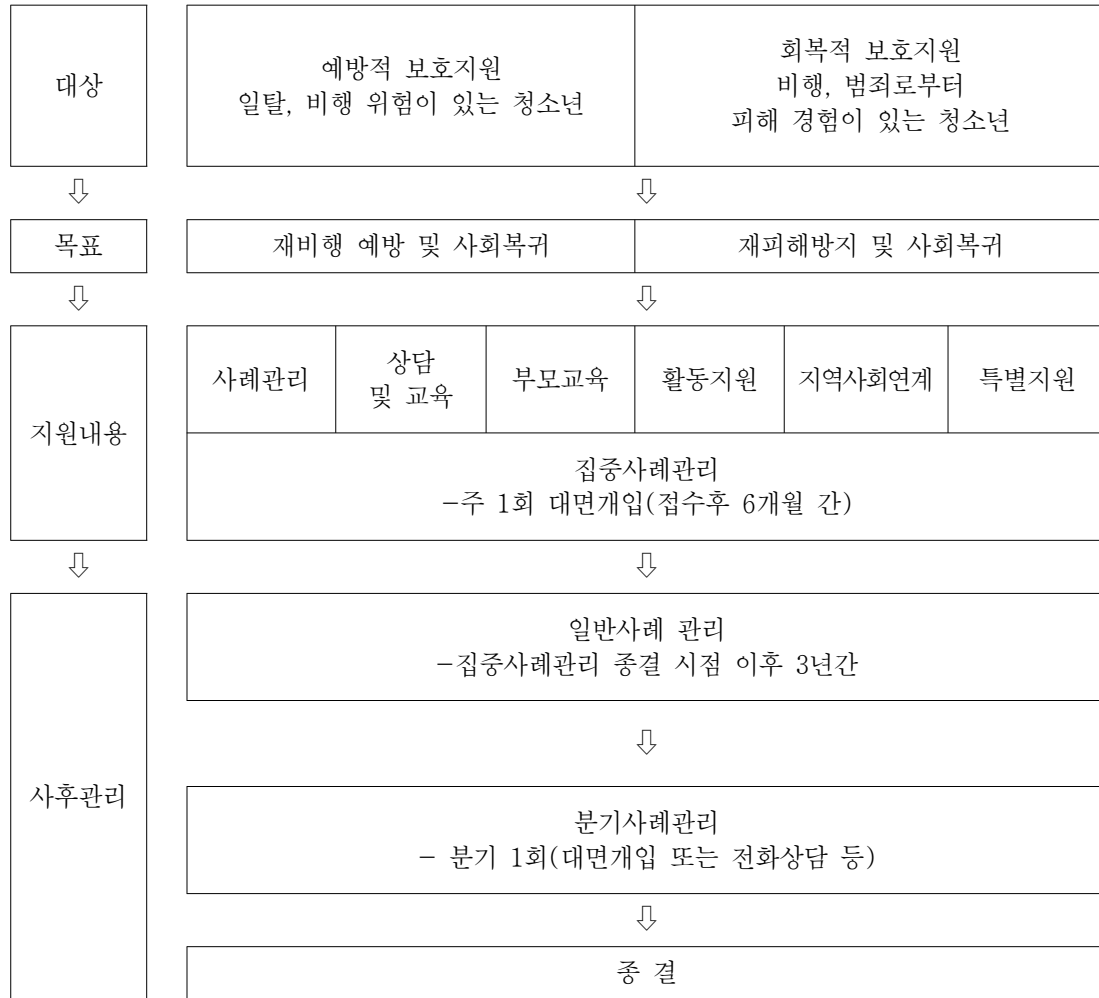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p.181.

㉕ 청소년 비행·폭력 예방 및 교육적 선도

폭력 피해 청소년과 가족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로 폭력예방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비행을 행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예방적 보호지원대상)과 비행·범죄 경험이 있는 청소년(회복적 보호지원 대상)들의 비행 및 재범 예방과 학교 및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및 교육, 부모교육, 활동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별지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예방적 보호지원은 소년사법 처분대상자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계도나 심각한 범죄로의 예방을 내용 및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 회복적 보호지원은 다른 법의 조치가 완료되어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지원이 필요한 경우(재범방지 일부 포함)에 이루어진다. 예방적 보호지원은 본인과 보호자,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회복적 보호지원은 학교장과 소년부 판사(결정),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원장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한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p.202.

【그림 III-1-5】 교육적 선도 대상청소년 지원내용 및 교육절차

나. 법무부

법무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성인 범죄자에 대한 정책은 제외하고 소년사범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에서는 성폭력소년사범에 대한 내방 프로그램운동을 하고 있다. 김천 소년교도소의 경우,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새날프로그램을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서 운영하였다.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20시간~25시간 전후로 재범방지교육의 일환으로 성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0년까지는 2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40시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2년 400명 정원 중 75명이 성폭력 관련 소년사범이고 이중에 46명이 4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 이수 중에 있다. 2010년은 성폭력 관련 소년사범 70명 중 42명이 2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70명 전후의 소년사범에 대해서 40여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은 2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몇 주에 걸쳐서 하는 동안 소년사범의 이동 및 결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수를 완벽하게 마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출소 전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기가 많이 남은 소년사범의 경우에는 해마다 성폭력 소년사범으로 분류되지만 출소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석방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그래서 70여명의 소년사범 중에 40여명 정도만이 교육대상자가 된다. 또한 소년교도소에서는 프로그램의 완전한 이수 인원만을 통계처리하기 때문에 시작인원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통계자료와 다를 수 있다.

나) 소년원

소년원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에 방교육은 소년원 입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입생 교육시 4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기본 교육시 분기 1회 정도 특강과 보건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교육을 하고 있다. 올바른 성개념, 책임지는 성, 성폭력 방지 등 건전한 성의식의 함양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지역 소재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소년원 학교 자체강사가 교육하고 있다. 2008년 1월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는 85,191명이다(중복교육자 포함).

표 소년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3월말기준)
이수자 수	12,129명	20,932명	23,036명	23,009명	6,085명

* 출처 : 법무부 소년과(2012), 내부자료.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남성소년원생을 대상으로 10회를 기준으로 20시간~40시간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자체프로그램과 외부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2009년 '성비행 가해 청소년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외부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피해자 상처를 공감하고 사과하기,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전환, 성폭력 중단 선언 및 재발방지, 자존감 향상 등을 내용을 한다. 자체 강사 및 연세대 인간행동 연구소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 까지는 소년원 10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기존 소년원 10개 기관을 포함하여 필요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개소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말까지 1,211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표 소년원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실시인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3월말기준)
이수자 수	72명	181명	432명	426명	100명

* 출처 : 법무부 소년과(2012), 내부자료.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 소년원생에 대해서는 12회의 40시간 내외의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며 교육내용은 성적학대경험의 표출 및 치유하기, 성적학대로 왜곡된 정서·태도·신념 교정하기,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등이다. 여성 소년원인 안양과 청주의 소년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강사가 파견되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지원된다.

소년원은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체 강사풀 양성을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여성가족부 위탁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성교육 전담직원의 여성가족부 위탁교육 이수인원은 2010년 29명, 2011년 28명이다.

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¹⁵⁾을 실시하고 있다.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은 범죄를 행한 소년에 대한 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청소년 가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켜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라는 목표 하에, 성폭력과 관련된 인지적 편견과 왜곡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능력 증진, 재발 방지 등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15회기의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표 수강명령 대상자 중 분야별 집행 현황

구분	계	약 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 타
2011년	10,135	29	440	2,972	2	412	6,280
2010년	9,779	38	485	3,123	2	289	5,842
2009년	10,397	62	987	2,690	0	411	6,247

* 출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2012), 내부자료.

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내용

모 들	회 기	비 고
도입	Session 1. 프로그램 소개 및 관계형성	
자존감 증진	Session 2. 자아개념 확인	
	Session 3. 나의 목표(장기목표, 단기목표) 확인	
인지행동 모형의 이해	Session 4. 사랑과 폭력	
	Session 5. 인지행동 모형의 소개와 이해	
피해자 공감	Session 6. 강간통념수용도의 확인과 수정	
	Session 7.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공감(1)	VTR 시청
방어적 태도의 직면 및 인지적	Session 8.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공감(2)	역할극, 편지

15)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

모 들	회 기	비 고
왜곡 수정	Session 9. 뜨거운 의자(Hot Seat) 준비	
	Session 10. 뜨거운 의자(Hot Seat) 적용(1)	
	Session 11. 뜨거운 의자(Hot Seat) 적용(2)	
재발방지전략	Session 12. 성폭력 발생 모델 이해	
	Session 13. 대화법 이해 및 공감적 태도	
	Session 14.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관리	
	Session 15. 문제해결 기법, 프로그램 종료	

* 출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2012), 내부자료.

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폭력을 다루고 있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Wee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가)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의 현황과 대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학생 559만명 중 25%인 139만명의 학생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동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현황에 대한 분석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과 관련된 폭력이 많아 체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바지를 벗기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중학교의 경우 성폭력 사건(성희롱, 성추행)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성희롱사례가 많았다고 한다.¹⁶⁾ 통계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기는 어렵지만 현재로는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희롱부터 성추행까지 그 범주가 넓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폭력의 현황에 대한 대처나, 후속업무처리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16)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매뉴얼(2012.4.18)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http://www.mest.go.kr/web/60879/ko/board/list.do?bbsId=291>)

나) Wee 프로젝트

(가) Wee 프로젝트 추진배경

가정적, 사회적 문제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학생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국가차원의 학생안전망 구축·운영 필요성 대두되었고 교육기관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이 Wee 프로젝트이다. 학생생활 지원서비스의 일환인 Wee 프로젝트는 감성과 소통의 학생생활 지원서비스로 학생 개인의 역량 극대화 및 품격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Wee 프로젝트 정책은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접목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였다. 2007년 12월 정책안이 도출되고 2008년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Wee는 We(우리)+Education(교육)+Emotional(감성)의 합성어이다.



* 출처 : Wee 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wee.go.kr)

【그림 III-1-6】 Wee 프로젝트 전체 체계

(나) Wee 프로젝트의 체계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중의 학생안전통합시스템으로 정서불안, 학교폭력(성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학습부진 등 위기 학생에 대한 3단계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1차안전망에는 단위학교의 Wee 클래스, 2차안전망으로는 지역교육청차원의 Wee 센터, 3차 안전망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Wee 스쿨을 두고 있다.



* 출처 : Wee 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wee.go.kr)

【그림 III-1-7】 Wee 프로젝트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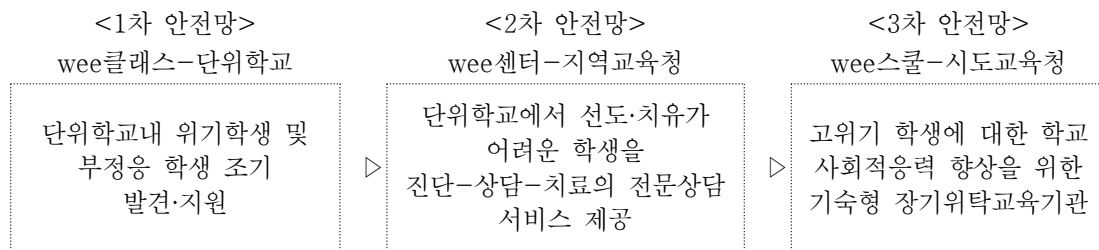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에서의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대상은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자,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학생징계 대상자 등이다. 일반상담, 학교부적응 예방 및 위기학생 조기발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빈 교실 및 학교 내 건물 중 빈 공간(복도 끝, 다목적실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활용하기 좋은 장소를 마련한다.

Wee 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부적응·위기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평가·상담·지원·치료에 이르는 One-STOP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청 기관이다. 전문인력인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과 의사, 평생교육

사, 법률가, 학습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상은 위기학생, 부적응 학생 및 고충상담을 원하는 일반학생, 학부모를 대상, 학생지도에 고충이 있는 교원이다. 학교·사회적응력 향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ee 센터의 경우 여건·상황, 학생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지역교육청 내(內)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되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Wee 스쿨¹⁷⁾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장기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진학과 진로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센터이다. 전문인력인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과의사, 평생교육사, 법률가, 학습치료사 등이 배치된다. 주요 대상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퇴학처분을 받은 학생 중 희망학생, 학업중단자,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기학생이다. 학사관리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 및 원적교 졸업장 발급한다.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지침 마련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공통 기본교과, 심성교육·위기 치유·셀프리더십 배양·학습·진로교육 등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종합프로그램 제공된다.

표 Wee 프로젝트 체계



※ 1,530개교('09년)→ 2,530('10년)→ 3,530('11년)

* 출처 : 공숙자(2010), Wee 프로젝트 개요 및 실제, 상담과 지도 제45호, 한국카운셀러협회, p.489.

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법령 분석¹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17) 3개소에서('10년) → 5개소('11년) → 7개소('12년)

18) 이 부분은 김현우(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해 규정된 주요내용을 법률별로 소개한 후에 종합적으로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차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①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의2).

②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제7조의3 제1항).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제7조의3 제2항).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의3 제3항).

③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

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④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판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 제2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 제1조의4).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7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⑤ 영상물의 촬영·보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른 영상물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상물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18조의2 제6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7항).

⑥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18조의4 제1항).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제18조의4 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4 제3항).

⑦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8조의6 제1항).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제18조의6 제2항).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제18조의6 제3항).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18조의6 제4항).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제18조의6 제5항). 검사는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령 제1조의5 제1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변호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령 제1조의5 제2항).

⑧ 비밀누설 금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2항).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제19조 제4항).

⑨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5조). 1. 피해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령 제2조의2). 1.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25조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⑩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협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조의2).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⑪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30조).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31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청소년 등에게 법 제18조의6에 따른 변호인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령 제6조의4).

⑫ 상담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31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의2 제2항).

⑭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1. 제27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

⑮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제33조 제1항).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33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

⑯ 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 제1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행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제3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38조 제3항).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 제4항). 제3항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8

조 제5항).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 제6항).

⑰ 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의2 제1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8조의2 제2항).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38조의2 제3항).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제38조의2 제4항).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①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②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령 제2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제2조 제2항).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령 제2조 제3항).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 관련 법령,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령 제2조 제4항).

③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제6조).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령 제3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령 제3조 제2항).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④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7조 제4항). 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령 제4조 제1항). 1.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할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령 제4조 제2항).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령 제4조 제3항).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규칙 제2조의2 제2항).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규칙 제2조의2 제3항).

⑤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7조의2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제7조의2 제3항).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의2 제4항).

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8조).

⑦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

⑧ 상담소의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 제3항).

⑨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제11조).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⑩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3항).

⑪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제13조 제1항).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제14조 제1항).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2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령 제5조).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8조 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령 제6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⑭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제24조).

⑮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령 제9조).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된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발급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 제2항).

⑩ 의료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28조 제2항).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규칙 제14조 제3항).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1항).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제2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①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5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6조 제6항).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7항).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8항).

③ 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4) 관련법률의 쟁점사항

① 중복규정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3조 내지 제47조(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42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법 적용의 충돌문제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수범자인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혼란을 가중하게 된다.

a. 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c.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63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4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단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한다.

d.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3조부터 제47조까지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4조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5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6조는 등록정보의 관리,

제37조는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8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는 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은 고지명령의 집행, 제39조는 공개명령의 집행, 제40조는 제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41조는 삭제, 제42조는 비밀준수, 제43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44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는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제46조는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46조의2는 포상금, 제47조는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장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3조는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제34조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5조는 등록정보의 관리, 제36조는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3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는 공개명령의 집행, 제39조는 비밀준수, 제40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41조는 등록정보의 고지, 제42조는 고지명령의 집행에 대해 규정한다.

e.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절차적인 문제

a. 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미성년, 가해자는 친족이 많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하고, 지속적인 범죄증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범인에 대한 처벌요구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배제가 가능하다는 견해(박상식, 2010 : 278)와 공소시효의 연장과 같은 조치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최상욱, 2011 : 342)가 대립한다.

b. 피해자의 의사

제16조는 “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7조의 죄,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규정하는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③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2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의 관계상 문제가 제기된다.

(5) 관련법률의 개선방안

① 구성요건의 통합

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반법규이기 때문이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는 제163조의2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이하가 일반법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이 일반법규이기 때문이다.

② 공소시효기산에 관한 특례규정 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는 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제도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법의 존재로서의 기본조건인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가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3항의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그 객체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③ 피해자의 의사규정 재고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친고죄의 규정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서 같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

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의 관계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 재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다른 심신장애상태에서의 범죄에 비해 음주라고 하는 관대한 문화의 그늘에서 형벌의 감경사유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규범의식 또한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일응 타당한 면도 있다. 하지만 형벌은 책임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형법 제10조에 비추어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가 아닌 경우까지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데에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1) 미국¹⁹⁾

(1) 발생 현황

미국에서 아동보호 서비스국(U.S. 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의 공식 조사를 받은 사건은 2004년 한 해 3,500,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1,000명의 아동 당 약 47.8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NCCD, 2007 : 29). 물론 조사를 받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 전부가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아동학대 서비스나 국가 개입 프로그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아동학대 사건으로 공식 입증이 끝난 케이스는 872,000 건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공식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수치는 다시 1,000명의 기준 수치로 환산했을 때, 전체

19) 이 부분은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1,000명 중 약 11.9명이 미국에서 한 해에 아동 학대 서비스를 받았다는 계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 42).

미국의 아동학대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neglect)이 전체의 6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가 17.5%, 그리고 성적 학대(sexual abuse)가 전체 학대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는 전체의 7.1%, 의료적 방임은 전체의 2.1%인 것으로 나타났다(NCCD, 2007 : 39).

미국의 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2011년에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에서 발간한 『아동 성폭력 예방 정보 패키지』를 살펴보면, 1년에 12명 당 한 명꼴로 미국에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inkelhor, Ormrod, Turner & Hamby, 2005 : 6).²⁰⁾ 또 다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가했던 아동의 6.1%가 성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Turner, Ormrod & Hamby, 2009 : 1419). 성별에 따라 아동 성폭력 피해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17세 이전에 미국에서 여성 아동은 세 명의 한 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남성 아동은 일곱 명 중의 한명 꼴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iere & Elliott, 2003 : 1206).

그리고 아동 성폭력 문제에서 검사의 공소제기 비율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증거의 명백성, 피해아동 증언의 일관성 따라 상이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 사건 절반 이상이 검사에 의해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이 큰 영향을 형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ross, Whitecomb & DeVos, 1995 : 1432).

(2) 개입 및 사후지원 현황

미국 역시 최근 들어 종합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이 강조되면서, 공중보건 모델에 입각한 국가 정책이 핵심 성폭력 예방모델로 적극 활용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아동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 방식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아동의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에만 의존한 예방 전략을 비난하는 시각이 대두되었다(Meintjes, Frreira, & Plessis, 2003 : 1). 즉, 아동의 특성 상 실제 상황에서는 성폭력에 맞서는 아동의 권한부여 강조 방식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동시에 만약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을 비난하면서 자칫 아동의 자기비난이나 죄책감이 발생시킬

20) http://www.vawnet.org/nsvrc-publications/summary.php?doc_id=2651&find_type=web_desc_NSVRC (2012. 6. 1)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Wurtele & Miller-Perrin, 1992 : 35).

종합적인 공중보건 모델이 강조되면서 1차, 2차, 3차 예방 활동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학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1차 예방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 성폭력 위험도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다. 미국에서는 1차 예방 전략으로 산후 유아출산이 이루어진 가정을 모두 방문하여 바람직한 아동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교육 제공 방식이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전략은 빈곤이나, 실업, 교육 등의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그 예방책도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 예방 전략을 따르게 된다(NCCD, 2007 : 20).

2차 예방은 아동 성폭력이 발생할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험 집단이란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빈곤계층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 지원 체계가 부족한 지역사회 등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양육 방식 및 기술이 부족한 가족을 아동 성폭력 고위험 집단에 포함시켜, 각 가정이 요구하는 빈곤, 실업, 건강, 교육 등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2차 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다.

3차 예방은 이미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상대로 재범을 억제하고, 사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 활동들은 이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 발생 가해자 및 피해자로 기관에 알려진 개인과 아동,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사후 지원 및 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활동은 개인 카운슬링에서부터 일시적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중감독, 피해자 보호, 부모 권리 제한 및 박탈, 가해자 형사 처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3차 예방활동에 포함된다(Meintjes, Frreira, & Plessis, 2003 : 2).

(3) 세부 피해자 지원활동

가. 공공의료 서비스(Health Services)

아동·청소년 성폭력 고위험 집단군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내 의료 전문집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의무적 아동학대 위험 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아동 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핫라인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Smith, 2006 : 22). 의무적으로 아동 성폭력 가능성이 반드시 보고해야 할 주체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사회사업가, 법집행가(law enforcement)도 포함된다.

쉽게 외부에 들어나지 않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 질병이나 사고

등을 진단하는 전문 의료진과 소년사법 전문가가 CPS나 국가 기관에 아동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무 요건 및 규정 내용은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고위험군 파악 기준 가이드라인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그 신뢰성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NCCD, 2007 : 13).

나. 치료요법(Therapy)

아동·청소년 성폭력에서 치료요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효과적인 개입전략이다.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후 치료가 필요하고, 성폭력을 목격한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인을 위해서도 치료, 상담요법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료요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일일 치료 수강명령, 그룹토론 및 상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떤 치료법이 필요한가는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나이, 성폭력 최초발생 시기, 성폭력 피해정도 및 범위, 심각성, 다른 기타 요인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는 개입 치료요법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라 아동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가족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아동기의 성폭력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성인기에 접어들어 그 폭력 피해를 떠올리게 되는 상황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폭력 치료요법도 함께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NCCD, 2007 : 25).

다. 법률 서비스 및 공공기관 지원(Legal Issues and the Role of Public Agencies)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료 전문가나 소년사법 법집행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아동 성폭력의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CCD, 2007 : 15; Smith, 2006 : 906). 중요한 것은 미국 법체계가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처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그 학대 심각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가진 자가 만약 아동 학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성직자나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비밀유지 특권 정도도 보다 완화된 기준에서 인정되고 있다.

동시에 아동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 변호사, 의료

전문가, 아동보호 기관 담당자, 시체 부검자 전문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유기적으로 아동 사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각 개별 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 조사해 감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전략이 실현될 수 있다(NCCD, 2007 : 22).

라. 가족지원(Family Support)

가족지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모양육 기술 훈련, 가정방문 서비스, 가족보존 원호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부모양육 훈련을 가르치는 서비스는 아동 학대 및 성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위기가정이나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문제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들은 이 서비스 교육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정이나 발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된다.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아동 성폭력 문제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는지는 아직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이 문제 부모의 양육 능력이나, 기술, 정신 건강상태, 아동과의 교감능력 등을 일반적으로 상승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NCCD, 2007 : 25).

미국의 가정방문(home visitation) 서비스는 통상 6개월에서 2년 동안 실시되는데, 가족에게 요구되는 특정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가정 현장에서 가족의 갈등관계나 문제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시키고, 아동양육 기술 및 감정관리 등을 도와준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따라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매주 한 번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을 경험한 가족이라면, 다시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초점이 있다. 단순히 성폭력 문제 억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족 내면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경제적 빈곤문제, 쉼터 제공, 음식 제공 등의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마. 가족강화 프로그램(Family Strengthening Programs)

아동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전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모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듯이, 가족 다이내믹과 가족 안정성, 아동 양육기술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가족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모로 하여금 어떻게 아동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양육 방법인지 이해하도록 하고, 그를 통한 건강한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관계가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가족 내 스트레스 원인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아동 발달 지원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정에 제공할 때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력을 근절될 수 있다(NCCD, 2007 : 17).

바. 상호지원 및 자조집단(Mutual Support and Self-Help Groups)

아동 성폭력은 보통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보다 더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 반복, 지속성이 가장 우려되는 심각한 아동 학대 형태에 속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 방식은 성폭력 피해가족 스스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대처 방법을 서로 학습해 가는 것이다. 즉,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스스로가 정직한 고백과 그로 인한 카타르시스 경험, 상호견제, 신뢰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지속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을 이뤄내는 힘이 만들어 질 수 있다(NCCD, 2007 : 22).

상호지원 방식과 자조집단을 통한 성폭력 예방은 1차, 2차, 3차 예방 모든 수준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1차 예방 단계에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및 방법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활용 능력이 극대화되고, 2차 예방 단계에서 아동 성폭력 고위험 집단은 조기에 자신들이 가진 위험요인을 상호 신뢰 속에서 파악해 갈 수 있다. 3차 예방단계에서 자조집단 형성이 특히 큰 효과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 결과 값비싼 전문 상담인과의 개별 카운슬링보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의 상호지지 경험이 아동 성폭력 등의 재범문제를 억제하는데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hn & Daro, 1987 : 433).

사. 부모익명 집단(Parents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단주모임과 같이 “부모익명 집단”을 형성하여 올바른 자녀 양육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도 아동 성폭력 사전예방 및 사후피해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부모익명 집단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비합리적인 기대심리를 제거하고, 자녀에 대한 왜곡된 판단 및 양육방식을 적절한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든 익명의 모임이다. 즉, 부모가

가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익명 집단은 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creating healthy parent-child relationships)를 만들어 주고, ② 긍정적인 아동 훈육방법을 제공하며(providing positive discipline methods), ③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방법을 보여주고(monitring and supervision of their children), ④ 아동의 권리 옹호 방법을 배우게 하고(learning to advocate for children), ⑤ 성폭력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지원을 찾게 하는 적극적 태도(being proactive toward seeking information and support) 형성에 기여한다(NCCD, 2007 : 10).

매주 열리는 부모익명 집단은 전문 훈련 과정을 거치 조력자(facilitator)가 모임을 주도하고, 부모그룹 대표도 모임에 함께 참여한다. 부모그룹 대표는 사전에 일정한 부모익명 집단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회기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 참가자들을 동기 부여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참가자들이 부모익명 모임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모임의 주체자로서 상호지원과 리더십, 주인의식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임 목적, 신념, 가치 등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호주²¹⁾

(1) 발생 현황

호주에서도 아동·청소년 성폭력(Child Sexual Abuse, CSA)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먼저 2010년 호주 보건가족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호주에서 약 3,500명의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호주의 원주민 출신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가족 아동·청소년들보다 더 큰 성폭력 위험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Hunt & Walsh, 2011 : 64).

호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2,578명의 설문 대상 아동·청소년 중 남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은 전체의 18%이고, 여성 아동·청소년은 2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rice-Robertson, Bromfield & Vassallo, 2010 : 22). 이 중 성기를 삽입하는 정도(penetrative)의 심각한 성폭력은 남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표본의 7.5%에 해당하고, 여성 아동·청

21) 이 부분은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소년은 전체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삽입 성폭력은 남성 아동·청소년이 10.5%, 여성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20.6%)²²⁾.

이러한 심각한 피해 현황은 호주 정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폭력 정책을 “공중보건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호주 아동 보호를 위한 2009-2020 계획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²³⁾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 방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 유형에 해당하나, 많은 성적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당국에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 간주하고, 호주 정부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공중보건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하 호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요인을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호주 아동·청소년보호 정책 플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2) 유발 요인

호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관련된 유발요인은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논의한 것과 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가족배경과 큰 관련성을 갖고 있다.

각각의 요인을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Finkelhor(1993) 연구에서 남성 아동·청소년보다 여성 아동·청소년이 더 성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Nelson 등(2002)의 연구에서는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이 가장 성폭력에 많이 노출된 위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요인에서는 특히,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 장애(sensory impairments)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Hunt & Walsh, 2011 : 65). 마지막으로 가족배경은 호주 원주민 계층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부모의 약물남용, 미혼모 가정, 가정폭력, 사회적 고립이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큰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2003 : 272).

(3) 개입 및 사후지원 현황

2009년 호주 정부는 아동보호 정책 플랜을 발표하면서, 2020년 까지 어떻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를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 프레임워크”

22) <http://www.aifs.gov.au/conferences/aifs11/docs/price-robertson.pdf> (2012. 9. 1)

23) http://www.coag.gov.au/coag_meeting_outcomes/2009-04-30/docs/child_protection_framework.pdf (2012. 6. 1)

로 삼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학대 유형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커다란 국가 개입 전략을 만드는데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중요한 증거점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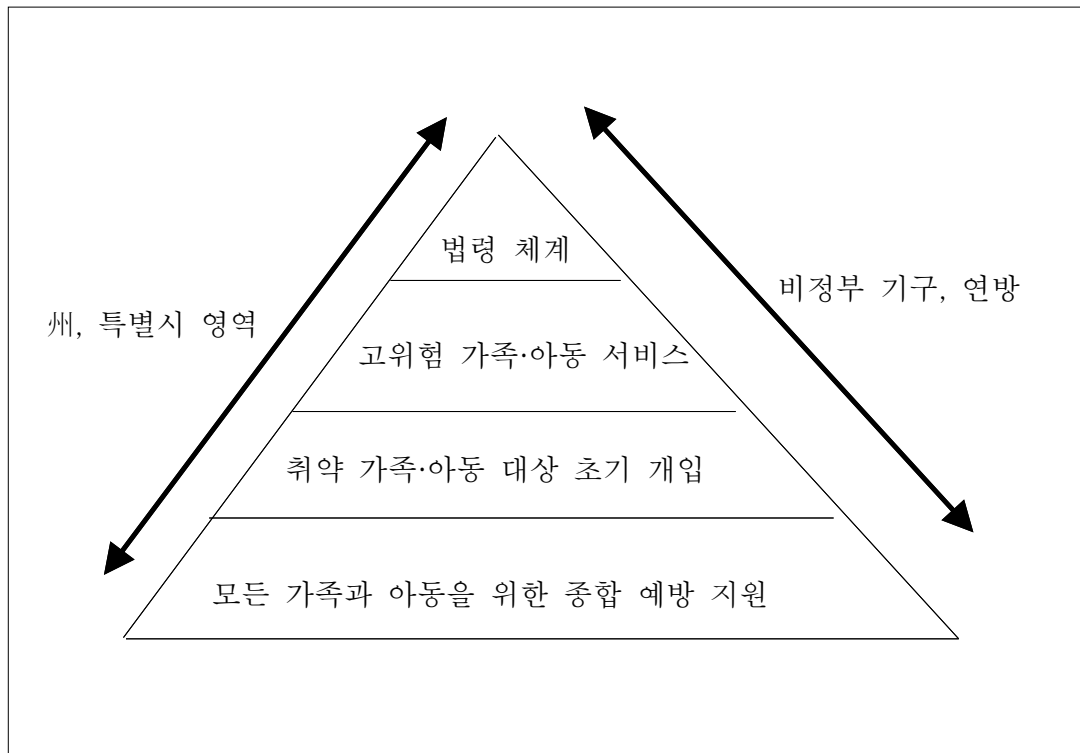
2007년부터 2008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제공한 아동·청소년 학대 및 방임 지원 서비스는 약 55,120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09 : 6). 같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학대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공식 요청된 경우는 317,526건에 해당하였다. 즉, 30만 건이 넘는 사건 중 실제 호주에서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된 경우는 단 55,120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막상 아동 성폭력 발생 의심 가정으로 신고 된 경우에도 법률에 의거, 친권 등을 박탈하는 공식 개입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다수의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로 판정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사후 문제 가정에 신고 이후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이 더 적절하다고 보게 되었다. 종합적인 사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아동·청소년학대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더 비용-편익적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 성폭력 방지 및 사후 피해자 지원 모델

문제 가정이라는 신고가 들어온 후에 개입하거나, 사후에 커다란 피해상황이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이 아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1차-2차-3차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공중보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Scott, 2009 : 37; Hunt & Walsh, 2011 : 68).

호주의 아동·청소년 보호대책은 성폭력 피해 신고 이전에 국가가 모든 가족과 아동·청소년 개인에 대해 보건, 성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한 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 교육, 지역사회 환경 등의 일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즉, 광범위한 차원의 1차적 예방 전략을 아동·청소년 보호대책에 사용하고, 2차적 예방 전략은 초기 개입이 필요한 일부 고위험 가족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을 말한다. 반면, 이미 아동·청소년 성폭행 및 방임 등이 발생한 문제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3차적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새로운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에서 가능한 한 그 개입 범위와 정도를 좁게 보고, 가장 마지막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한다(Higgins & Katz, 2008 : 44).



* 출처 :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Australian Governments.(2009),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p.8.

【그림 III-2-1】 호주의 아동 보호 종합대책 “공중보건 모델”

사실, 호주에서의 공중보건 모델은 피라미드형보다는 모래시계 모형을 더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 가족 및 고위험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2차 예방이 다소 줄어들었고, 1차 예방과 3차 예방이 중점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09 : 8).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지원은 광범위한 수준의 사회 안전망 확보와 정상적인 부모 양육 기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 수당, 아동·청소년양육 수당, 가족세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의료혜택, 실직수당, 양육지원, 부모관계 상담 서비스, 가족법 안내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자치 정부 수준에서 병원, 학교, 거주, 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학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지원 정책을 결정, 심의하고 있다.

동시에 호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고위험 가정을 위해 정신상담, 약물남용 치료, 집중 부모양육 서비스, 구직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을 통해 제대로 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서의 전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디언 토착민들의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결국 호주에서 강조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학대 예방 모델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초기에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 서비스 방안을 개별화된 시각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 참여자들이 함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는데, 크게 부모와 가족(parents and families), 아동과 청소년(Children and young people), 지역사회(communities),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s), 비즈니스 및 기업영역(business and corporate sector),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 주/특별 영역(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호주 아동 보호를 위한 2009-2020 계획(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은 그 세부 내용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하 그 아동 보호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수도특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개혁 정책을 하나의 예로 간주하여 살펴본다.

(5) 호주 예방정책 例-수도특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호주 수도특별 지역(ACT)에서는 『장애, 주거, 지역사회 봉사부(Disability,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 DHCS)』를 통해 아동 성폭력 및 학대 고위험 가족을 과학적으로 파악, 보호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중앙에서 먼저 국가기관이 다양한 반응, 평가 모델을 통해 고위험 정도를 사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두 아동/가족보호 센터(Child and Family Centeres)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아동·청소년보호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 클리닉, 부모 양육기술 발달 프로그램,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선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보호관(child protection officers)”은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많은 가정지원 서비스 산하 기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이 해야 할 세부 일들을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하달을 통해 공식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통합 가족지원 프로젝트(Integrated Family Support Project)를 시행하기 위해 특히, 아동, 청소년, 가족지원팀(The Office for Children, Youth and Family Support, OCYFS)과 비정부 기구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복합적인 아동 학대 문제를 보이는 8세 이하 아동을 지원 주력 대상으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식적인 법령 체계(statutory system) 내에 있는 3차 예방 대상 가족을 비공식적 지원 대상으로 전환(divert) 시키는데 있었고, 아동을 부모와 무조건 격리시키기 보다는 최대한 부모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지원 서비스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4년에 발표한 호주 수도특별 지역의 아동·청소년보호 지원체계는 그 해 8월부터 당국으로 하여금 3년간의 새로운 개혁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개혁목표는 고위험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보호 서비스 범위 및 내용이 보다 질적인 면에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출생하면서부터 18세 성인으로 독립하기 까지 아동·청소년학대가 발생한 경우 국가 개입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초기 예방 전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아동·청소년보호 계획의 목표가 있었다.

둘째, 2008년에 대대적인 아동·청소년보호 지원정책 분야의 인력증원, 모집이 이루어졌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아동·청소년보호 업무의 사후 평가, 감사 업무가 인력증원을 통해 정비되었고, 보다 나은 기관 간 파트너십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분야 공무원과 장애, 주거, 지역사회 봉사부(DHCS)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맞교환 형식으로 근무하는 인사 체제도 만들어졌다.

셋째, 『2008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호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구들이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업무에 DHCS와 함께하게 되었다. 특히, 소년사법을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구들과 소년법원, 청소년 고용업무 담당 기구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되게 되었다.²⁴⁾ 결국, 호주에서 실시된 최근의 아동·청소년보호 정책은 피해아동 개인,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위험요인(risk factors)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증가시키려는 종합적인 노력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Hunt & Walsh, 2011 : 63).

24) http://www.coag.gov.au/coag_meeting_outcomes/2009-04-30/docs/child_protection_framework.pdf (2012. 6. 1).

3) 독일²⁵⁾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거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육상태에 근거하여 아동이 의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체의 성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가정,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이하연방가정부라 약함)의 관할에 속한다.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행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연방법무부의 소관사항이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보호책을 규정해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것들로서 성폭력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보호정책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독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의 행동계획(Aktions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2003년에 최초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담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2008년에 연방과 주의 연구그룹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제3차 세계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2008년 11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회의에 독일측의 공식입장으로 전달하였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회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는데, 여기서 독일은 제3차 세계회의에서 나온 지침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한 최초의 국가였다. 그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다수의 회의를 거쳐 2011년 5월 24일에 “아동성폭력처리를 위한 독립수탁관”을 신설하여 Cristine Bergmann 박사를 독립수탁관으로 임명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성폭력 및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 2011”²⁶⁾을 공포하였다. 이 행동계획에 의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 ②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③ 인터넷상의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아동포르노그래피 생산, 반포 및 판매행위의 근절, ④ 성착취목적의 아동매매 척결, ⑤ 독일 국민의 외국 여행 중의 아동 성착취 행위의 근절, ⑥ 아동성폭력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결과의 실무에의 반영, ⑦ 아동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 등 7가지의 정책중점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25) 이 부분은 이진국(아주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2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Aktionsplan 2011 der Bundesregierung zum Schutz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vor sexueller Gewalt und Ausbeutung, September 2011.

아래에서는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의 현상을 점검한 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방정부의 대응전략을 소개할 것이다.

(1) 독일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범죄 및 성폭력 실태

가. 독일형법상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범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형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으나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74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는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된 16세 미만자, 교육, 직업교육, 보호·업무·고용관계로 인한 종속성을 남용하여 교육, 직업교육, 생활보호를 위하여 위탁되거나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 속하는 18세 미만자 또는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친자 또는 양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피보호자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시킨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한 자를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이 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형법 제176a조),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으로 아동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성적 남용치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76b조).

형법 제180조(미성년자의 성적 행위 조장)에 따라서, 중개나 보증 또는 기회의 마련을 통해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 앞에서 16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조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형법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적 행동을 하거나 성적 남용을 한 18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82조가 예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는, 강제상태를 악용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성적 행동을 하게 한 경우 또는 강제상태를 악용하여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이다(제182조 제1항). 또한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16세 미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음을 악용한 21세 이상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82조 제2항).

나. 공식통계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공식통계는 독일의 경찰형사통계자료(Polizeiliche Kriminalistik)로부터 알 수 있다.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형법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의 범죄로 피해자로 된 미성년자들은 총 222명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는 145명에 달했다.

다. 실태조사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의 실태조사연구로부터 독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일정한 인식자료는 획득할 수 있다.

Häuser와 3명(Häuser, Schmutzer, Brähler & Glaesmer, 2010 : 287-294)이 2010년에 14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응답한 사람들의 12.6%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나아가 연방보건계몽센터(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는 2010년에 14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성폭행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독일 국적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독일 내 외국국적의 청소년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2010 : 195-200). 이 연구에서 “귀하는 억압된 상태에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나 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독일 국적의 여성 청소년의 13%와 외국 국적의 여성청소년의 19%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척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대응전략

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전략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대응수단을 성폭력의 사전예방에 두고 있다. 성폭력의 사전예방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전략으로, ① 아동·청소년 및 부모에 대하여 성폭력의 문제점 등을 일깨워주는 것, ② 교육학, 청소년보호, 언론매체 또는 범죄예방의 전문가들의 질 확보 및 계속교육 지원, ③ 아동 및 청소년원조체계의 질 확보, ④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예방적 치료기회의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예방전략을 간략하게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성폭력 문제점에 관한 계몽 문제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및 부모에 대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보호기관등 이외에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포털사이트와 온라인자문프로젝트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온라인포털사이트와 온라인자문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및 부모에게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위하여 Loveline. de라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교육학, 청소년보호, 언론매체 또는 범죄예방의 전문가들의 질 확보 및 계속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차원에서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년간의 계속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의 구성원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에 기반을 둔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학 관련 직업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직업의 계속교육이나 연수교육을 개발하고 있다. 나아가 개별 주와 연방의 경찰 범죄예방프로그램은 2012년에 성적 남용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이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원조체계의 질 확보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이미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을 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 원조체계의 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과가 있는 자가 아동 및 청소년 원조 분야에서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명시하였다. 즉, 공적인 청소년원조나 민간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임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종사자들은 확장된 신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전일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표준의 준수계획의 제출, 확장된 신원조회서의 제출 등의 부담과 결부시켜서 이러한 시설이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예방적 치료기회의 제공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성학문 및 성의학연구소가 아동에 대한 성환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대한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개별 주의 재정적 지원 하에 2010년에 Kiel 대학병원과 Regensburg 대학병원에 “범죄자가 되지 말자”(Kein Täter werden)라는 프로젝트를 설치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입전략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입전략이란 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광범위하게 원조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사전적 예방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의 피해자로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자에 대한 소추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개입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성폭력사건의 조기발견에서부터 성폭력의 즉각적인 방지 및 피해자의 재할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소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문·치료 등의 기회 제공, ② 피해자의 보호, ③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체계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체계의 개선 문제는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앞의 두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문치료 등의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수단이 바로 자문과 치료 등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문가들에게 현재의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위탁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존재하는 지원체계의 흠결과 현장에서의 지원네트워크체계의 흠결을 메꾸고자 한다. 특히 현장에서의 자문 등 기회제공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제공과 연방전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전화상담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에서는 Hinsehen-handeln-helfen.de라는 인터넷사이트와 주와 연방의 경찰범죄예방 인터넷사이트인 www.polizei-baratung.de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개정된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규범프로그램들이 명시되었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 자신을 위한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권도 대폭 개정되어 피해자에 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나아가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에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원칙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하여 기존의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하였다.

현재 연방정부는 “성적 남용 피해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법안”(Gesetzesentwurf zur Stärkung der Rechte von Opfern sexueller Missbrauchs)을 제출해두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회에 걸친 반복적 신문의 방지,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선임의 범위 확대 및 피해자권리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사불법행위의 소멸시효도 30년으로 연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인터넷상의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아동포르노그래피 생산, 반포 및 판매행위의 근절

아동과 청소년은 현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디지털 대화네트워크에서도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네트워크에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아무런 위험성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가 반포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2010년에 “대화인터넷”(Dialog Internet)을 개시하였다. “대화인터넷”은 정치, 학문, 경제,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서 제안한 각종 권고사항을 발전시키는 정책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터넷상의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포르노그래피 생산, 반포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①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검색 및 인터넷대화공간의 확보, ② 아동·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의 강화, ③ 인터넷상의 범죄적 내용의 삭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검색 및 인터넷대화공간의 확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아동을 위한 적절한 매체적 학습공간 및 경험공간의 형성과 계속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특히 “아동을 위한 네트워크”(Ein Netz für Kinder)를 들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인터넷검색창인 Blindekuk.de를 개설하여 최초로 독일어로 된 무료의 아동을 위한 검색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1년 2월 이후부터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지원된 온라인 네트워크인 www.surfen-ohne-risiko.net 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아동·청소년과 함께 인터넷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게 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의 독자적인 개시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의 강화는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연령에 맞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다양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안전한 인터넷사용, 안전한 채팅방사용, 핸드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브로셔와 정보문건들을 배포하고 있으며, Chatten-ohne-risiko.net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사처(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은 매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행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상의 범죄적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서 그 범죄적 내용의 삭제 문제는 연방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등 범죄적 내용은 독일 국가 안에 개설된 서버에서 게시될 수 있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형사경찰청(Bundeskriminalamt)와 개별 주의 경찰관서 등으로 하여금 외국의 관공서 및 국내 민간회사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인터넷상의 범죄적 내용을 삭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라. 성착취목적의 아동매매 척결

성착취목적의 아동·청소년의 매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여기서 독일은 최종목적지 또는 중간기착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목적의 아동·청소년 매매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입법조치이외에 국제적 공조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형법은 제232조(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제233조(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 제233a조(인신매매조장), 제235조(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36조(아동매매)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형법만으로는 성착취목적의 아동매매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성착취 목적의 아동매매에 대한 초국가적 형사소추 및 사법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마. 독일 국민의 외국 여행 중의 아동 성착취 행위의 근절

독일에서는 적어도 직장인의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1회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외국에서 휴가나 직업 등의 사유로 체류하면서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휴가지를 태국 등 동남아국가로 선택한 다음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독일 연방정부는 상업적 아동 성매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휴가지 또는 출장지인 외국에서 상업적으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독일인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형사소추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점을 주목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상업적인 아동 성매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독일인이 외국에서 성을 매수한 경우에도 독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강력하게 계몽하고자 한다. 또한 상업적 아동 성매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행에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Verhaltenskodex zum Schutz der Kinder vor sexueller Ausbeutung im Tourismus)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행동강령은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에게 그 종사자에게 여행지에서 아동의 성착취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육시킬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바. 기타

그 밖에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결과의 실무에의 반영, 아동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결과의 실무에의 반영이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결과의 실무에의 반영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특히 “남용, 소외 및 폭력”(Missbrauch, Vernachlässigung, Gewalt)라는 학제간 연구네트워크를 주도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제 간 연구네트워크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성적 남용과 폭력의 유형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보다 더 개선된 예방 및 치료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니더작센주 범죄학연구소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Regensburg 대학교가 연구책임기관으로 되어

추진하는“MIKADO(Missbrauch von Kindern: Ätiologie, Dunkelfeld, Opfer) 프로젝트이다. 학문분야에서 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는 실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독일 청소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정보센터(Informationszentrum Kindesmisshandlung)와 아동보호센터(Kinderschutz-Zentrum)를 지원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회복적 정의모델

가. 근거법률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가능성

독일에서 회복적 정의에 관한 핵심조항은 실체형법의 영역에서는 형법 제46a조이고, 절차법의 영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53a조이다.

가) 형법 제46a조

회복적 정의 내지 회복적 사범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에서 탄생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회복적 형사사범”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공식적인 명칭은 “가해자-피해자-조정”(Täter-Opfer-Ausgleich)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 형법상 회복적 정의의 근거규정은 형법 제46a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46a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46a조 가해자-피해자-조정, 손해원상회복

1. 행위자가 피해자와 조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가해자-피해자-조정), 그의 범행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였거나 또는 범행의 원상회복을 진지하게 추구하였거나,
2. 손해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일신적인 급부 또는 일신적인 포기를 요구하는 사례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현저한 부분까지 배상하였다면,

법원은 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형벌을 감경할 수 있고, 행해진 범행이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360일까지의 벌금일수에 처해질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46a조 제1호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전부 또는 현저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였거나 원상회복을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360일 이하의 벌금일수에 해당하는 경우(형사실무상 모든 절차의 약 95%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호에 따라서 행위자(가해자)에게 형면제나 형감경의 특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이행단계를 거쳐야 한다. ① 가해자가 조정대화를 통하여 비물질적인 급부(예: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범행이 완전하게 원상회복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특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사례상황이기도 하다. ② 가해자가 조정대화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합의한 급부를 전부 이행하지 못하고 현저한 부분까지 이행한 경우에도 형벌특권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현저한 부분’이란 합의된 통상적으로 원상회복급부의 절반이상으로 이해된다(Rössner & Bannenberg, 2002 : 171). 이와 관련하여 ②의 사례는 ① 사례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①사례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② 사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③ 가해자가 원상회복을 진정하게 노력한 경우에도 형벌특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상황은 우선 가해자가 조정절차에 참가하여 피해자와 범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사과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하게 노력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예컨대 가해자의 이행할 급전이 없거나 실업이나 병환 등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등이다.²⁷⁾

형법 제46a조 제2호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중요한 일신상의 급부’(erhebliche persönliche Leistung)나 ‘일신상의 포기’(persönlicher Verzicht)를 통하여 손해를 전부 또는

27) 이와 관련하여 Rössner 교수와 Bannenberg 교수는 피해자가 조정과정에 참가를 거부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진정하게 노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össner & Bannenberg, a.a.O., S.172).; 그러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진정하게 노력한 행위에 대하여 형감경이나 형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조건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조정절차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초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정과정에 참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46a조 제1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고, 제2호의 해석과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제2호는 제1호에 대하여 보충적인 적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2호의 해석을 통해서도 행위자에게 형벌특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입법론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조정과정에 참가를 거부한 사례에서는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노력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사회에 대한 원상회복(예: 금전기부, 사회봉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

현저한 부분까지 배상한 경우에도 형면제 또는 형감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일신상의 급부 또는 '일신상의 포기를 규정한 이유는, 제2호가 단순한 손해의 배상만을 규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함이다. 즉, 제2호는 순수한 손해의 배상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자가 부당하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자-피해자-조정과 같은 이념적이고 주관적인 징표로서 '중요한 일신상의 급부나 일신상의 포기를 명시한 것이다. 이 점에서 형법 제46a조 제1호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 합의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제2호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순수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²⁸⁾

나) 형사소송법 제153a조

그런데 독일의 형사입법자는 형법 제46a조가 수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형절차에서만 고려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실무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이 검찰에 의하여 착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실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²⁹⁾

한편,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이 의도하는 세 가지의 형사정책적 목표, 즉 범죄피해자보호(피해자관점), 비범죄화(행위자관점) 및 사법경제성의 제고(형사사법의 관점)라는 목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조치와 결합하여 실현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의 법적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실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수사실무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을 활용하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독일의 입법자는 1999년 12월 20일자 법률³⁰⁾을 통하여 수사종결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당시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진국, 2001 : 233-249).

28) 독일 형법 제46a조의 입법취지 및 상세한 해석론에 관해서는 이진국(1999),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pp.409-430. 참조; 또한 Rössner & Klaus(1998), Rechtsgrundlage und Rechtspraxis,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Dieter Dölling u.a.,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Forum Verlag Godesberg-Bonn, S.49-65. 참조

29)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관해서는 Meier(1996), Täter-Opfer-Ausgleich und Wiedergutmachung im allgemeinen Strafrecht, JuS 36, S.441; Dahs(1995), Da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vom 28. 10. 1994 - ein Produkt des Superwahljahres, NJW 48, S.553 이하.

30) Gesetz zur strafverfahrensrechtlichen Verankerung des Täter-Opfer-Ausgleichs und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Fernmeldeanlagen, BGBl I. S.2491.

첫째,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규정인 제153a조에서 부담사항과 지시사항의 항목 속에 자율적인 가해자-피해자-조정(제1항 제5호)이 명문화되었다.

둘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과 법원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하고,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규정(Soll-Vorschrift)을 신설하였다(제155a조).

셋째, 조정기관이 조정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보호규정을 신설하였다(제155b조). 검찰이나 법원은 가해자-피해자-조정 또는 손해원상회복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위임한 조정기관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조정이나 손해원상회복에 필요한 신원관련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동조 제1항 1문). 검찰과 법원은 정보를 제공함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조정관청에 대하여 소송서류를 열람목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조정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송부된 정보를 가해자-피해자-조정이나 손해원상회복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동조 제1항 2문). 조정의 위임을 받은 관청들은 송부 받은 개인의 신원관련 정보를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손해원상회복의 실행에 필요하고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문).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동의하였고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손해원상회복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의 신원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된 자료를 처리·이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문). 조정기관은 조정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찰과 법원에 보고한다(동조 제2항 3문). 조정기관이 비공공단체일 경우에는 개인의 신원관련정보가 자료 내에서 또는 자료로부터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정보보호법 제3장의 규정도 적용된다(동조 제3항).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위임받은 조정기관은 개인의 신원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폐기한다. 검찰과 법원은 조정기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종료의 시점을 통지한다(동조 제4항).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가능성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폭행사건의 경우에도 형법 제46a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성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벌감면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설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³¹⁾도

31) Dreher/Tröndle, 47. Aufl., § 46a StGB, Rn. 3

있으나, 형법 제46a조가 회복적 정의의 대상사건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회복적 정의 절차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독일의 학계와 실무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나. 회복적 정의의 절차

독일 형법 제46a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해자-피해자-조정자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게 된다.

① 검사나 판사는 당해 피의·피고사건이 형사조정제에 적합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알선기관에 알선조정을 의뢰한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 스스로가 직접 형사조정 알선기관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건을 접수한 알선조정기관은 가해자 및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위한 교섭을 하되,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한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확정한다.

③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대화의 장을 만들어 갈등해소방안과 원상회복 방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한다.

④ 범행당사자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⑤ 알선조정자는 합의결과의 이행에 대하여 심사한다.

⑥ 알선조정자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법원에 송부하고, 검찰·법원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형 감면의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그러나 어느 단계이든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선조정자는 그 경과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송부한다.

다. 가해자-피해자-조정절차의 참가모델

일반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 진행형식은 협의체 모델과 조정모델로 대별된다. 협의체모델과 조정모델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모델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범위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조정모델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제3자(조정자)로 구성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소위 Shuttle diplomacy)도 있다. 조정모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나 화해 등과 같은 구체적 결과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갈등조정은 실패할 수 있으며, 조정자의 역할은 단지 조정절차에 참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부담할 뿐 어떠한 강제력이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협의체모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가해자의 가족과 친구 및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이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모델은 소년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독일 형사실무에서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인 가해자-피해자-조정 모델은 조정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조정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가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가 조정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명시된 모델이 아니라 실무의 실천모델에 불과한 것이므로 협의체 모델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범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라. 알선조정기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알선조정기관

독일 형법 제46a조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서...”라고 명시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소통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소통의 특정한 유형에 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에 의하면, 조정과정에 전문가의 개입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알선자의 개입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합의만으로도 족하다.³²⁾ 그러나 일반적인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3자로서 조정자 내지 알선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사회교육자 또는 사회사업가로서 습득한 직업적 자질을 필요로 하고 적어도 민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Hassemmer, 1998 : 418).

32) 독일 형법 제46a조를 입법할 당시의 입법이유서에 의하면, 가해자-피해자-조정은 통상적으로 제3자에 의하여 알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BT-Drs. 12/6853, S. 22). 그러나 독일 학계에서는 제3자의 개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원조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Rössner & Klaus, 1998 : 50); 형법 제46a조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서 반드시 제3자가 개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가해자-피해자-조정 의미와 목적에 합치되지도 않는다고 이해한다.(Loos, 1999 : 861); 또한 OLG Stuttgart NJW 1996, 2109(이 판례에서는 반드시 제3자의 알선중개 필요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가해자-피해자-조정과 관련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소년범죄의 경우 소년국, 성인범죄의 경우 보호관찰조직이나 법원원조조직 등 형사사법과 직접 결부된 공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후 점차적으로 사설기관이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³³⁾ 그 이유는 회복적 정의에서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해자와 국가형벌권의 관계에서 피해자 및 지역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알선조정기관이 범죄의 해결에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형식을 보면, 기관의 구성원이 오로지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이른바 '전문화된 인력투입'을 운용하는 조정기관은 1993년도에 15.7%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2002년에는 73.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기존의 보호관찰업무나 법원원조업무³⁴⁾와 가해자-피해자-조정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이른바 '통합화된 인력투입'을 운용하는 조정기관은 1993년도에 58.8%로 가장 많았지만, 2002년에는 6.7%에 불과하였다(Kerner & Hartmann, 2005 : 5-7).

(4)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독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와 회복적 정의에 관한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독일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형법에 의하여 처벌된 범죄이지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형사법적으로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책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점은 독일 연방정부가 2011년 9월에 연방정부의 행동계획을 공포하면서 그 속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33) 예컨대 1999년도의 가해자-피해자-조정 통계를 보면, 가해자-피해자-조정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고한 총 63개 기관 중 소년국이 9개(14%), 보호관찰이나 법원원조기관이 5개(8%), 민간기관이 49개(78%)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Kerner & Hartmann, 2005 : 4-5 참조;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8년도의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다.

34) 독일의 법원원조(Gerichtshilfe)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60조이다. 이에 의하면, 검찰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까지도 조사할 의무(소위 객관의무)를 부담하고(제2항), 범죄의 법적 효과를 결정(즉 양형)함에 있어 의미를 가지는 모든 사정까지도 수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원조를 활용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 점에서 독일의 법원원조제도는 단순하게 보면 미국의 판결 전 조사제도를 수사절차단계까지 앞당긴 제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형사법적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형사법적으로 당연히게 척결되어야 하겠지만, 성폭력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문제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정부정책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렇다면, 독일의 정책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점위한 규범프로그램 및 실무운영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하나 주목할 것은 독일 연방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을 단순히 좁은 의미의 성폭행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반포 등의 금지,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 유해매체의 차단, 성착취목적의 아동매매 등 아동의 성보호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하나의 정책 속에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청소년 성폭행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으로 좁게 이해하지 않고, 아동매매나 음란물반포 등의 행위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들은 대부분 형사사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처벌규정들이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사후적 대응에 집중되어 있고, 사전적 예방이나 이를 뛰어 넘은 모든 영역에서의 예방 및 개입정책이 부분적으로 흠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무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알선조정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조정기구를 검찰청에 설치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해결전략으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가 회복적 정의의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적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회복적 정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 바로 당사자의 회복적 정의절차에의 참가의 자율성에 있으므로 피해 아동·청소년 측에서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회복적 정의가 개입할 길을 열어두되, 피해 아동·청소년측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뛰어 넘어 현실적 평화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독일 형법 제46a조와 형사소송법 제153a조의 규범내용 및 그 실무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4) 일본³⁵⁾

(1) 서론

2004년 11월 일본 奈良縣에서 발생한 여아유괴살해사건³⁶⁾의 피의자가 과거에 이동에 대한 성범죄에 의해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일본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일본국민은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이미지와 성범죄자는 교정시설에서도 갱생이 불가능하다는 교정교육에 대한 불신감으로부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교정시설로부터의 출소정보를 경찰청과 법무성이 공유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출소자의 재범방지조치제도」가 2005년 6월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초등학교 등의 이동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에 살해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여 일본사회를 불안에 빠뜨려 가정에서는 방범 벨이나 이동용의 GPS기능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방범자원봉사단체에 의한 순찰강화와 이동보호활동 등이 실시되었으며, 일본 정부차원에서 내각부에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犯罪から子供を守るための対策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를 설치하여 2005년 12월 20일에 (1) 전국 통학로의 긴급점검, (2) 방범교육의 긴급개최, (3) 정보공유체제의 긴급설치, (4) 학교안전자원봉사자의 충실, (5) 노선버스를 활용한 통학시의 안전확보, (6) 국민에 대한 협력의 요청 등의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긴급대책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흉포화되는 아동대상성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별차원에서의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일본정부, 경찰, 지역사회 및 민간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 개관하고자 한다.

35) 이 부분은 강경래(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36)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 남성이 과거에도 2회에 걸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밝혀짐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일본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아동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범행의 수법 등으로부터 2006년 10월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2) 일본의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발생현황

일본의 형법범의 인지건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285만 건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58만 5,856건, 2009년과 비교하여 11만 7,188건(6.9%)이 감소하였다.

형법범의 검거건수는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약 60만 건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약 54만 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49만 7,356건으로 전년보다 4만 7,343건(8.7%)이 감소하였다. 형법범의 검거인원은 1997년 이후 30만 건 정도였으며, 2001년에서 2004년에 걸쳐 증가를 하였으나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2만 2,620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만 268명(3.1%)가 감소하였다.

표 III-2-1 형법범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2001년~2010년)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지건수 (건)	2,735,612	2,853,739	2,790,136	2,562,767	2,269,293	2,050,850	1,908,836	1,818,023	1,703,044	1,585,856
검거건수 (건)	542,115	592,359	648,319	667,620	649,503	640,657	605,358	573,392	544,699	497,356
검거인원 (명)	325,292	347,558	379,602	389,027	386,955	384,250	365,577	339,752	332,888	322,620
검거율 (%)	19.8	20.8	23.2	26.1	28.6	31.2	31.7	31.5	32.0	31.4

* 출처 : 警察庁編(2011), 일본警察白書, p.60.

한편, 일본의 성범죄(강간, 강제추행)의 인지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였으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강간의 경우에는 2003년에 2,472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 1,289건으로 약 50%가 감소하였다. 또한 강제추행도 2003년의 10,029건에서 2010년에는 7,027건으로 강간보다는 낮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2 강간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2001년~2010년)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지건수(건)	2,228	2,357	2,472	2,176	2,076	1,948	1,766	1,582	1,402	1,289
검거건수(건)	1,404	1,468	1,569	1,403	1,443	1,460	1,394	1,326	1,163	1,063
검거인원(명)	1,277	1,355	1,342	1,107	1,074	1,058	1,013	951	918	803
검거율 (%)	63.0	62.3	63.5	64.5	69.5	74.9	78.9	83.8	83.0	82.5

* 출처 : 警察庁編(2011), 일본警察白書, p.63.

표 III-2-3 강제추행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2001년~2010년)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지건수(건)	9,326	9,476	10,029	9,184	8,751	8,326	7,664	7,111	6,688	7,027
검거건수(건)	3,887	3,367	3,893	3,656	3,797	3,779	3,542	3,555	3,563	3,637
검거인원(명)	2,236	2,130	2,273	2,225	2,286	2,254	2,240	2,219	2,129	2,189
검거율 (%)	41.7	35.5	38.8	39.8	43.4	45.4	46.2	50.0	53.3	51.8

* 출처 : 警察庁編(2011), 일본警察白書, p.63.

형법범에 관계되는 13세 미만의 아동의 피해건수는 2002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31,832건으로 전년대비 1,648건(4.9%)이 감소하였다. 2010년의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가 된 성범죄의 인지건수는 강간이 55건, 강제추행이 1,063건이며, 이러한 아동의 범죄피해 전체에서 성적동기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가 점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의 42%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으로서 성범죄에는 피해가 가져오는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부터 2차적 피해 등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즉 소위 암수범죄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태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II-2-4 형법범에 관계되는 13세 미만의 아동의 피해건수의 추이(2001년~2010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39,934	39,118	38,387	37,054	34,459	32,957	34,458	33,334	33,480	31,832

* 출처 : 警察庁編(2011), 일본警察白書, p.90.

표 III-2-5 13세 미만의 아동의 죄명별 피해상황(2001년~2010년)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살인	103	94	93	111	105	110	82	114	78	77
강도	11	16	21	11	16	8	7	8	7	7
강간	60	90	93	74	72	67	81	72	53	55
폭행	630	724	945	1,115	1,136	1,055	933	867	754	705
상해	450	467	536	615	546	553	529	472	490	463
강제추행	2,037	1,815	2,087	1,679	1,384	1,015	907	937	936	1,063
공연음안	50	48	79	120	132	98	73	76	80	109
체포감금	8	6	12	8	4	8	3	2	7	9
약취유인	91	108	133	141	104	86	82	63	77	91

* 출처 : 警察庁編(2011), 일본警察白書, p.90.

한편, 일본에서는 소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를 복지범³⁷⁾이라고 부르는데, 2010년도의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에서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청소년보호육성조례³⁸⁾위반이 2,993명(38.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 위반이 1,627명(2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警察庁編, 2011 : 91). 한편, 이러한 복지범의 피해소년의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지만, 낮은 비율이지만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37) 복지범이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위반(아동매춘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노동기준법위반(연소자의 위험유해업무, 심야업무 등)을 말한다.

38) 청소년보호육성조례란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의 하나로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그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한 조례의 통일적인 명칭이다. 청소년보호조례 및 청소년건강육성조례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이 도도부현 혹은 시정촌 등에 따라 정식명칭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라고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육성조례는 1948년에 茨城県下館町가 조례로 18세 미만의 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외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50년에 岡山県에서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 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내용은 각각의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대상은 18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2)유해도서의 규정, (3)서점 등에서의 유해도서의 구분진열의 의무화, (4)유해완구의 지정, (5)이유 없이 청소년의 단독의 외출금지, 영화관, 볼링장, 노래방, PC방, 만화방 등에 청소년의 심야출입금지, (6)고물 및 현책을 청소년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 (7)청소년에 대한 착용한 속옷의 구매 및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8)청소년에 대한 음행 및 외설행위의 금지, (9)청소년을 유흥업의 점원 또는 고객으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2-6 복지법의 피해소년의 학력별현황(2009년~2010년)

연도	구분	총수	미취학	학생				유직 소년	무직 소년	
				소계	초등 학생	중학생	고교생			그 외
2010년(명)		7,340	33	5,451	122	2,044	3,199	86	611	1,245
	구성비(%)	100.0	0.4	74.3	1.7	27.8	43.6	1.2	8.3	17.0
2009년(명)		7,145	11	4998	84	1,988	2,865	61	679	1,457
	구성비(%)	100.0	0.2	70.0	1.2	27.8	40.1	0.9	9.5	20.4
증감수(명)		195	22	45.3	38	56	334	25	△68	△212
증감률(%)		27	200.0	9.1	45.2	2.8	11.7	41.0	△10.0	△14.6

* 출처 : 警察庁編(2011), 일본警察白書, p.91.

(3)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에 의한 등하교 시의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대책³⁹⁾

전술과 같이 일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는 찾을 수 없으나 2004년 11월 일본 奈良縣에서 발생한 여아유괴살해사건, 2005년 2월에 大阪府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교직원을 살해한 사건, 2005년 11월에 広島縣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살해사건⁴⁰⁾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발생에 따라 일본정부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대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이다.

연락회의는 전술한 당시의 사건 등의 발생에 따라 아동의 등하교시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그 외의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의 연락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연락회의의 구성은 내각부관방부장관보를 의장으로 하며,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의 사무담당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연락회의에서는 매년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犯罪か

39)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관계성청회의
<http://www.cas.go.jp/jp/seisaku/kodomo/index.html>참조.(2012.7.10)

40) 본 사건은 2005년 11월22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귀탁도중의 여아가 페루인에 의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후에 살해된 사건이다. 11월 22일 오후 하교도중의 여아(당시 7세)가 행방불명이 되어 동일 17시 경에 노상에 방치되어 있던 종이상자에 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사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로 사체의 하반신은 성적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처가 있었던 사건이다.

ら子どもを守るための対策)』을 정리하여 전체각료로 구성되는 「범죄대책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연락회의에서는 2005년 12월 20일에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책의 제2장에서는 「등학교시의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대책 6항목」을 발표하였다⁴¹⁾. 이러한 긴급대책 6항목은 연락회의에 있어서 실시된 내용으로 (1) 전체통학로의 긴급점검, (2) 방범교육의 긴급개최, (3) 정보공유체제의 긴급설정, (4) 학교안전자원봉사제도의 충실, (5) 노선버스를 활용한 통학시의 안전확보, (6) 국민에 대한 협력의 적극적 요청 등으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체통학로의 긴급안전점검

일본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호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로 하여금 2006년 3월까지 전체 학교구 및 전체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2005년 12월 22일에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검의 결과는 경찰과 자원봉사자에 의한 순찰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아동 스스로가 위험한 장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통학안전지도를 작성하는 등 아동에 대한 방범교육에의 활용과 지역에서의 대책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나. 전체학교에서의 방범교실의 긴급개최

일본전국의 모든 학교의 전체 학생이 2006년 3월까지 학교와 경찰과의 연계 등에 따른 방범교실을 수강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22일에 통지를 하였다. 또한, 2006년 2월에 방범교실의 수업용의 초등학교저학년을 위한 안내서인 「大切ないのちとあんぜん」을 작성하여, 대상이 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배부함과 동시에 그 개최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범교실 등의 사례집인 「学校における防犯教室等実践事例集」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다. 전체지역에서의 정보공유체제의 긴급점검

아동에 대한 범죄의 징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상한 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경찰이 중심이 되어 학교, 교육위원회, 보호자, 아동,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정보공유회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41) <http://www.cas.go.jp/seisaku/kodomo/kettei/051220taisaku.pdf>참조.(2012.7.15)

공포에 빠지게 하여 주민의 생활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경찰에서도 종래부터 성범죄를 중요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범죄로 설정하여 대처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89년에 일본경찰청형사국이 국민이 가장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에 대해서 「중요범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방화, 약취유괴 등을 열거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안전부문에서도 1999년에 「여성·아동을 지키는 시책실시요강(女性·子どもを守る施策実施要綱)」을 제정하여 성범죄를 포함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중대한 범죄의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일본경찰의 아동 등을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대책요강」의 제정 및 성범죄수사의 적정화의 추진

1996년에 「피해자대책요강(被害者対策要綱)⁴³⁾」이 제정되어, 그 가운데 성범죄를 피해자대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하나로 지정함과 동시에 성범죄수사지휘관 및 성범죄수사지도반의 설치, 여성수사관의 증원 등을 강조하여, 이에 따라 경찰청형사국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체제의 강화, 피해신고의 촉진, 2차 피해의 방지, 재피해의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이 강구되었다.

나. 「여성 및 아동을 지키는 시책실시요강⁴⁴⁾」의 제정

1999년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의 발생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범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책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경찰청생활안전국에서는 「여성과 아동을 지키는 시책실시요강(女性·子どもを守る施策実施要綱)」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자, 자체단체 등과의 연계에 의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시책의 추진으로써 범죄의 예방은 경찰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개인의 자조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시책의 추진, 그리고 자치단체 등과 연계된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43)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keiji/souiti/souichi19960502-2.pdf#search=참조>. (2012.7.10)

44)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eianki/seianki19991216.htm> 참조. (2012.7.10)

관점에서 경찰의 순찰의 강화 등의 활동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1)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방법지도의 실시, (2) 자주적인 방법활동에의 지원, (3)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神山憲一·玉川達也, 2005) 등의 추진 등에 따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의 사전방지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써, (1) 아동학대에 대한 단속의 강화와 피해소년의 보호, (2)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이며, 셋째, 자원의 정비로써 방법기기의 보급, 「아동110번의 집⁴⁵⁾」 등의 자주적인 방법활동에 대한 지원,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정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 「범죄 등에 의한 피해의 사전방지활동의 철저에 대해서⁴⁶⁾」

2000년도 당시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 등에 의한 피해의 사전방지활동의 철저에 대해서(2000년 3월 4일)(犯罪等による被害の未然防止活動の徹底について)」 라는 통달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범죄 등에 의한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1) 지역주민의 요망의 정확한 파악, (2) 상담업무 등의 강화, (3)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강화, (4) 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5) 상담업무 등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에 학교에서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의 추진에 대해서⁴⁷⁾(2000년 3월 4일)」 가 발표되어, (1) 통학시간대와 통학로 등을 고려한 경계활동의 강화, 수상한 자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2) 학교와 학교주변의 지역주민 등과의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이와 연계된 순찰활동의 강화 등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강화, (3)방법학습회의 실시, (4) 학교 등에서의 방법시설의 설치추진 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45) 아동 등을 따라오는 자 등에 의해 불안을 느끼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학로 주변의 일반가정, 상점 등에 아동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한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현재 일본전국에 200만 곳이 지정되어 있다.

46) http://www.pref.shimane.lg.jp/police/shiritai/kunrei/seikatsu/seikatsu.data/s-kikaku_06.pdf#search='犯罪等による被害の未然防止活動の徹底について' 참조.(2012.7.10)

47)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eianki/seianki20000304.pdf#search='子どもを犯罪から守るための対策の推進について'> 참조.(2012.7.10)

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의 추진요령」

전술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위한 대책으로써 2005년에 「범죄 등에 의한 피해의 사전방지활동의 철저에 대해서」를 대신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의 추진요령(子どもを犯罪から守るために対策の推進要領)(2005년 5월 19일 생활안전국통달)⁴⁸⁾」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하다고 보아, (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검거철저와 아동에게 접근하는 등의 범죄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경고 등의 단속의 강화, (2) 통학로와 통근시간대 등을 고려한 경계활동의 강화, 직무질문의 철저, 수상한 자에 대한 상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경찰관에 의한 가두활동의 강화,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수상한 자 등에 관한 정보의 파악강화, 지역안전정보의 지역주민에의 적극적인 제공 등에 의한 각종정보의 파악과 지역주민에의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 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안전의 확보에 역점을 둔 「안전·안심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1)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정비촉진,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안전안심 지역만들기를 주제로 하는 각종의 모델사업 등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지역주민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 「아동110번의 집」의 지원과 아동피해방지네트워킹의 구축, 방법활동지도자⁴⁹⁾, 스쿨서포터⁵⁰⁾, school guard leader 등에의 퇴직경찰관의 활용, 방범기기의 대여 및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범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그 외의 자주적인 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2) 학교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활동, 요망에 따라 비상통보장치의 정비, 방범훈련, 방범교실의 개최, 학교의 시설 및 방범설비, 대응요청의 정비 등에의 협력 등의 경찰과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48)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eianki/seianki20050519-1.pdf#search='子どもを犯罪から守るための対策の推進要領'> 참조.(2012.7.10)

49) 지역주민 등이 전문적인 방범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방범설비사 및 경비원 등 방범대책에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경찰에 등록하여 학교, 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요망에 따라 파견하는 제도로 2006년에 발족하였다.

50) 소년의 비행방지 및 지원, 학교 등에서의 아동의 안전의 확보, 비행 및 범죄피해방지교육의 지원, 지역안전정보 등의 파악과 제공 등을 하는 조직으로써 주로 퇴직경찰이 비상근직원으로서 종사하고 있다. 2009년 4월 1일 현재 545명이 활동하고 있다.

(5)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출소자의 재범방지조치제도(平山真理, 2007 : 146)

전술한 2004년에 奈良県에서 발생한 여아유괴살해사건의 범인이 유아에 대한 성범죄전과가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이 강구되어 법무성과 경찰청의 협력에 따라 2005년 6월부터 법무성과 경찰청에서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출소자의 재범방지조치제도」가 개시되었다.

동 제도는 경찰청이 법무성으로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성범죄수형자의 석방정보의 제공을 받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서 등록함과 동시에 출소 후의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에 이를 통지하고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상자의 소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아동에 대한 접근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 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또한 아동에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의 정보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의 사전방지와 수사에서의 활용이라는 2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太田達也, 2009 : 127).

본 제도는 2010년 6월에 운용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경찰청이 그 동안의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동 제도개선을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2011년 4월부터 새로운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출소자의 재범방지조치제도」가 실시되었다(加藤伸宏, 2011 : 1-21).

동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가 아동의 심신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보호자 및 지역주민에게도 커다란 불안감을 줌과 동시에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의 전력을 갖고 있는 자는 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경찰청이 법무성으로부터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 범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출소정보의 제공을 받아 이러한 자가 출소 후에 다시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 그 외의 성적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언도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법무성으로부터 출소정보의 제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서 등록함과 동시에 출소 후의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장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경찰본부장은 재범방지조치대상자의 출소 후의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재범방지조치실시경찰서로 지정한다.

이러한 재범방지조치에서 말하는 아동대상 폭력적성범죄란,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자인 것을 말한다. 즉, (1) 강제추행, 동 미수 및 동 치사상, (2) 강간, 동 미수 및 동 치사상, (3) 강도강간, 동 치사 및 미수, 상습강도강간, (4)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가운데 추행목적인 것과 동 미수 등이다.

이러한 죄명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범죄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본래 이 재범방지조치가 초등학생의 이동을 피해자로 한 사건을 계기로 하였고 그 후의 지역사회에 커다란 불안감에 따라 개시되었다는 것, 또한 아동은 특히 성범죄에 의해 입는 심신의 상처가 크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13세 미만이라는 제한을 설정한 것은 형법에서 성교동의연령을 13세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松坂規生, 2006 : 15). 또한,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범한 자에 관계되는 조치의 특례」 로써 「경찰본부장은 아동대상 폭력적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한 자로써 당해 범죄의 동기, 수법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재범조치대상자와 동등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재범방지조치의 대상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살인이라는 형태를 취하였더라도 그 동기가 성적쾌락을 위한 것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시

재범방지조치실시경찰서의 서장은 재범방지조치대상자의 출소예정일 이후의 적절한 시기에 있어서 재범방지조치대상자가 귀주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 후에도 재범방지조치대상자가 계속하여 귀주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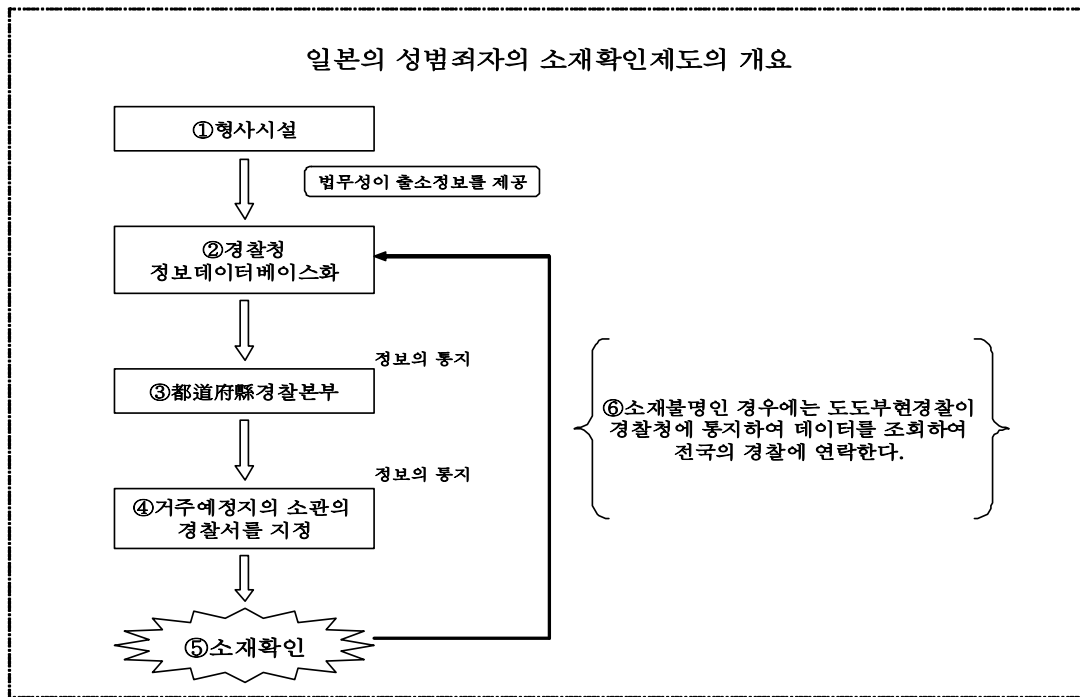
소재확인과 관련해서 종래에는 문패 등의 외형적인 상황으로부터 거주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2011년의 재검토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재범방지조치대상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래에는 경찰관이 재범방지조치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과 대상자가 면담하는 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소재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대상자와 직접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등록의 해제

경찰본부장은 재범방지조치대상자의 과거의 범죄경력과 수법, 출소 후의 생활태도, 그 외의 상황으로부터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찰청에 대해서 재범방지조치대상자의 등록의 해제를 요청한다. 경찰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요청에 관계되는 자에 대해서 재범방지조치대상자의 등록을 해제한다.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2회 이상의 성범죄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라. 재범방지를 위한 소재확인방법

재범방지조치의 가장 큰 중심은 성범죄전력자에 대한 경찰에 의한 소재확인이다. 소재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출처 : 平山真理(2007). わが国における子どもを対象とした性犯罪の現状とその再犯防止対策について. 法と政治, 58(1), p.148. 참조.

【그림 III-2-2】 일본의 성범죄자의 소재확인제도의 개요

먼저 ① 범무성은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출소의 시기가 임박하면 경찰청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출소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출소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행정기관의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行政機關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다른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유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 또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공에 관계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당해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또한 동항 단서의 「보유개인정보를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것에 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란 수사의 신속화 또는 효율화가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방지라고 해석된다. 소재확인에 있어서 사용되는 정보는 성범죄전력자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으로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의 성명, 죄명, 귀주 예정지의 주소 등이 포함된다.

② 경찰청은 범무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에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등록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정보를 집약하고 소재확인의 조회의 자료로 이용한다. 여기에서는 경찰청이 성범죄전력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집약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조회하여 전국의 경찰에 연락하게 된다.

③ 경찰청은 그 대상자가 출소 후에 귀주가 예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본부장에 대해서 그 정보를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경찰본부장은 대상자의 출소 후의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재범방지조치실시경찰서」로 지정하여 이러한 정보를 통지한다.

④ 재범방지조치실시경찰서로 지정된 경찰서의 서장은 원칙적으로 경부이상의 간부를 「재범방지담당관」으로 지명한다. 이것은 성범죄전력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그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 상기의 재범방지담당관은 대상자가 귀주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의 소재확인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⑥ 소재확인에 의해 대상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은 경찰본부장에 그 취지를 보고하고, 경찰본부장은 경찰청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 경찰청은 각 都道府県경찰본부장에 대해서 소재불명의 대상자에게 관계되는 정보의 수집을 지시한다.

(6)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안전시책(清家春夫·鴨志田康弘, 2011 : 31-55) - 大阪府·神奈川県の 사례를 중심으로-

2004년 12월 일본정부는 저출산관련대책으로써 「아동·양육지원계획」을 책정하여 종래까지의 보육중심의 지원에서 기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사회전체에서의 시책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아동·양육지원계획」에서는 ① 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아동의 양육, ② 노동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의 재검토, ③ 생명의 중요성,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④ 양육의 새로운 지원과 연대, 소아과의료,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정비와 양육에 있어서의 안심·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등이 2009년 까지의 중점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저출산대책의 변화는 종래까지의 문제의 근본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그 목표의 하나로써 「양육의 안심·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심·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란 양육환경의 충실을 포함하는 의미로 결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최근의 유괴, 납치, 집단따돌림, 학교붕괴, 교내폭력,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신체적(정신적) 폭행,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과 같이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범죄와 폭력과의 관련성으로 보다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일본내각부에 의해 실시된 「안전·안심에 관한 특별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일본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한 것이 39.1%인 것에 반하여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은 55.9%로 일본사회에 대한 국민의 안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서는 「소년비행, 은둔형 외톨이, 자살 등 사회문제가 다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5.8%로 가장 많고, 「학교붕괴 및 학교의 안전성의 저하 등 교육환경의 악화」라고 답한 사람도 36.3%에 해당하는 등 아동과 양육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안전·안심한 지역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大阪府와 神奈川県の 안전·안심한 지역만들기 조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의 개요를 개관하고자 한다.

가. 大阪府

먼저, 大阪府의 범죄발생현황에서 현재의 아동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및 흉악화와 소년비행의 다발과 저연령화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및 흉악화로는 大阪教育大学付属池田小学校에서 발생한 아동살인사건⁵¹⁾(2001년), 大阪市立大国保育所園児人質사건(2001년) 등 학교에서 발생한 흉악사건과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증가(2001년의 경우 2,518건), 학교 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괴, 상해 등)의 증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大阪府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대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① 감시의 집의 설치: 수상한 자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지역의 12개의 초등학교의 정문에 감시의 집을 설치하고 있다. 감시원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하여 수상한 자의 침입이 있으면 감시의 집에서 학교 직원실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② safety supporter: 전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의 확보와 고령자의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大阪府가 긴급지역고용창출특별기금을 활용하여 2002년부터 실시한 「생활안전지도지원 및 교통안전지도지원위탁사업」의 하나이다. 주요한 활동내용은 초등학교 주변의 경계, 통학로 등의 학교주변에 대한 경계, 범죄 및 사고 등의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활동, 유괴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감시 및 초등학교 주변에서 배회하는 수상한 자(자동차) 등의 정보의 입수와 경찰에의 통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 아동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모델지구활동: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모델지구를 지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경찰과 아동110번의 집, 그리고 safety supporter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清家春夫·鴨志田康弘, 2011 : 38). ④ 수상한 자의 침입방지 및 침입시의 위기관리 매뉴얼: 大阪府교육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학교 내의 불법한 침입자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나. 神奈川県

神奈川県에서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대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안전교육과 규범의식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본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초등학교에 남성이 칼을 들고 침입하여 아동과 교사 등 전체 23명을 살상한 사건이다.

① 「아동110번의 집」 사업: 1997년 7월 1일에 시작된 사업으로 2011년 현재에는 52개 경찰서 198지구 67,14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神奈川県 전체를 담당하는 「아동110번의 집」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사업자로서 神奈川県 협동조합, 자동차판매회사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우체국, PTA연락협의회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는 「아동110번의 자동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아동과 학생에 대한 규범의식 등의 학습기회 만들기: 학교교육에서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규범의식의 향상 및 범죄억지에 연결되는 예방적인 학습활동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의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규범의식의 향상과 비행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학습지도의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과 학생에게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학교감시제도: 학교감시제도는 학생을 지역주민이 지키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교사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감시 자원봉사조직이다.

④ school police net: school police net는 초·중·고교 1,639학교를 대상으로 전자메일로 소년들이 관여될 수 있는 범죄정보(학교에의 불법침입, 유괴, 出会い系사이트(만남사이트) 관련 성추행사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교육의 실시에 따른 아동의 안전확보시책으로서의 지역안전지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의 발생에 따라 일본각지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보호자 및 지역주민이 초등학생의 통학시간에 통학로에 배치되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순찰 강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시스템(越智啓太, 2007 : 90)⁵²⁾ 및 방법 벨(越智啓太, 2007 : 91)⁵³⁾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52) 방법벨과 같이 최근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시스템으로 GPS를 이용한 소재확인 장치이다. 이것은 아동에게 소형의 GPS단말기와 그 기능을 갖는 휴대전화를 휴대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아동이 있는 장소를 검색하여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미리 설정한 위치를 통과한 것을 휴대전화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원칙적으로 유괴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나 부모에게 있어서 범죄불안감을 낮추는 것으로서는 매우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53) 방법벨에 의한 방법대책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방법벨은 아동이 범죄피해를 당할 때 벨을 눌러 범인을 격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방법으로서의 효과는 매우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벨은 범죄자에게 피해대상이 방법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범죄자에게 체포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으로부터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외에 「지역안전MAP」이라는 시책이 추진되었다. 「지역안전MAP」은 일본의 범죄사회학자인 小宮信夫가 개발한 것으로 감시성과 관리성을 높이는 환경범죄학적인 대책의 하나이다. 즉, 아동 스스로에게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성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小宮信夫, 2006 : 99).

이것은 특별히 성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의 방지도 매우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동에게 위험한 장소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아동 스스로가 지역의 위험한 장소를 찾아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아동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장소와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관리성과 감시성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한다.

小宮은 「지역안전MAP」를 아동에게 위험한 장소를 학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험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제라고 하고 있다(越智啓太, 2007 : 89).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지도의 작성은 종래부터 있었으나 대부분은 기존의 위험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고 아동들에게 그러한 지도를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역안전MAP」는 초등학교생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지도로 자신의 생활근거지의 지역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발견하거나,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등의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인자를 찾아 이러한 정보를 지도로 작성하여 정리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안전MAP」의 작성은 아동을 범죄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그 유효성이 긍정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전MAP」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구에서 작성된 안전MAP

일본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전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도가 작성되어 왔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새해 개시 전에 교원에 의한 학교구의 점검이 이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지역, 하천이나 용수로의 위험지역 등이 점검되어 그러한 위험정보를 집약하여 지도로 정리하여 교사에게 공유되어 왔다. 그리고 통학로의 설정과 방과 후의 안전지도 등에 활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PTA⁵⁴⁾에서도 동일한 시책이 추진되어 PTA의 홍보로써 학교 구의 위험한 지점의 정보를

54) PTA (Parent-Teacher Association)란 각 학교별로 조직된 단체로 보호자와 교직원에 의한 교육관계의 단체를 말한다.

가정에 배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지도에 새롭게 위험지점의 정보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인가가 없거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걷기에 위험한 장소를 기재하는 것 등으로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장소의 정보를 지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교통안전내지 하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가 작성되고 있다(大西宏治, 2007 : 27).



* 출처 : <http://yuinomachi.jp/education026.html> 참조. (2012.7.10)

【그림 III-2-3】 우라소에마키미나토(浦添牧港) 소학교구 안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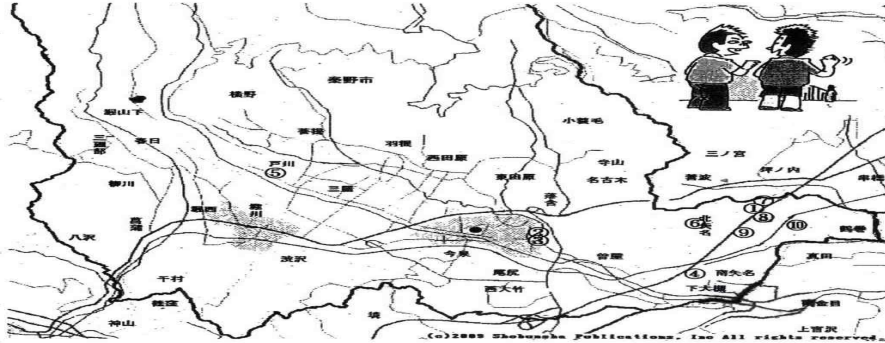
나. 수상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안전지도

초등학교구의 안전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요청이 보호자와 지역사회로부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상한 자와 아동에게 말을 거는 자의 출현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지도가 각 都道府県 및 市町村의 경찰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그림 III-2-4】는 北矢名日の出自治会の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상한 자와 관련된 지도이다. 다만 이러한 지도는 어디까지나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지점을 표시한 것으로 현재 수상한 자가 있는 지점을 표시한 지도는 아니다.

回覧

不審者情報マップ

～子ども・女性を対象とした不審者の情報～



平成23年の状況 (※ 最新の情報から10件を表示しています。)

番号	日 時	地区	不審者	不審者の行為
10	8月9日21時00分	鶴巻南	不詳	後方から抱きつき、体を触る
9	8月1日10時20分	北矢名	30歳代・男	後方から抱きつく
8	8月1日10時15分	鶴巻	不詳	後方から抱きつく
7	7月30日8時27分	鶴巻	30歳代・男	後方から抱きつき、体を触る
6	7月30日8時15分	北矢名	30歳代・男	下半身を見せる
5	7月29日22時15分	戸川	不詳	後方から抱きつき、体を触る
4	7月28日14時20分	南矢名	20歳代・男	後方から抱きつく
3	7月27日20時50分	本町	20歳代・男	後方から顔を掴む
2	7月26日9時05分	本町	20歳代・男	後方から体を触る
1	7月23日9時00分	鶴巻	40歳代・男	後方から抱きつく

* 출처 : http://kitayana-hinode-jichikai.blogspot.kr/2011/09/blog-post_07.html 참조. (2012.7.10)

【그림 III-2-4】 기타야나히노데(北矢名日の出)자치회 수상한 자 지도

이와 같은 지도는 수상한 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범죄자의 근절로는 연결될 수 없으며 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정적인 지도로 수상한 자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다지 방법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상한 자와 수상하지 않은 자를 의견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며 정보의 신뢰도 또한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PTA 및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지도제작에 대한 요청이 높다.

한편, 기존의 범죄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지도를 작성하여도 역시 방법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 아동이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지역에서 이미 범죄가 발생한 지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범죄회피에 응용될 수 없다(大西宏治, 2007 : 27).

다. 지역안전지도

전술과 같이 기존의 위험장소 및 수상한 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 안전지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지도와는 상이한 시점에서 小宮는 범죄사회학의 연구성과를 응용하여 지역안전MAP를 제안하여 이 지도의 작성이 아동의 범죄회피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유효하다고 강조하였다.

小宮가 말하는 지역안전MAP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小宮는 범죄를 범할 환경에 범죄를 범할 인간, 피해자가 되는 인간의 구성이 만들어졌을 때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범죄기회론의 시점에서 아동의 방범교육의 정책 등의 검토한 결과, 아동에게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판별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그 환경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동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범죄의 발생하기 쉬운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습득한 지식을 실제조사를 하여 확인하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찾는 학습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전MAP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학습한다. 즉, 빈 집 및 공원, 도로 등에서도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를 발생하는 것, 휴지가 버려져 있거나 방치된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있는 질서가 파괴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자료 및 시청각교재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학습시킨다.

둘째로, ② 학교구를 현장조사한다. 즉, 아동이 직접 학교구내를 실제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전술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경관으로 찾아내거나 어떠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가를 학습한다. 이러한 현장조사는 약4~8명 정도의 작은 그룹을 만들어 통학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동의 안전확보 및 (1)의 내용을 아동만으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성인이 함께 동반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아동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지도, 예를 들어 주택지도의 복사본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지참하도록 한다.

셋째, ③ 직접조사의 성과를 지도로 표시한다. 즉, ②의 성과를 지도로 정리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며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내지 무질서한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표시하여 이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넷째, ④ 작성된 지도를 발표한다. 즉, 작성된 지도를 다른 그룹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교환을 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관한 이해를 더욱 높인다.

이와 같이 작성된 지역안전MAP는 방위내지 척도가 일반적인 지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만화와 같은 형태를 보이도록 한다. 하지만 지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파악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에 있다. 이에 지도가 완성된 시점에 이 학습의 목표가 달성된다. 또한 직접조사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니거나 놀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다 더욱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大西宏治, 2007 : 28).



* 출처 : <http://nirasakihokuto.seesaa.net/article/73699383.html> 참조.

【그림 III-2-5】 나라사키시립(葦崎市立) 나라사키북동(葦崎北東)소학교 지역안전지도

라. 지역안전지도의 효과

지역안전지도의 작성에서는 먼저 학생들에서 출입이 용이한 장소와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가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학습한다. 다음으로 그룹을 편성하여 분담지역을 정하고 카메라를 지참하여 직접 견도록 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분담지역으로 나온 학생은 먼저 물리적으로 출입이 쉽거나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어디서라도 출입이 가능한 공원은 출입이 쉬운 장소이며, 나무나 꽃 등으로 놀이기구가 보이지 않는 공원은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또한, 가로등이 적은 도로는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한편,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출입이 쉽거나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것 등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낙서와 쓰레기 등의 집산된 장소, 불법 투기된 물건 등이 있는 곳, 공공시설의 깨진 유리창, 방치된 자전거, 위법한 노상주차, 무성하게 자란 잡초, 폐가 등의 장소는 범죄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접근이 쉽고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가 된다. 즉, 전술한 것과 같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질서감이 낮은 상황은 범죄자가 경계심을 갖을 수 없고 또한 편하게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관심한 사람이 많고 서로 알고 있는 등의 관계가 없는 곳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를 실행하여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거나 발각되어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조사에 의해 발견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피해방지의 역할수행연습에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실 중에서 역할수행연습을 하여도 현장의 실체감을 느낄 수 없으므로 단순한 역할내지 오락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한 장소에 가게 되면 기억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역의 탐색이 종료하면 탐색과정에서 발견한 위험한 장소를 지역안전지도로써 정리한다. 먼저, 종이에 도로 및 건물 등을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에 현상한 사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왜 그곳이 위험한가에 대한 이유를 기입하도록 한다.

한편, 집의 표찰, 자동차의 번호판, 통행인의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얼굴 및 이름도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주택을 표시하는 것도 개인공격으로 연결되거나 범죄자에의 정보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지역안전지도의 대상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의 장소에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이 지역안전지도 만들거라는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피해방지능력의 향상이다. 즉, 아동들은 어떠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되며, 위험한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있으므로 친구와 함께 행동하거나 언제나 보다 주의력을 높이게 된다.

둘째, 비행방지능력의 향상이다. 동세대와 지역주민과의 대면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성(대화를 통한 대인관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공헌하는 활동을 통하여 시민성(참가를 통하여 사회를 배우는 것)을 함양하게 된다. 그 결과 양호한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비행을 범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 성인의 방범의식의 향상이다. 지역주민이 아동들에 의한 지역안전지도 만들기를 관찰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 아동을 지역에서 지키자는 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역단위로 범죄자를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진행될 수도 있다.

마. 지역안전지도 만들기에서의 주의점

지역안전지도 만들기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작성방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안전지도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표시한 지도로써 실제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범죄발생지도)가 아니라 수상한 자가 출몰한 장소를 표시한 지도(수상한 자 지도)도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라는 것만으로 이후에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장소에 집착하면 다른 장소를 유단하거나 범죄의 피해에 입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단순히 그대로 지도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장소를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아동이 타학교 전학을 기다라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의 힘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상한 자 지도는 수상한 자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특정의 사람과 집단(지적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을 수상한 자로 취급하는 차별적인 지도가 될 위험성도 있다. 다시 말해서 수상한 자가 누구인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에게 단순하게 수상한 자를 주의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먼저 인사를 하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예절교육과 모순되므로 아동을 혼란하게 할 뿐이다.

이와 같이 수상한 자라는 사람에 주목하여 아동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성인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들에게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성인에게는 충분한 경계를 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는 성인과는 적극적으로 관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범죄의 피해를 입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또한 성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올바른 지역안전지도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는 지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그리는 미래지향의 지도이다.

특히 지역안전지도는 아동이 일상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서는 아동이라도 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장소를 단순히 지도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에 잠재하는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능력은 배양되지 않는다.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의 특징, 즉, 출입이 용이하거나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탐색의 숙제를 아동에게 부여하여 일정한 지역을 스스로가 검색하도록 하면 지역에 잠재하는 위험성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공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혼자 놀고 있었으나 출입이 쉽고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공원이므로 지금부터 별도의 출입이 어렵고 잘 보이는 공원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의식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소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지역에 잠재된 위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피해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역안전지도는 아동이 스스로 제작하는 지도로 보호자내지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지도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지역안전지도를 작성하게 된다면 지역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혹은 아동에게 지도하기 위한 연습자료로써 제작하여야 한다. 아동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 제작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아동 스스로의 피해방지능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학습이론에 따르면 기억에의 정착률은 읽는 것만으로는 10%에 불과하지만 스스로가 실행을 하게 되면 75%가 되며, 타인에게 설명하게 되면 90%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지역안전 지도의 만들기에 접목시키면 성인이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에게 배포하여 아동이 그것을 읽었다고 하여도 아동의 기억에 남는 것은 10%에 불과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직접 제작하면 75%가 기억되며, 또한 하급생에게 가르치거나 보호자 및 지역주민에게 발표하는 등의 실행을 한다면 90%가 기억에 남게 된다. 즉, 기억에의 정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소결

지금까지 일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일본정부, 경찰, 지역사회 및 민간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일본에서는 2004년 11월 일본 奈良県에서 발생한 여아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2005년 6월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조치로써 출소정보제공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경찰청이 범무성으로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성범죄수형자의 석방정보를 제공받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함과 동시에 출소 후의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에 통지하고

귀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상자의 소재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아동에 대한 접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성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또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일본의 출소정보제공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와 같이 성범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내지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지적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출소정보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써 전자발찌내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 등의 실시와 일반인이 스스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책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는 정부의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어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통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경찰의 성범죄대책에서도 사전방지활동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방법활동의 지원을 그 중점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각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안전지도 만들기」 정책은 학문적인 연구성과가 실제 범죄방지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도 만들기」는 아동에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로부터 아동 스스로가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현재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일본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전지도 만들기」는 단순히 피해방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성과 시민성이 함양되어 비행방지능력도 함께 향상되는 부차적인 효과도 인정되고 있다.

아동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책은 부모가 아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24시간 전부 부모가 아동을 감시하고 보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에게 범죄의 피해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실시 중인 「지역안전지도 만들기」 대책은 우리의 앞으로의 대응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제 4 장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3. 면접조사 결과분석
4. 사례조사 결과분석

제 4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 조사개요⁵⁵⁾

1) 전문가 의견조사

(1) 대상과 방법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이다. 성폭력 관련 시설은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이고, 성폭력을 전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성폭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Wee센터를 포함했다. 조사대상 시설의 전국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시설별 종사자 수는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숫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73명,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68명,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71명, 성폭력상담소 279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9명,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쉼터⁵⁶⁾ 12명, 청소년성문화센터 200명, Wee센터 500명 등 총 1,382명이다.

55)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56)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쉼터의 종사자는 12명에 그치고 있어 조사대상자 표집에서는 별도의 시설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포함하여 표집하였다.

표 IV-1-1 조사대상시설의 전국분포 현황

대상 시설	종사자수 (추산)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바라기 아동센터	73	9	1		1	1	1	-	-	1	1	1	-	1	-	-	1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68	6	1	1	-	-	-	-	1	-	1	-	-	-	1	1	-	-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윈스톱 지원센터	171	16	2	-	1	1	1	1	-	2	1	1	1	1	1	1	1	1
성폭력 상담소	279	165	20	5	2	6	12	5	3	38	6	5	9	13	9	14	15	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79	19	2	2	1	1	2	-	1	4	1	2	-	2	-	-	-	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센터	12	2	-	-	-	-	-	-	-	-	-	-	-	-	-	1	1	-
청소년 성문화 센터	200	33	6	3	1	1	2	1	1	2	3	2	1	4	3	1	1	1
Wee센터	500	135	17	5	5	7	3	4	3	17	7	11	9	10	13	13	9	2
합계	1,382	385	49	16	11	17	21	11	9	64	20	22	20	31	27	31	28	8

* 출처 : 여성가족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추산자료)

전문가 의견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별로 각 1명씩 전문가를 선정⁵⁷⁾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들 중에서 30% 내외의 회수를 목표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추산 모집단 1,382명 중에서 484명의 조사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35%), 회수된 설문지 전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해 SPSS/WIN(ver.12.0)을 사용하여 전사처리 했고,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했다.

(2) 내용과 도구

예비조사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업무,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차별되는 서비스를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남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독립된 서비스 운영현황 및 필요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정에서 가정문제 개입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에 있어 기관의 역할,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 정책이나 사업전반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내용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목적과 관련된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조사도구에 포함된 사항은 성범죄 발생원인, 성폭력 정책의 우선순위, 성폭력 관련기관 업무의 실효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 방안, 가족내 성폭력 대책, 교육기관에서의 성폭력 대책,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 필요성, 남성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 등이다. 조사도구는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57) 전문가 선정은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윈스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지원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Wee센터는 교육부 학교폭력근절과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예비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직위는 소장 및 시설장·대표 등 기관장이 3명, 부소장 1명, 팀장 및 실장 등 간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별은 전원 여성이다. 연령은 43세부터 53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근무경력은 3년부터 31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표 IV-1-2 전문가 의견조사(예비조사) 대상자의 특성

기관유형	직위	성별	연령	근무경력
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여성	50세	3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팀장	여성	52세	26년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팀장	여성	43세	5년
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성	49세	12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여성	48세	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대표	여성	46세	17년
Wee센터	실장	여성	53세	31년

본조사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소속기관별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8.7%,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4.3%,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12.2%, 성폭력상담소가 28.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4.5%, 청소년성문화센터가 15.7%, Wee센터가 26.4%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기관장이 8.1%, 간부(실장, 팀장 등)가 18.8%, 직원이 73.1%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 67.6%, 대학원졸이 32.4%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0.7%, 여성이 89.3%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평균 35개월이고, 연령은 평균 3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인		인원수(명)	비율(%)
전체		484	100%
소속기관	원스톱지원센터	42	8.7%
	해바라기아동센터	21	4.3%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59	12.2%
	성폭력상담소	136	28.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2	4.5%
	청소년성문화센터	76	15.7%
	Wee센터	128	26.4%

변인		인원수(명)	비율(%)
직위	기관장	39	8.1%
	간부(실장, 팀장 등)	91	18.8%
	직원	354	73.1%
학력	대졸	327	67.6%
	대학원졸	157	32.4%
성별	남성	52	10.7%
	여성	432	89.3%
재직기간평균 (개월)		35	
연령평균 (세)		38	

2) 면접조사

(1) 대상과 방법

면접조사의 대상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받고 있는 가해청소년과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윈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이다.⁵⁸⁾ 가해청소년 4명, 피해 아동·청소년 6명, 보호자 4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⁵⁹⁾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2) 내용과 도구

면접조사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괴로운 점, 성폭력 범죄 이후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현재 소속된 기관에 대한 욕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건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58) 가해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소년조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해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해 이 기관을 통해 섭외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 및 부모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5개 기관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역을 안배하여 주소록에서 순서대로 선정하였다.

59) 가해청소년은 연구진이 직접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로운 점, 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욕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건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피해아동·청소년 부모 면접조사에서도 역시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피로운 점, 자녀가 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욕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건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요원이 참고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IV-1-4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 번호	구분	소속기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피해 자성 별	피해자 연령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연령대	가해자와의 관계
1	가해 청소년	소년분류 심사원	여성	17 세	고졸 검정 고시	없음	여성	13세이 상-19세 미만	모르는 사람	-	-
2		소년분류 심사원	남성	17 세	고등 재학	없음	여성	13세이 상-19세 미만	모르는 사람	-	-
3		소년분류 심사원	남성	16 세	중학 중단	없음	여성	13세이 상-19세 미만	모르는 사람	-	-
4		소년분류 심사원	남성	15 세	고등 자퇴	없음	여성	13세이 상-19세 미만	아는사 람(1번 봄)	-	-
5	피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여성	15 세	-	학생	-	-	-	19세 미만자	아는 사람
6		해바라기 여성·아 동센터	여성	10 세	-	학생	-	-	-	성인	아는 사람
7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	12 세	-	학생	-	-	-	19세 미만자	가족(친 오빠)

사례 번호	구분	소속기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연령대	가해자와의 관계
8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지원센터	여성	12세	-	학생	-	-	-	성인	모르는 사람
9		성폭력 보호시설	여성	17세	-	학생	-	-	-	성인	가족
10		성폭력 보호시설	여성	17세	-	학생	-	-	-	성인	아는 사람
11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원스톱지원센터	모	41세	대졸 이상	주부	-	-	-	-	-
12		해바라기 아동센터	모	46세	초졸 이하	주부	-	-	-	-	-
13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모	39세	대졸 이상	직장	-	-	-	-	-
14		성폭력 상담소	모	44세	고졸	직장	-	-	-	-	-

3) 사례조사

(1) 대상과 방법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6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담당공무원을 만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추천받은 우수사례 해당기관으로 대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강원도청, 순천시청, 경상남도청, 서울 중랑구청, 경기도 군포시청으로 총 6개 기관에 해당한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주로 지역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방문일정 조율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진행 사업과 운영 절차,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업무와 관련된 공문서와 관련 서류 및 사진 등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순수한 구두 면담으로만 심층면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2) 내용과 도구

사례조사의 내용은 운영현황, 현행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협력기관,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요원이 참고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기관 특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6개 기관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였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사례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지역은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서울권, 경기권의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도청 1개, 시청 3개, 구청 1개, 광역연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대상 인원은 지역별로 1명에서 7명까지 구성되어 있다.

표 IV-1-5 사례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지역	기관	면접대상 인원
1	강원권	강원도청	2인
2	전라권	순천시청	2인
3	경상권	경남광역연대	7인
4	충청권	대전시청	3인
5	서울권	중랑구청	1인
6	경기권	군포시청	1인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예비조사⁶⁰⁾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

원스톱지원 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표준화되

60)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기관의 업무가 도식화되어 소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은 세 기관의 공통적인 업무이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긴급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와 지적장애인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합한 기능을 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와 지적장애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지원능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은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둘째, 성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셋째, 가해자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넷째,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다섯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폭력보호시설의 주요업무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둘째,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셋째,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넷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법인단체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사업,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캠프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기타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www.tacteen.net).

마지막으로 Wee센터는 시도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주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부모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례관리 및 병원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리해 보면 성폭력 예방의 역할과 피해자 지원을 모두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 성폭력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는 기관과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성폭력예방 및 교육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관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Wee센터이고 피해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은 여성아동성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의 소속인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이러한 분류는 논의를 위한 유형화이지 현실에서는 반드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의 주요 기능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지만 성폭력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 중 실효성이 높은 것

기관종사자들은 기관의 업무 실효성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특히 수사지원 분야에서 첫째, 진술조사 참여전문인력 참여로 전문가 의견서 작성 및 아동, 장애인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둘째, 센터 내 여성경찰관이 상주함으로써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청소년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피해자의 의식주 해결 및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는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담당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정신의학적 약물치료를 제일 실효성 있는 것으로 꼽았다. 그 이유로 치료유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그 후의 삶이 극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불어서 교육계, 검찰·경찰, 연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성폭력 관련 교육도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그러한 교육을 통해 관련인들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이러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센터에 연계하고 치료에 협조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의 경우 센터의 고유업무는 모두 실효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캠프와 부모지지집단모임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역시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는 아동과 부모 모두 외부에 쉽게 노출해서 위로와 지지를 구하기 힘든 문제로 이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자체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단기실효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치유회복프로그램, 열린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들었고, 장기실효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책임부모교실, 피해자자조모임,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들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 보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사업(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 강사를 활용 할 수 있어서 성폭력피해후유증치료회복 및 성폭력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① 성폭력 피해 상담 - 2차 피해 예방. 심리 치료, ② 성범죄 가해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 - 성범죄 인식 수정. 왜곡된 성통념 수정. 피해자 공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③ 성교육 - 성문화 및 성인식 개선, 성인권 의식 강화,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인식 수정. 왜곡된 성 통념 수정 피해자 공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⑤ 제도 개선 운동 및 캠페인 - 성보호법 제정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및 제도 보완 효과 을 실효성있는 업무로 평가하였다.

Wee센터의 업무는 모두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① 개인상담: 성문제와 연관된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 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사고력이 미약한 관계로 실제 체험으로 느껴야 가치관이 정립되는 관계로 실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높다.
- ③ 성폭력 예방 부모교육,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교육: 학생들의 부모가 교육 받으므로써 문제의 근원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사례관리: 성폭력 학생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복합적일 경우, 복지적 차원에서의 학생 및 가정, 학교 등 그물망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3)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 중 실효성이 낮은 것

앞에서는 각 기관종사자가 생각하는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업무나 프로그램 중 실효성이 낮은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대부분은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 보다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대한 응답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응답한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이 한 번에 가능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첫 내방시 상담지원 후 법률조력인을 원할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기간과 법률조력인 스케줄을 맞춰 진술녹화 일정을 조정하다보니 진술조사가 뒤로 미루어져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고, 피해내용이 오염 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00 원스톱지원센터 대표).

즉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진술녹화를 해야 하는 데, 법률조력인의 스케줄에 따라 이러한 진술녹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 법률지원을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지역 해비라기 아동센터에서는 경찰 진술을 끝낸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의 피해진술을 받고 증거채취를 위한 법의학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후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경찰진술 이외에 재차 아동에게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의 가능성을 만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의 성폭력피해후유증의 여파로 자립과 자활의 의지는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건강상태와 무기력함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중도에 어려움이 따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자활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e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프로그램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사례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 상담별 피드백의 차이이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학교 관계자들이 성폭력 관련 신고 의무제 제도에 관해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4)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성인여성과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가족개입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 대개의 경우 피해아동의 가족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농후하다. 또한 가족이 성폭력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피해아동에 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유과정과 그 효과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전체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자원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의 피해후유증 극복과정은 성인과 매우 다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은 성인여성에 비해 매우 크며 장기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셋째,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친부나 의붓아버지 등 가장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교도소에 가야하는 경우, 그 가족은 큰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고, 피해아동의 치료와 성장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성인 여성 피해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 지역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담당자는 아동과 청소년피해자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의 진술이 있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아동이 피해자이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치료에 임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의 청소년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성폭력 피해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동들처럼 아는 사람을 모르고 따라갔다가,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당한 일이 성폭력 피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호자나 교사에게 “내가 당한 일이 성폭력 같다”고 “그 아저씨를 벌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②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아서 또는 인터넷채팅이나 스마트폰 채팅으로 자발적으로 만나 서로 좋아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청소년은 성관계까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성은 “이 정도면 강제로 성관계를 해도 되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중에 그것이 성폭력사건으로 되면) 한사람은 성폭행 피해자로,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③ 그 상황을 부모가 알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특성상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청소년이 그런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알리면 저 여기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피해를 막기 위해 적어도 3세선 정도의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은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부모에게는 안 알릴테니 교육은 받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출한 상태로 센터를 나가는 순간 아이가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이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아이를 찾기 힘들 경우가 많다.

우리는 치료적 관계가 잘 수립되어서 아이가 가족과, 학교와 친구와의 (어떨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이가 이미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그 청소년이 센터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어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설득하지만 잘 안될 경우가 많다.

겨우 청소년을 설득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도 어떤 부모는 “나도 재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고 한다.

요약하면

- ① 청소년은 아동과는 달리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청소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 ② 청소년은 미리 갖고 있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의 문제가 센터의 조절력을 벗어날 만큼 많다.
- ③ 치료를 위해 아동피해자의 경우는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진행하면서 아동과 가족의 문제가 동시에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피해청소년을 설득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나 연계기관에 의뢰해야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이다.(00 해바라기 아동센터 부소장)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의 구별이 필요한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도 고려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인여성 피해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많은 담당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으로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5) 남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서비스 운영 현황 및 필요성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독립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아 피해자를 여성 아동·청소년과 별도로 보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 아동·청소년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성피해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성아동·청소년과 다른 남성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 남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남성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피해를 신고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더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여성경찰관이나 여성상담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센터에서의 경험을 보면 피해자로서의 남이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센터나 서비스 프로그램, 예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피해자 숫자상으로도 적어서 모으기가 어렵고, 적은 피해자 수에 연령, 피해 시점이 다르므로 인해 회복 시점 역시 달라서 grouping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집단 프로그램 등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통합센터의 공식명칭이 “여성·아동센터”로 한 쪽 성을 특정하고 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물론 아동이라는 개념에는 양성(양성)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반대중에게 그리고 잠재적인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여성아동센터는 도움을 요청하기에 심리적인 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 남성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시와 구 단위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연대의 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여러 지역에 결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연대의 역할이나 기능이 뚜렷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단순히 관련기관들이 때때로 만나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지속적인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 보다는 “연 2회의 회의에서 관할 지자체가 (또는 공공·민간기관이) 해당기간 해왔던 사업을 보고하는 회의와 2회의 성폭력 또는 폭력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에 지역연대의 존재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다.”(0 지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담당자)

비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관주도의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의 문제였다. 구청이나 시청에 성폭력전문가가 있어서 지역의 각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나 여성복지 관련 단체들의 모임과 중복되고 있는 점도 지적이 되었다. 지역연대 모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로 시간이 채워지기도 한다거나, 모임에서 각 기관의 성격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거나 하는 등 지역연대의 본질적 기능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전문가가 시나 구 단위의 행정기관에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연대회의를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성하여 전체회의에서는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역할을 구축하고 대상에 따라 맞는 분과회의 또는 실무자 회의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례관리와 솔루션 제공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하도록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워크숍이나 포럼을 통해 각 참여기관의 특수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본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지역연대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기관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성폭력상담소, 해마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Wee센터, 상담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 교육청, 기타 의료지원단 등 서비스 지원단 경찰,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거론되었다.

(7)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과정에서 가정문제 개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문제의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아동피해자의 경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친족성폭력의 경우 더 두드러져서 가족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 치료가 불가능하다.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족의 와해를 지키려는 부모 또는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깊게하고 치료효과를 가져오기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소를 꺼려하거나 자녀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하고, 친오빠가 가해자인 경우,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딸은 피해자인 자신이 보호받기보다 가해자인 오빠가 가족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며 상처를 받게 된다. 종종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딸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라고 느끼면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이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이것이 가출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친족성폭력을 목격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의 치료과정은 가족전체에 대한 가족상담과 개별구성원에 대한 개별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치료사가 확보되어야 하며 보호기관 종사자들 모두 또는 일부는 가족개입과 중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친족의 경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구속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는 (또는 신고를 꺼려하는 가족의)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신속한 아동의 치료를 보호자에게 명령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피해아동 회복에 키를 쥐고 있는 엄마들이 가해자인 남편에게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당장 가해자 구속 이후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 아동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피해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탄원서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는 탄원서가 감형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로 인해 피해 자녀에게 강요하며 모녀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있어 가족개입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이 사례는 0지역 Wee센터에서 제공된 사례이다.

<사례>

○ 사건개요 : 장애인 편부 슬하의 초등 5년 여아에게 2살 연상의 친오빠와 친구 1명 외 같은 임대아파트의 중3 남학생이 약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온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알려지게 됨.

○ 개입과정 : 학교에서 Wee센터에 상담 의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 초등 2학년부 터 어머니의 가출 이후 장애인 아버지는 주벽이 심하여 방치된 과정에서 신원불상

의 40대 남성 등으로 부터도 수차례 성폭행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아동과 가해자 친오빠 2명은 센터에서의 심리 인지치료를 받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였다.

이후 Wee센터 복지사 및 관계자들이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아버지에게는 자녀 양육에 관해 지도하고, 중3 인근 남학생의 가정에도 따로 방문하여 피해아동 주변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차후의 재발방지 약속을 부모와 학생 당사자로부터 받아냈다. 현재까지 아동은 무난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 문제점 : 피해아동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 어려움이 드러나는 과정에 학교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있는 다음에야 아버지가 피해아동에 대해 역할을 개시하는 등 가정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동의 피해 및 후유증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구청에서의 사례관리 가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해 중3 남학생 역시 탈북자 자녀로 사회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학생 역시 사회의 냉대와 심리적 어려움을 더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사례관리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 될 필요가 있다.

(8) 보육 및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과 개입할 수 있는 타 기관의 유형 및 역할의 범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해자-피해자 격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가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구성원(직원과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성폭력이라도 학교공간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위신이나 체면 등을 핑계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거나 기관책임을 벗어나고자 가해자의 편에 선다던가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초등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다룬 최근의 민사법원 판결은 학교와 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의 중대성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한겨레신문, 2012, 8, 30일자).

성폭력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의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인지하였을시 신고의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교육기관에서는 재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피해 아동·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연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관련 상담, 수사 및 의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 ②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 ③ 성인 가해자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 ④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1:1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⑤ 위기청소년들의 보호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청소년쉼터

넷째,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바로 분리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그 교육기관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해자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피해 아동을 바로 연결하여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가해자가 어린 또래일 경우 고소가 가능하지 않고, 가해자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양자 다툼이 생기고 기관이 이를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 옹호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보통 가해 아동의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들 말만 어떻게 믿느냐, 만약 아니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기관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때 기관은 매우 소극적, 방어적이 되며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덟째,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가 절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2차 피해가 유발되어서 결국 피해 아동이 기관을 떠나고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9)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의 필요성

회복적 정의이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해결의 중심에 두는 대안적 문제해결방식으로 가해자 처벌에 주안점을 두는 기존의 형사사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기존의 형사사법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필두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가해자의 책임인정을 핵심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이 서구사회에서 유력한 대안적 형사사법으로 많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자-피해자의 화해나 조정 등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 사건해결의 방법으로 강조되는데, 이러한 회복사법 이념을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회복적 정의 이념의 적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조건부로 찬성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해의 정도가 다르고, 가해자의 책임성,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얼마나 원하는 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적용은 무리가 있다. 가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인정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

(10) 소결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7개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기관에 따라 예방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는 기관도 있고, 아동성폭력 피해자 사후지원에 더 주안점을 두는 기관으로 나누어 졌다. 예를 들어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 치료와 지원을 위한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나 Wee센터 등은 성폭력 예방활동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을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해바라기 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주대상이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활동 업무의 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은 자신들의 업무가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었는데,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법률조력인과의 협조문제 등으로 인한 법률지원의 원활하지 못함을 개선이 필요한 업무로 제시하였고, 보호시설에서는 피해당사자들의 무기력과 포기로 인해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의 실효성이 비교적 낮다고 응답하였다.

기관활동의 범위,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 외에도,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성인여성 피해자와의 차별화 필요성, 남성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독립된 서비스의 필요성, 아동보호지역연대의 문제점, 피해지원 과정에서 가정문제 개입의 필요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있어 교육기관의 역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해의 해결에 있어 회복이념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들 질문에 대해 기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회복이념의 적용필요성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성인여성피해자의 차별화가 필요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가족의 도움 없이는 치료나 상담 등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문제 개입 필요성이 훨씬 더 크며, 둘째, 피해 후유증 극복과정이 성인과는 매우 다르며, 셋째, 친족성폭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인 경우, 양육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과 성인피해자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아동피해자와 청소년 피해자의 차이가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피해자와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는 가족과의 관계나 성폭력 피해 이후 치료과정에서나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그냥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새겨들 필요가 있다.

남성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독립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아동·청소년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독립된 기관의 설립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개별사례의 특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치료과정에서 남아피해자의 특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성피해자의 경우 여성상담사나 여성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 놓는 것을 꺼려하며, 성폭력에 대한 신고나 노출도 더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는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아동센터’라는 용어에서 한 성(性), 즉 여성을 특정하는 것이 마치 다른 성(남성)을 제외하는 듯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여성피해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잠재적인 남성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성폭력피해자센터’나 ‘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 특정성이 드러나지 않는 성 중립적인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단위 지자체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지역연대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통일적으로 나타났다. ‘관주도의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에서부터 타 모임과의 기능 중복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으며, 사례중심의 분과회의를 만들거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문가의 확보 등이 보완책으로 언급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성인여성보다 훨씬 크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 없이 치료받으려 혼자 올수도 없다. 따라서 부모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가족내 성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 가족문제는 피해자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친부나 계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탄원서를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 부모들은 가족의 해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역동성과 불안정성을 같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에 집단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위해 가족치료사 등의 전문가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족개입 및 중재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일반직원들이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피해지원에 있어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책임회피를 위해 가해자 편에서 합의를 중용하거나 피해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신고의무에 대한 강화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학생, 교사, 부모에 대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회복이념의 적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동·청소년 가해자들에게는 처벌보다는 이러한 회복이념을 통해 교정과 사회복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죄질이 나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회복이념의 적용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제안된 의견으로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기능 중 가정폭력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해바라기는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제안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수를 늘리는 것,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적극적 제재,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문제해결로 접근할 것, 아동·청소년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법정의 신설 등이 있었다.

이들 의견들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그들의 경험에 입각한 여러 제안들을 정책적 제안에 녹여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설문조사⁶¹⁾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성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예방 정책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⁶²⁾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71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3.02
성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3.8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22

또한 피해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61)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62) 우선순위의 점수는 4가지 개선방안 항목에 대해 순위를 적도록 하여 평균을 낸 것이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2 피해지원 정책

개 선 방 안	우 선 순 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64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2.95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3.02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3.06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3.30

(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실효성을 묻은 결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4.1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산부인과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3.99)’, ‘사건조사 및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3.97)’,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연계망 구축(3.82)’,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3.81)’,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3.66)’,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3.51)’,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3.42)’, ‘가해자인 친족과 분리된 생활환경 제공(3.34)’, ‘피해자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취학서비스 제공(3.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 는 편	보 통	있 는 편	매 우 있 음	평 균 ⁶³⁾	사 례 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0.8% (4)	3.8% (18)	15.4% (74)	35.6% (171)	44.4% (213)	4.19	480
사건조사 및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1.7% (8)	5.6% (27)	17.7% (85)	44.1% (211)	30.9% (148)	3.97	479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0.6% (3)	9.7% (46)	26.1% (124)	35.7% (170)	27.9% (133)	3.81	476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1.9% (9)	14.3% (68)	32.3% (153)	33.5% (159)	17.9% (85)	3.51	474

63) 평균의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른 응답의 평균치이다.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 는 편	보 통	있 는 편	매 우 있 음	평 균 ⁽⁶³⁾	사 례 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연계망 구축	0.6% (3)	8.8% (42)	24.1% (115)	40.9% (195)	25.6% (122)	3.82	477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0.8% (4)	11.7% (56)	30.6% (146)	34% (162)	22.9% (109)	3.66	477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산부인과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0.8% (4)	9.8% (47)	16.7% (80)	35.1% (168)	37.6% (180)	3.99	479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4.4% (21)	20.1% (96)	25.8% (123)	28.5% (136)	21.2% (101)	3.42	477
피해자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취학서비스 제공	6.9% (33)	28.7% (137)	28.2% (135)	21.5% (103)	14.6% (70)	3.08	478
가해자인 친족과 분리된 생활환경 제공	7.3% (35)	22.5% (108)	23.6% (113)	22.1% (106)	24.4% (117)	3.34	479

(3) 13세 미만 및 13-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의 필요성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묻은 응답의 평균을 살펴보면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4.53,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4.52로 두 응답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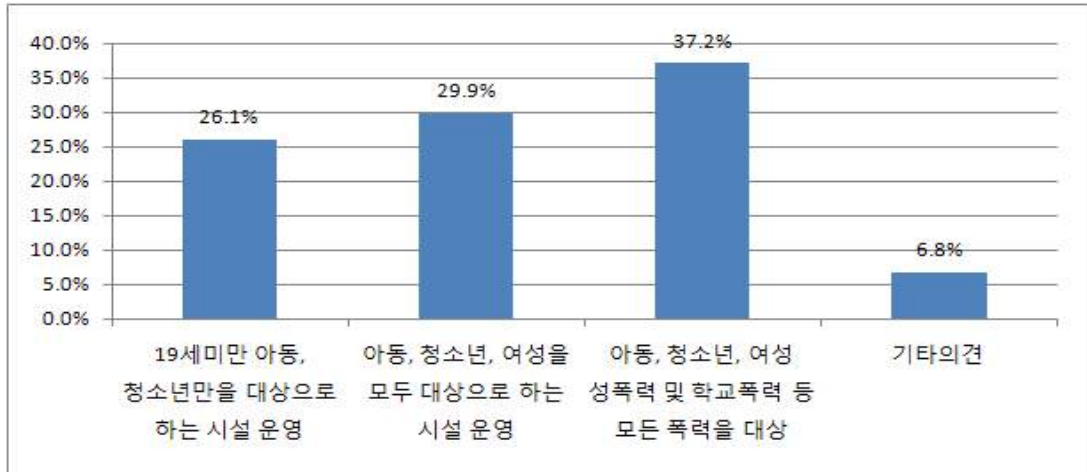
표 IV-2-4 13세 미만 및 13-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의 필요성

개 선 방 안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 통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 균	사 례 수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0.4% (2)	5.1% (24)	6.9% (33)	15.8% (75)	71.8% (341)	4.53	475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0.4% (2)	6.3% (30)	6.1% (29)	15.5% (74)	71.6% (341)	4.52	476

(4)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및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시설

운영(3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아동, 청소년,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29.9%)’,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26.1%)’ 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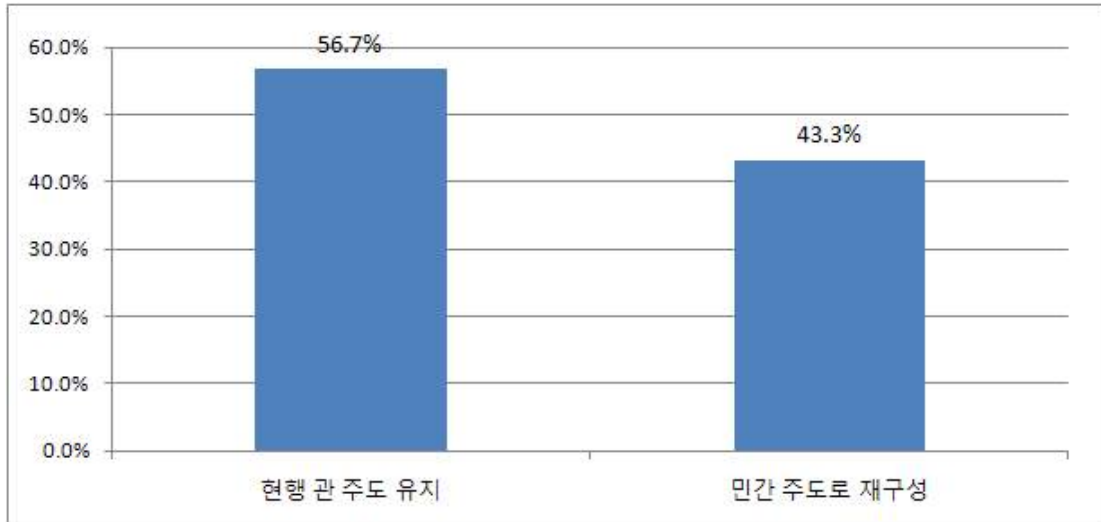
- ✓ 13세 미만을 전담(증거확보, 수사, 치료 등)하는 기관이 필요, 현 해바라기는 정신의학 및 심리 치료만 시행함
- ✓ 개인적으로는 13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으나, 여건상 힘들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 ✓ 기관을 늘리지 말고 인력 충원이 저예산, 고효율
- ✓ 기존에 있던 시설 실속 운영
- ✓ 매우 필요하다 통합센터(경찰상주)-실질적 원스톱시스템이 바람직, 해바라기센터 역할, 지원미비
- ✓ 성폭력뿐 아니라 치료, 상담 보호시설이 함께 원스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
- ✓ 아동 청소년 여성 남성 성폭력 및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시설 운영,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받는다.
- ✓ 해바라기센터나 원스톱센터의 기능을 보강시켜서, 내실있는 피해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격이 비슷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봄

【그림 IV-2-1】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민간 주도 재구성에 대한 의견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현재는 시청 및 구청 등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주도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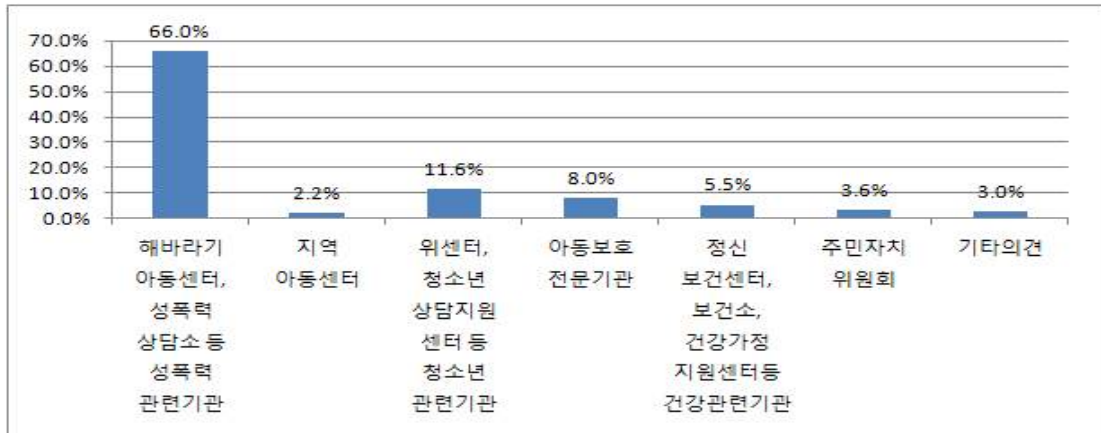
지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 관 주도 유지' 응답이 56.7%로 '민간 주도로 재구성(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민간 주도 재구성에 대한 의견

(6)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

민간 주도로 재구성한다면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관련기관(66.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11.6%)', '아동보호전문기관(8%)',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건강 관련기관(5.5%)', '주민자치위원회(3.6%)', '지역아동센터(2.2%)' 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의 견

- ✓ 모든 기관이 허브기관이 되어야 함
- ✓ 모든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 수사기관
- ✓ 적절하게 모든 기관이 연결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전문기관 재구축
- ✓ 전문기관 재설립
- ✓ 한쪽 주도는 아직 반대 입장
- ✓ 현행만 주도

【그림 IV-2-3】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

(7)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도움정도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한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의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도움 정도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한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묻은 결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3.5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3.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안전망구축과 공동체의식회복 도움도에 대한 의견

개 선 방 안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평균	사례 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7% (8)	15.9% (75)	32.1% (151)	33.8% (159)	16.6% (78)	3.48	47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3% (6)	13% (61)	34% (159)	36.1% (169)	15.6% (73)	3.52	468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2.1% (10)	8.5% (40)	17.3% (81)	36% (169)	36% (169)	3.95	469

(8)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실무자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지속적 교류가 4.31로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서비스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 논의구조 조성(4.21)',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조정(4.1)',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직능단체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4.09)',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기회 제공(4.04)', 'CYS-Net이나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관련단체와의 역할 중복문제 해소(3.98)', '학부모 대표 및 피해아동 부모 대표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3.92)', '아동, 여성, 가정, 학교 등 대상을 달리하는 분과회의 개최(3.67)', '구청에 성폭력 전문가 배치하여 시청보다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3.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기회 제공	0.9% (4)	4.5% (21)	20.6% (96)	38.3% (179)	35.8% (167)	4.04	467
실무자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지속적 교류	0.2% (1)	2.1% (10)	13.7% (64)	33.8% (158)	50.1% (234)	4.31	467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서비스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 논의구조 조성	0.4% (2)	1.5% (7)	17.6% (82)	37.1% (173)	43.3% (202)	4.21	466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조정	0% (0)	3.4% (16)	23% (107)	33.5% (156)	40.1% (187)	4.10	466
아동, 여성, 가정, 학교 등 대상을 달리하는 분과회의 개최	2.8% (13)	10.8% (50)	28.4% (132)	32.5% (151)	25.6% (119)	3.67	465
구청에 성폭력 전문가 배치하여 시청보다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	4.7% (22)	12.5% (58)	25.4% (118)	35.7% (166)	21.7% (101)	3.57	465
학부모 대표 및 피해아동 부모 대표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	1.7% (8)	7.1% (33)	20.5% (95)	38.7% (179)	32% (148)	3.92	463
CYS-Net이나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관련단체와의 역할 중복문제 해소	0.2% (1)	3.7% (17)	25.3% (117)	39.8% (184)	31% (143)	3.98	462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직능단체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0.2% (1)	4.1% (19)	20.6% (96)	37% (172)	38.1% (177)	4.09	465

(9)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응답에서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4.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4.52),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법적 권한 강화 및 친권박탈과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4.45),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의 경제적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합적 원스톱 체제로 구축(4.3), ‘가족치료사의 가족상담 및 현 직원에 대한 가족개입 훈련(4.27), ‘비가해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4.22), ‘피해아동의 탄원서가 법적효력이 없도록 개선(3.4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7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	0.2% (1)	1.3% (6)	5.9% (28)	24.5% (116)	68.1% (322)	4.59	473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법적 권한 강화 및 친권박탈과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	0.2% (1)	2.3% (11)	10.1% (48)	27.4% (130)	60% (285)	4.45	475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	0.4% (2)	2.3% (11)	5.5% (26)	27.9% (132)	63.8% (302)	4.52	473
비가해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	0.2% (1)	3.2% (15)	15.9% (75)	36.1% (170)	44.6% (210)	4.22	471
피해아동의 탄원서가 법적효력이 없도록 개선	12% (55)	7.4% (34)	28.1% (129)	25.3% (116)	27.2% (125)	3.48	459
가족치료사의 가족상담 및 현 직원에 대한 가족개입 훈련	0.6% (3)	3.8% (18)	13.6% (64)	31.5% (148)	50.4% (237)	4.27	470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의 경제적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합적 원스톱 체제로 구축	1.1% (5)	2.5% (12)	12.7% (60)	32.5% (154)	51.3% (243)	4.30	474

(10)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대책의 개선사항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피해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이 4.81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은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4.72)’, ‘피해 아동, 청소년 및 부모 심리치료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4.68)’,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교육기관을 떠나는 일 방지 및 피해아동, 청소년 중심의 사건 처리(4.64)’,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4.64)’, ‘신고의무자는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철저 이행 및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숙지(4.59)’, ‘아동, 청소년의 피해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지양 및 정확한 정보 전달(4.48)’,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처벌 실시(4.47)’, ‘사건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처벌(3.81)’, ‘Wee센터와 교육청의 개입(3.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대책의 개선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신고의무자는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철저히 이행 및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숙지	0.2% (1)	0.6% (3)	6.1% (29)	25.5% (121)	67.5% (320)	4.59	474
아동, 청소년의 피해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지양 및 정확한 정보 전달	0.8% (4)	0.4% (2)	8.9% (42)	29.4% (139)	60.4% (285)	4.48	472
피해 아동, 청소년 및 부모 심리치료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0% (0)	0.6% (3)	3.6% (17)	22.6% (107)	73.2% (347)	4.68	474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교육기관을 떠나는 일 방지 및 피해아동, 청소년 중심의 사건 처리	0.6% (3)	1.5% (7)	5.3% (25)	18.4% (87)	74.2% (350)	4.64	472
피해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피해 예방	0% (0)	0.4% (2)	1.7% (8)	13.9% (66)	84% (398)	4.81	474
Wee센터와 교육청의 개입	3.4% (16)	8.7% (41)	25.7% (121)	36.7% (173)	25.5% (120)	3.72	471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0.2% (1)	0.2% (1)	4.2% (20)	18.1% (86)	77.2% (366)	4.72	474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0.4% (2)	0% (0)	5.9% (28)	22.1% (105)	71.6% (340)	4.64	475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처벌 실시	0.2% (1)	2.5% (12)	8.2% (39)	27.6% (131)	61.4% (291)	4.47	474
사건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처벌	5.1% (24)	9.1% (43)	22.7% (107)	26.3% (124)	36.9% (174)	3.81	472

(11)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성인가해자에 대한 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해결의 중심에 두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에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자-피해자의 화해나 조정 등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 사건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매우필요하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도 29%를 차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2-9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

개 선 방 안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평균	사례 수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0.2% (1)	2.3% (11)	10.1% (48)	29% (137)	58.4% (276)	4.43	473

(12)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가해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상담, 지도하고 선도 및 재활 치료(4.68)'와 '가해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4.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법체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4.54)',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복(4.39)',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사건 해결과정에 가해자의 사과 유도(4.22)', '화해과정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4.09)', '피해 가해 학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 개선(3.94)',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3.9)', '가해 학생이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입(3.8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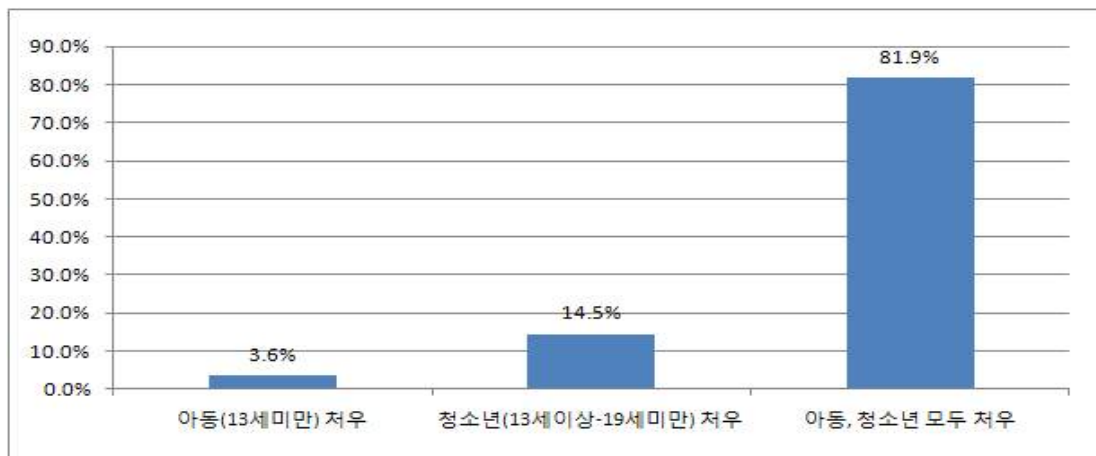
표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복	0.6% (3)	2.5% (12)	10.2% (48)	30.3% (143)	56.4% (266)	4.39	472
가해 학생이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입	2.1% (10)	7.4% (35)	25.3% (120)	35.4% (168)	29.9% (142)	3.84	475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2.8% (13)	8.9% (42)	18.4% (87)	35.6% (168)	34.3% (162)	3.90	472
피해 가해 학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 개선	8.6% (41)	8.6% (41)	10.3% (49)	25.1% (119)	47.3% (224)	3.94	474
가해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상담, 지도하고 선도 및 재활 치료	0.2% (1)	0.6% (3)	3.8% (18)	21.2% (101)	74.2% (353)	4.68	476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사법체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	0.2% (1)	1.3% (6)	6.7% (32)	27.6% (131)	64.2% (305)	4.54	475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사건 해결과정에 가해자의 사과 유도	2.3% (11)	3.6% (17)	14.3% (68)	29.6% (141)	50.2% (239)	4.22	476
화해과정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2.7% (13)	5.3% (25)	17.1% (81)	30% (142)	44.9% (213)	4.09	474
가해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0.4% (2)	0.8% (4)	4.8% (23)	17.6% (84)	76.3% (363)	4.68	476

(13)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의 처우여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처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 청소년 모두 처우(81.9%)’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청소년(13세 이상-19세 미만) 처우(14.5%)’, ‘아동(13세 미만) 처우(3.6%)’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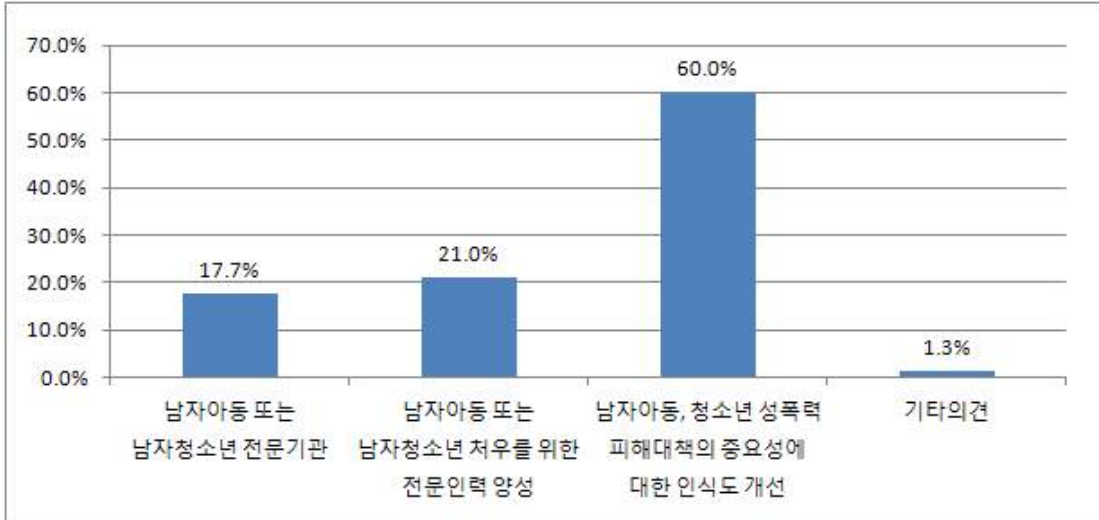


【그림 IV-2-4】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 처우여부

(14)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남성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6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남성아동 또는 남성청소년 처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21%), ‘남성아동 또는 남성청소년 전문기관 (17.7%)’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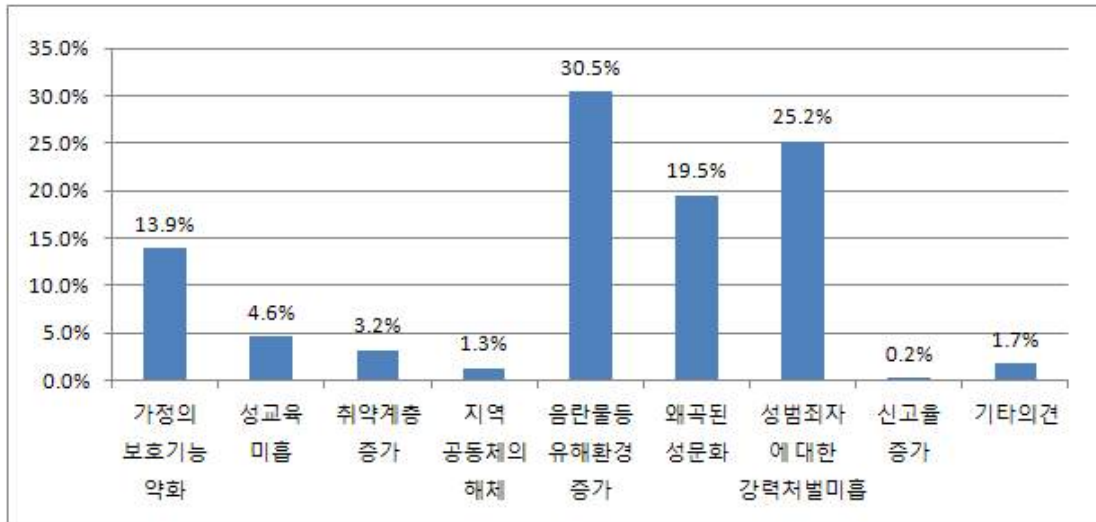
기 타 의 견

- ✓ 남성에 대한 성폭력의 중요성 인지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다.
- ✓ 전문기관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전문인력을 중앙에 몇 명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 ✓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데 급급한 것보다 물론 피해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교육이 강화되고 우선시되어 멀리 내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IV-2-5】 남성 아동이나 남성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정부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음란물 등 유해환경 증가(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미흡(25.2%)’, ‘왜곡된 성문화(19.5%)’,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13.9%)’, ‘성교육 미흡(4.6%)’, ‘취약계층 증가(3.2%)’, ‘지역 공동체의 해체(1.3%)’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의 견

-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
- ✓ 가해자의 인지적 왜곡에 대한 심리상담 부족 및 자립지원 부족
- ✓ 사회문제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이유를 고를 수 없음, 최초의 문제의 출발은 가정의 보호기능의 약화가 있음
- ✓ 전문가가 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 부모들이 아동에 맞는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실정이다. 모든 가정이 성교육전문가가 된다면 성범죄자가 예방이 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가정 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 타인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문제
- ✓ 형이 높아지지만 실행률이 낮고,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상태로 해서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

【그림 IV-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16)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의 실효성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들의 실효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성폭력 상담(4.13)’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보호시설 운영(4.04)’,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체계(4.03)’, ‘성교육(3.93)’,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3.47)’,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3.83)’,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3.64)’, ‘전자발찌제도(3.19)’, ‘화학적거세제도(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 는 편	보 통	있 는 편	매우 있 음	평 균	사 례 수
성교육	1.1% (5)	7.4% (35)	24.5% (116)	31.3% (148)	35.7% (169)	3.93	473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1% (5)	6.1% (29)	26.5% (126)	41.4% (197)	25% (119)	3.83	476
성폭력 상담	0% (0)	2.3% (11)	18.1% (86)	44% (209)	35.6% (169)	4.13	475
보호시설 운영	0.2% (1)	5.9% (28)	20.2% (96)	37.1% (176)	36.6% (174)	4.04	475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체계	0% (0)	5.1% (24)	22.2% (105)	38% (180)	34.8% (165)	4.03	474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3.2% (15)	13.8% (65)	33.7% (159)	31.6% (149)	17.8% (84)	3.47	472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3% (14)	11.6% (55)	30.6% (145)	27.8% (132)	27% (128)	3.64	474
전자발찌제도	5.9% (28)	24.4% (116)	30.9% (147)	21.9% (104)	16.8% (80)	3.19	475
화학적거세제도	9.3% (44)	21.4% (101)	26.1% (123)	21% (99)	22.2% (105)	3.25	472

(17)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에 동의하는 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4.7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해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명령(4.71)’,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4.68)’, ‘예비부부 및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4.66)’, ‘성폭력 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4.65)’,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 강화(4.56)’,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자유형 부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4.46)’, ‘성폭력 관련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제도 개선(4.4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응급키트 파일링제도 도입(4.29)’,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기관 분리 운영(3.94)’ 순으로 나타났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평균	사례 수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자유형 부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	1.1% (5)	2.9% (14)	6.7% (32)	27.8% (132)	61.5% (292)	4.46	475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0% (0)	0.4% (2)	4.2% (20)	15.9% (76)	79.5% (379)	4.74	477
예비부부 및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0% (0)	0.8% (4)	5.3% (25)	21.2% (101)	72.7% (346)	4.66	476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 강화	0% (0)	2.1% (10)	7.6% (36)	22.1% (105)	68.2% (324)	4.56	47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응급키트 파일링제도 도입	0.4% (2)	1.1% (5)	15.4% (73)	34.9% (165)	48.2% (228)	4.29	473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기관 분리 운영	4.6% (22)	6.9% (33)	18.3% (87)	30% (143)	40.1% (191)	3.94	476
성폭력 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0.2% (1)	0.2% (1)	5.2% (25)	22.9% (109)	71.5% (341)	4.65	477
성폭력 관련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제도 개선	0.6% (3)	2.7% (13)	9.9% (47)	26.1% (124)	60.7% (289)	4.43	476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0% (0)	1% (5)	5% (24)	19.1% (91)	74.8% (357)	4.68	477
가해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명령	0% (0)	0.6% (3)	3.6% (17)	20.1% (96)	75.7% (361)	4.71	477

3. 면접조사 결과분석⁶⁴⁾

1) 가해청소년대상 면접조사

사례1~4는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내용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 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②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 ③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64)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면접대상자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⑥ 그 밖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사례1의 경우는 성폭력 가해청소년 4명 중에서 유일한 여성 가해자이다. 우연하게 처음 만난 또래 여성청소년과 동네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후배들 4명을 불러내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남성 후배 3명이 처음 만난 여성청소년을 윤간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1이 처음 만난 여성청소년에 관해 남성 후배들에게 ‘개걸레’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남성 후배들은 강간을 해도 괜찮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례1이 방조범이 될지 교사범이 될지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사례1의 욕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괴로운 점은 이번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한 일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자퇴를 하면서 친구들에게는 외국으로 유학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친구도 전혀 못 만나고 학창시절의 추억도 없어서 슬프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고, 어머니로부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듣는 것도 괴롭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건이 있은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괴로워하다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로 홍보를 왔던 Wee센터가 생각나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자수를 했다. 상담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었고 자수를 함으로써 일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Wee센터 선생님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서 징계 받지 않고 자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 취득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술 마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10시 이후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외출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는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성에 관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나 성충동을 참아야 한다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원의 가로등을 밝게 하고 후미진 지역에 자주 순찰을 돌아야한다고 했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주민등록증 도용을 막아야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선후배 간에 주민등록증 거래를 통해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술도 사고 남녀가 같이 모텔에 놀러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면접대상자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특별한 도움 보다는 스스로 맡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성 후배들을 불러내면서 함께 있는 여자아이에 대해 “오늘 침 본 애인데 유명한 개걸레래. 그런데 이 개걸레가 걸레 티낸다. 난 여자끼리 마시자는데 개가 남자 불러달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자애들에게 강간을 부추긴 셈이 되었고 지금은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하라고 했는데,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례2의 경우는 사례1의 성폭력 사건에서 윤간을 저지른 3명 중의 1명인 남성청소년 가해자이다. 술을 먹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누나가 처음 본 여성에 대해 성경험이 많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강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2의 욕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을 알아보았는데, 구치소와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혀있게 된 것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또한 잡혀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님을 볼 수 없는 것도 괴롭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특별히 없고 구치소에 있을 때 국선변호인을 만났고, 구치소에서는 반성문 쓰기, 독서, 운동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한다. 현재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시켜줘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해주고 몰라서 잘못했던 것들이 잘못이라는 점을 알게 해줘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성교육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현재 자신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만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3의 가해청소년은 중학교를 3학년 봄에 중단하고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며 한식조리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다. 본인을 포함한 가해청소년 3인은 여학생1명과 술을 함께 먹으며 여학생이 취하기를 기다렸다. 본인은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학생이 술에서 깨서 강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학생이 깨지 않았으면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었다고 한다. 범행동기를 물어보니, 아직 여성과 자본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피해학생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공범과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한다. 피해학생이 술에서 깨서 본인도 당황해서 바로 사과했고 피해학생도 사과를 받아줘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친구에게 사건을 이야기했고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피해학생의 친구가 말을 해서 경찰이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알렸다고 한다.

범행이후 국가기관의 도움은 받아본 적이 없고 이는 형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는 형이 막 때면서 정신차리라고 하고 부모님도 가해청소년을 ‘안 버리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여자 친구도 있어서 정신 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여자 친구와는 뽀뽀밖에 못해봤는데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답답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집, 동네, 학교에 바라는 점이 없냐고 질문하니, 동네에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어 하였다. 소위, 문제가 학교라도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생과 나이 차이가 나서 고민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가는 수련회 같은 곳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대학 진학도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때부터 학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비롯하여 학원 등을 이야기해보았으나 공부를 할 자신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학교를 잘 다닐 자신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성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16살~17살되면 월 1회 정도 성관계나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피임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받았을 때 받은 성교육에 들어있었는데 콘돔을 직접 본적도 없고 써본적도 없다고 한다. 국가에서 성교육을 언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중3 정도에 학교에서 해주면 된다고 했다. 왜

중3이라고 생각하냐고, 더 빠르거나 느리면 어떠냐고 물으니, 더 빠르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더 느리면 이미 다 크고 인터넷에서 각자 알게 된다고 답하였다. 본인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성교육을 하면 좋겠냐고 하니 UCC, 어플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였다. 누가 나오면 꼭 볼 것 같냐고 하니 씨스타나 카라가 나오면 UCC, 어플 성교육을 볼 것이라고 한다. 내용으로는 피임과 성교육을 비롯하여 성정체성, '여성'에 대한 것들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한다. 성교육에 여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한다는 답변에서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할 수 있었다.

사례4의 가해청소년은 남성청소년 5명이 피해여성청소년 1명을 술을 먹여 성폭행한 사안에서 술을 같이 먹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형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먹이는데 동참했는데 여기와서 생각해보니까 성폭행할 것을 알면서 먹인 것이다. 술만 같이 먹어서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하다. 형들이 피해학생이 토하는 것을 치운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와서 집에 갔다고 한다. 작년 12월 일인데 분류심사원에 8월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재판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죄명이 성범죄라서 안 좋게 찍혀서 다니던 고등학교는 자퇴했다고 한다. 가족이외에 도움을 받은 기관은 없고 경찰과 검찰청, 법원을 거쳐서 분류심사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딱히 분류심사원에 도움을 받을 것은 없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생각안해봤던 것들도 생각해보고 계획도 생겼다고 한다. 가정법원에서 바로 분류심사원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8월 14일 오전 11시 재판이었는데 저녁 8시까지 지하 철창에 있었던 것이 큰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전화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지하 철창에서 짜장면 시켜워서 먹고 차타고 분류심사원으로 오는 중에 설명도 없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냥 수갑 채워서 이동했다고 한다. 분류심사원에 수갑 차고 버스타고 도착해서 집에 전화도 못했는데 16일날 엄마가 면회 왔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예방이 안되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한다. 가르쳐준다고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은 왜 그랬냐고 하니까 형이라서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본인이 받고 싶은 도움으로는 성폭력범죄경력을 비밀로 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재판이 끝나면 학교를 다시 다닐 생각인데, 다른 학교 복학해서 이일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2) 피해아동·청소년대상 면접조사

사례 5~10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것이다. 면접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 ②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이일게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 ③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⑥ 그 밖에 건의사항?

사례 5 피해자는 15세 학생으로 이는 또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학교에 소문이 나서 등교하기가 싫으며 학교에 가도 공부가 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같이 놀다가 발생한 일인데 자신만이 피해자가 된 것이 괴롭다고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지는 관심 중에 상담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귀찮고, 또 성폭력상담소에 가라고 하는 것도 귀찮다고 한다. 보호자는 학교에서 권유하는대로 위 기관들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한 정신과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도 많이 하고, 자꾸 정신감정을 해서 불쾌해하는 상황이다. 정작 본인은 주변의 과도한 관심과 개입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담을 해야 한다면 피해자가 그 시기를 정해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 때문인지 사례 5 피해자는 학교에서 Wee센터,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를 소개해주었지만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다만, '엄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병원비와 무료법률구조(변호사연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례5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병원비를 끝까지 지원해주고 고소했으니까 가해자가 많은 벌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가해자 변호사처럼 피해자인 자신을 변호해 주면 좋겠다고 한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주어야할 도움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이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 인해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입기 전처럼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 이후에 부모님이 귀가시간을 단속하고 용돈을 단속하고 핸드폰을 점검하고 옷차림을 점검하여 마치 죄수다루듯이 하고 있다고 피해자는 느끼고 있다.

학교에서는 Wee센터 상담명령을 거두었으면 했다.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담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이 소문을 내는 것을 막아야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건 이후 강당에서 교육을 하였다. 친구들이 너 때문이야하고 썩덕거렸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을 고소하고 싶지 않은데 학교에서 신고 먼저 했다고 한다.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불려서 이것저것 묻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신고를 할테니까 그냥 피해사실을 경찰가서 한번만 말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소하려면 반드시 부모가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기를 원했다. 산부인과를 드나들기가 불편하니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관련병원이 있으면 병원을 오가는데 심리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가가 가해자를 법대로 처벌하기를 원했다. 성폭력이 범죄라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신고하면 재판이 끝나는 과정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청소년범죄는 재판이 빨리 끝나야 학교에 소문도 덜 난다고 하였다.

사례 6 피해자는 만 10세 여학생으로 이는 성인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 이후 즉시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다. 피해 장소에 가지 말았어야하는데 갔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후회하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피해사실을 말한 후 아버지가 오빠에게 피해아동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혼냈기 때문에 오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것이 더럽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과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심리치료과정에서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좋은 생각으로 피해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쁜 아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에 큰 점이 있게 하든지 기계(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 나는 장치)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가해자를 세게 처벌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고, 좋은 생각으로 나쁜 기억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나쁜 아저씨(가해자)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사례7 피해자는 만12세 여학생으로 19세 미만의 가족(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 이후 계속 그 일이 떠올라 괴롭고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괴롭다고 한다. 학교의 Wee클래스 선생님께서 처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Wee클래스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연계해주었다고 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기억이 많이 나서 힘들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줄어들고 편해졌다고 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야동을 마음대로 못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야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성폭행 하는 사람들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자신과 같은 피해아동에게는 성폭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안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잘 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사례8 피해아동은 만12세의 학생으로 모르는 성인에게 피해를 당하였다. 친구들이 알고 놀릴까봐 두려워서 학교에 가기 싫고 무섭고 혼자 있기 싫다고 한다.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것이 자신의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가해아저씨가 너무 밉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 이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윈스톱지원센터에 데려다줬다고 한다. 윈스톱지원센터에서 여경,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아픈 곳을 치료해줬다고 한다. 도움을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꾸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엄마가 자꾸 울어서 엄마를 볼 수 없으니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 피해아동은 더 이상 성폭력이 생기지 않게, 다른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무서운 아저씨들을 다 없애달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놀 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라고 하였다.

사례 9 피해청소년은 만17세의 여학생으로 성인가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 가해자가 형량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보복을 하러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며 악몽이 괴롭다고 한다. Wee클래스 학교선생님,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윈스톱지원센터, 징검다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늦은 시간 위험상황에 대비한 호신술 교육이나 호신용품 지원을 요구하였고 핸드폰 통신비, 신발, 자격증 학원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개인적인 욕구도 피력하였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를 해주기를 바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리있는 답변을 하였다.

“이런 성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도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드문 곳에 사는 피해 여성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으니 경찰이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고 혼자사는 여성 및 남성 가족 사이의 여성을 찾아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특히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SOS어플이나 호신용품, 호신술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한명한명 상담을 실시해 성폭력 사실을 겉으로 꺼내기 무서워하는 학생들을 나서서 보살펴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특히 소외된 이웃(재차강조)을 찾아가고, 국가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시설의 확충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10의 피해청소년은 만17세의 여학생으로 성인인 면식범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가족과 헤어져서 괴롭다고 한다. 작은 엄마가 알아서 도움을 주고 징검다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여 필통 약간 큰 것이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에서 성폭력이 안 일어나게 항상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도와주고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3)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대상 면접조사

사례 11~14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것이다. 면접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②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 ③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면접대상자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⑥ 그 밖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사례11은 만41세 대졸이상 학력의 가정주부의 답변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한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여성경찰관에게 조서를 받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아이가 진술을 할 때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힘든 과정을, 아이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접근하여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피해이동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지만,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치료도 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를 데리고 다른 기관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화가 났다고 한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아픔을 같이하고 진심으로 대해 주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숨어서 혼자 영상물을 보며 배우는 왜곡된 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성을 유아기 때부터 차근차근 생활의 일부분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때 성에 대한 혼란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숨겨야 하는 성이 아니고, 부모나 선생님과도 스스럼없이 대화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힘없고 저항 할 수는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또한, 성교육만큼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의 출발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어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를 못한거 같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이동·청소년이 치유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 나머지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과거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우리 아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례12는 만 46세 초졸이하 학력의 가정주부의 답변이다. 가정경제의 수준은 ‘하라고 답하였다. 2012년 5월 성폭력 피해를 당한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피해아동·청소년은 무서워하고 가해자가 엄마에게 이 사건을 말하면 혼내겠다고 협박한 것 때문에 아직 악몽을 꾸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다고 한다. 경찰서 형사의 안내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와 사건 진행에 관한 가이드를 해주었다고 한다. 이후 변호사와도 연계해주어 필요할 때 적절히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셋인데 지금 현재 가스, 전기, 전화 모두 끊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안내를 해주셔서 생계비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기간을 기다려야 해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자녀가 피해를 당하고 나니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건은 은폐되고 있었고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한다고 한다.⁶⁵⁾ 나주 사건의 가해자와 나영이 가해자도 사형을 시키고, 비록 성추행이어도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공판이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례 13은 만 39세 대졸이상의 학력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의 답변이다. 가정경제의 수준은 중이라고 답하였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출하는 것(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치료를 하거나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노출해야하는데, 아무래도 여자아이이다 보니까 소문이 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이한테는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바로 상담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도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센터에 오기는 했는데 아직 아이는 자신이 왜왔는지 모른다고 한다. 아이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니까 치료라는

65) “제가 알게된 사건은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 몸에 흙이 묻었다며 할아버지가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이 여러 명이었는데 한 아이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또 다른 아이 부모는 집안 망신이라며 경찰서 신고조차 싫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숨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도 피해자 치료도 받으려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보다는 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치료라는 말을 듣고 다시 상처를 입을 까봐 걱정이라고 한다. 해바라기 센터 같은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특별활동시간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전문가선생님 등이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강당에서의 대규모 교육 말고 소규모로 자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다. 학교 방법도 강화하고 학교 주변 CCTV를 더 많이 확대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주변이나 이런데도 그렇고. 학교나 학원 주변에 더 자주 순찰을 돌아서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이 피해를 당학 나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센터가 기관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여기저기 찾다가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센터에서 치료하는 아이들이 많아져도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 외국은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최소 50년 이라던지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지르더라도 절대 못나오게 해야된다. 애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무슨 이유로 감형시켜주고, 벌금이나 공탁 걸어서 집행유예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속이 터진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는데, 그런 실수는 한 번이라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처벌이 너무 약하니 재범률이 높은 거 아닌가? 사형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데 인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인권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인권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TV에서도 가해자들은 마스크로 가리고 그렇게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집도 다 나오고 이게 무슨 인권보호냐? 언론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다 노출시키면서...”

사례 14는 만44세의 고졸학력자로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의 답변분석이다. 가정 경제의 수준은 하에 해당하며 직장은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아이의 언행에 민감해 지고 아이의 일과를 수시로 살펴지게 되는 점이 괴롭다고 한다. 귀가시간이 늦어지거나,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친구와 주말에 자주 어울리거나 하면 긴장이 되고 혹시 어른이 되어 사는 것이 박복하지 않을까 악몽을 꾸다고 한다. 실제 아이의 일상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한다. 만나는 친구가 많아졌고, 어울리는 친구가 수시로 바뀌고, 등교는 하지만 교실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화장을 하고 사복에 관심이 많은 등

고민이 된다고 한다. 자녀의 성폭력 피해이후 학교 상담사를 통하여 원스톱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연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정신과, 성폭력상담소 연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 상담사는 교내에서 자녀 상담을 하는데 학년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2회 정기적으로 상담한다고 한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했고 부정기적으로 (대략 1년에 2번 정도) 아이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온다고 한다. 학교에서 신고하여 원스톱지원센터로 갔는데, 피해사실 증거부족으로 고소가 어렵다고 하면서 성폭력상담소로 연계해주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정신과의료비와 개인상담을 지원해주었다고 한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상담사가 아이를 관찰하고 보호하지만 학교이후에 아이가 걱정스럽다고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집에서 멀고, 교통수단도 없어 접근이 어렵지만 정신보건센터는 집과 가까운 데... 상담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고 한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한다. 아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성폭력 상담소로 가는데, 가끔씩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다고 한다. 일하는 엄마로서 상담 때마다 아이와 동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문상담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지금 중 3인데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해행동을 하여 약 한달간 입원치료 하였던 적이 있다고 한다. 입원하면 자주 의사를 만나 상담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한달동안 먹고 자는 것 외에 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정신과병원에서는 왜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해당 가정의 경우,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가 아빠와 오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여 아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빠가 알면 다른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불화가 생기고, 모녀에게 화살이 돌아 올 것 같아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가보면 엄마들이 대부분인데, (아빠들이 직장에서 나오기 어렵겠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해선 아빠들이 학교폭력, 성폭력피해, 가해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했다. 학교의 경우, 피해학생의 비밀보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면, 아이들사이에 순식간에 카톡이나 채팅으로 소문이 돌게 되고, 학교에도 알게 되니, 이때 교사들이 소문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랬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피해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절차나 조치를 취해서 아이들의 문제라고 해서 대충 봐주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해서 가보면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기관마다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여 여러 곳을 가야 되었다고 했다. 기관들이 왜 연계만 하고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원하는 기관도 상담이

밀려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아닌 상담소는 3개월, 10회, 20회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다음 학년이나 학교 등 진학할 때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경우, 가해자들은 법에 기준에 의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했다.

4) 소결

(1)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1차기관 설정과 홍보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1차적인 연계기관으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 무조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1차 연계기관이 되어야 하겠다. 원스톱지원센터나 학교에서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곳들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진술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의사의 진단키트는 수사의 증거로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센터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심리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조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사례 13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바로 연계가 되지 못하고 다른 곳을 거쳐서 온 경우이다. 사례 5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신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을 주장하면 바로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연계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후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여 증거능력있는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례8에서도 경찰서에서 바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아닌, 원스톱지원센터로 연계하였지만 결국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연계되었다. 사례11에서도 진술도하고 친근감이 들었던 초기 대응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옮기는 것이 거부감이 들과 화가 났다고 한다. 결국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연계될 것이므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있는 지역은 초기대응을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해야 하겠다.

(2) 성인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인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자의 답변이 있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광고형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직장인의 경우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남성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서 성인지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문화센터에 성인 대상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에서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비밀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에의 욕구만큼이나 가해청소년의 비밀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학교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후 신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바로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로 신고해야할 것이다. 학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비밀유지도 원하고 있었다.

(4) 성추행사건에 대한 형량의 강화

성추행사건도 형량이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집행유예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형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사형을 원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법조문상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형에 있어서 형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성추행사건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5) 피해가정의 경제적 지원

좀 더 큰 필통이나 신발을 가지고 싶다는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한 욕구가 발견되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가장은 피해아동의 불안에 의해 경제적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의 시스템 이외의 다양한 사회복지지원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6)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소규모의 성교육이 평상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평상시에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다가 피해아동·청소년이 생긴 이후에 강당에서 대규모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아동·청소년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위해서 UCC, 어플을 청소년의 감각에 맞게 3~6개월 단위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피임교육, 성인지교육 등이 필요하며 연령은 16세 전후가 적당하다는 가해청소년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가해청소년은 '여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진술을 한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도 성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포르노를 통해서 상대방 성에 대한 인식을 학습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

피·가해 아동·청소년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시스템에 적응해서 이용해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방문 상담이나, 경제적 지원의 신속성 확보 등은 당면과제이다. 사안별로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욕성에 알맞은 대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 사례조사 결과분석⁶⁶⁾⁶⁷⁾

1) 강원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1) 운영배경 및 연혁

강원도는 2010년 3월부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연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제반사업 개발을 그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원래 시군 단위의 기초 연대 내에 실질적인 사례관리팀이 운영되어야 하나, 강원도의 경우 관내 모든 시군에 쉼터, 학교, 상담소 시설 등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시군을 합해 종합적인 사례관리 형태로 실무협의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12년 5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 없으면, 온라인을 통해 매월 22일 화상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66) 선정된 지역연대는 지역별로 대표적인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67)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윤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강원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자로 운영위원 신규위촉이 있었고, 신규위원을 포함하여 7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가정폭력·성매매 상담 사례 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및 강원해바라기 아동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아름다운 집, 춘천 길잡이의 집, 강원도청소년쉼터,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의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강원도의 경우 도 단위에서 협력이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여성·청소년을 아우르는 도 단위 기관들이 거의 춘천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안의 연결망 구축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연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시군으로 가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도 단위기관에서 잘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표 사업 소개

강원도 지역연대의 대표사업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지역연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자체 전반의 환경개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지역연대와의 별개로 예방업무들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한 예로 강원도청 청소년과에서는 유해업소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연대와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강원도 지역연대의 사업은 “안전지도제작”을 들 수 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은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각각의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한 부분은 어디인지 어린이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아동들이 위험지역 지도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제작 과정경험을 통해 아동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취약지역 개선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 토대로 사용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연대 사업의 자료로도 적극 활용된다. 2011년의 경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안전지도 제작이 완료되었고, 올해에는 보완과 사후관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많은 공을 들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이 아직까지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일대 환경과 지역개발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적으로 위험지역 확인을 새로 업데이트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상가 사람들이나 아동의 부모들도 위험지도의 결과물을 바로 받아보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전지도 활용이 결과물 업데이트나 공개 활용 측면에서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강원도 내 전체 353개 초등학교에 학교 당 한 개 팀만 구성이 되었는데 아동의 실질적인 지도제작 참여 비율도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안전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정으로 아이를 통해 부모님께 직접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지도를 공개함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들이 그 안전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악용할까봐 그 공개를 고민한다는데, 제작된 지도의 공개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강원도 지역연대 회의 시 일반 상담소나 관련 지원센터들의 참여율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예방을 본 업무로 담당하는 경찰, 법원 등의 국가기관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 및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지역연대 업무에 전제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범죄예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 관련 국가기관 참여 독려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경우 보호시설, 상담소등 시설의 장인 위원들의 참여율은 높지만, 관공서 소속의 위원분들의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법원·경찰청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직급 상황문제도 기본적으로 직급을 높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실무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회와 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심층면담 결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하는 기관 별 참석자가 주로 실무자보다는 기관장이나 관리자인 경우가 많아, 실제 회의 결과가 실무 일선에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이후의 내용들이 각 기관 담당자에게까지 적극 반영되어 실질적인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행동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관장 및 관리자 중심 회의는 다소 그 속도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와 사례관리팀이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연대 회의 자체가 보다 현실감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의 관내 형사사법기관 관련자도 지역연대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지역연대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참석자들이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나 CYS-Net 사업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강원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다행히 기존 유사 회의들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어느 정도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의 업무 성격이 다른 사업 회의들과 지원대상이나 운영성격 면에서 명확히 구분되고, 구성원들이 중복참여에 대한 불만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대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전에 있던 아동과 여성에 대한 다른 모임들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흡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는 아동·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지역연대와는 중복되는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신규위원 위촉 시 운영회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의 중복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실무협의체 참가 범위가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사업 운영 구성 면에서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 청소년 쪽이 들어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청소년은 이전에 부처가 달라서 안 들어가 있다가 이후 여성가족부로 들어가면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실무협의체에도 청소년 쪽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완전히 밀착된 느낌이 안 들어요. 앞으로 긴급구조 등의 측면에서도 청소년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는 아동 대상 범죄예방 인력을 모아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으로 가면 결국 다 그분들이 그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는 이미 모임이 많구요. 그 모임들에 영향력 있는 기관을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미 있는 모임에 역할을 쥐서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게 하면 사람들도 모임 것이고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영향력도 커질 것입니다. 이미 있는 모임들을 지역연대의 관리 범위 안에 넣어서 활용해야겠죠.”

라.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지역연대의 중요한 목적은 유관단체들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긴급히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회의소집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날짜를 미리 공지했음에도 운영위원회 참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비공식적 회의 참석을 관련 단체들에게 설득하고 독려, 강제할 것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어렵게 긴급회의가 이루어져도 통합관리를 주도해야 할 지역연대의 권한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운영위원회 한다고 날짜 공지를 미리 했음에도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회의 소집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안이 몇 개 부처의 업무에 관련이 될 경우가 있는데 통합관리가 어렵고 부처별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통합관리를 위해 총괄하는 부처나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은 행안부이고 그 CCTV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는 경찰청일 경우 두 부처 간의 협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설치된 시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상담센터는 18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 있고 이미 2006년부터 지역에 연계망을 구축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긴급 구조하여 지역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를 지역연대 속에 완전히 밀착시키면 아동·여성문제에도 지역 센터를 활용하는 등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저런 회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관련이나... 그런데 자꾸 만들어서 잘 활용을 못하면 가서 회의만 하다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지역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아동·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정 지역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자체가 적어 지역연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 피해아동이 직접 피해지원 서비스 기관과 접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지역 연대를 통해 피해 고위험 아동의 반복피해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 개입,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지원 문제를 지역연대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개입할 방안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상태이기도 하고 현안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 내 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역 내의 상담소나 성폭력 관련 시설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로 성폭력 관련 시설에서는 치료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쉼터들은 쉼터대로 범죄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기본적으로 2012년부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의 평가방식이 보다 정교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가 세부항목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너무 세세하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어 내실 있는 기본관계 형성 및 지역연대 인프라 구축을 만드는 데는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들이 평가지표 결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기본적인 지역공동체 회복 자체를 평가하는 보다 단순화 방식의 가점 평가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

“평가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는데, 평가항목 충족을 위해 세세하게 해야 할게 많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지표 충족에만 신경을 써 평가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위해서라도 하계끔 만드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항목을 충족시킴으로써 인프라구성을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이지만 평가에 초점을 맞춰 역으로 구색을 맞추는 형식이 되면 안 되겠죠.”

사.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지역연대에서 다뤄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시, 군 내 읍면동 마을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떤 사업을 지역연대 중심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의 사업 활용 및 전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범죄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논의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그 사업들이 지역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의 지역연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들을 해서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또 아동·여성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개발이 중요하겠죠.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발굴하고 그 내용을 시·군 그리고 마을 까지 전파하는 네트워크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접근법 같은 범죄예방이론이 지역연대 사업에서 적극 활용되어, 지역사회 재건축 및 개발사업 등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성공한 지역연대 사업을 유사한 형태로 다시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 그 사업을 활용하는 자세를 갖게 해야 하며, 무조건 새로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업만을 우수한 사례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응들이 개발 되고 사례중심연구를 통한 롤 모델이 개발 돼서 시범적용을 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롤모델 개발은 지역의 특성 (주택 종류, 주택과 주택사이 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또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 지역 특성별로 표본을 마련하여 시범적용 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례중심연구를 통해 롤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은 중앙에서 맡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업무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정보공유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 읍면동 마을단위의 지역연대 확대실시 필요성 문제

이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위원회가 읍면동 단위로 작아질 필요가 있다. 면접 결과, 강원도청 지역연대에서는 범죄예방 사업이 마을 단위까지 확대되어 그 사업 효과성이 보다 극대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연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확대되어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까지 확대된 지역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적용될 표준 모델 등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해보는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직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특히 이슈가 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조기발견, 신고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읍면동에 자꾸 그런 것을 일깨워줘서 혹시 주변에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가 없는지 맞거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남의 가정사라고 치부해버리지 않도록 인식개선도 필요하겠고요.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 더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지역연대 관련 연간 운영경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연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동참할 수 없었다. 유관기관들의 실질적인 협조가 지역연대의 성공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실제 범죄예방 사업이나 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활동 범위와 영역은 위축되고, 범죄예방 효과는 지역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강원도에는 총 35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안전지도 제작 사업의 경우 예산에 맞추다 보니 한 학교에 한 개 팀 정도만 구성해서 제작했습니다.”

차. 남성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강원도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체가 지역연대를 통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남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성폭력 피해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 피해지원 및 개입 서비스조차도 개별 피해자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연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반복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사후지원 서비스가 지역연대를 통해 보다 일반화·전문화될 수 있다면, 그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남성 피해아동에 적합한 개별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도 신속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남성아동·청소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아직 남성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계획은 없고, 아동·청소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들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상태이기도 하고, 지역연대 차원의 현안이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지역 내의 상담소나 성폭력 관련 시설 등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순천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1) 운영배경 및 연혁

순천시는 2009년 3월 아동·여성폭력관련 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를 구성하고, 조례를 통해 성폭력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민-관이 연계방식의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여성 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최고 목표로 순천시는 2011년에는 43개 모든 초등학교의 안전지도를 제작하였고, 모범사례 기관으로 평가받아 기초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2년 8월 현재 순천시 지역연대에서는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 홍보 판넬 제작,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자원 봉사단체 등의 지원,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안전지도제작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관련기관, 의료교육기관, 사법·경찰당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 외에도 아동·여성 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사례 팀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 1회씩, 총 연 4회로 개최되고 있다.

“순천시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순천여성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다솜공동체,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살로메나눔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순천교육지원청, 현대여성아동병원, 순천의료원이, 순천경찰서, 순천 보호관찰소, 관계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민-관 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대표 사업 소개

순천시에서는 아동안전지도제작, 성폭력 교육 및 홍보, 아동·여성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어린이 안전지킴이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소개하자면, 아동안전지도제작을 꼽을 수 있다. 순천교육지원청의 협조아래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이 직접 학교주변 500m 내외를 조사하고 안전 및 위험요인을 표시하며 안전지도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

안전지도제작은 먼저 대상지역 선정 및 현장요원교육 등이 이뤄지는 (1) 예비조사 단계, (2) 범죄예방 및 안전 교육과 (3) 안전지도 제작교육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사전교육단계, 그룹편성 및 이동안전 교육과 참여자 역할 분담 등이 이뤄지는 그룹편성단계, 현장조사단계, 조사 자료를 기초로 그룹별 제작이 진행되는 지도제작 단계, 조별발표단계, 지도완성단계 및 제작과정 참여자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하는 결과보고단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동안전지도 제작은 아동들에게 통학로 주변에서 범죄 위험 장소를 판별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요령을 이해하게 하여 통학 시 위험장소를 피하거나 범죄에 미리 대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도제작과정에서 파악된 학교주변의 위험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지도제작 과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성취감 등이 형성되어 비행이나 학교폭력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높일 수 있다는 교육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실제 순천시청의 경우,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 이후, 일반 주민들의 CCTV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 사항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이 참여하여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나서 CCTV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효과가 느껴집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CCTV설치의 위치 선정이나 경찰 순찰강화 경로선정 등에 반영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안전지도제작 할 때 모니터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녀회·자모회 등과도 함께 모니터링을 하여 정보를 모아 지도제작에 반영했습니다.”

순천시청의 경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과의 연계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길 순찰 및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캠페인 등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 등하교 도우미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25개소/96명, 녹색어머니 43개소/894명, 배움터지킴이 20개소/20명 등 관련기관이 활동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도로 및 골목 등에서 등하교길 안전지도와 취약지역 순찰 및 비행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2회 원도심(순천고속버스터미널) 및 신도심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캠페인, 연말연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순회 방문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전문 강사 분들께서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서 협력해주시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순천시의 안전지도 제작 활용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치안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건의사항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제작 이후 CCTV 증설 등의 주민 요구가 늘어나도, 현실적으로 관내 모든 곳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어 안전지도 제작 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범죄예방 아이디어 및 시민참여 활동이 계속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학교나 집이나 놀이터 같이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CCTV가 잘 없어요. 사실 24시간 365일을 지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부모나 자신이 지킬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부모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것을 터득하고, 성폭력을 당했으면 이걸 폭력이고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갖게 해야 돼요. 터놓고 상담을 받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순천시의 경우 지역연대 회의에 관공서 대표로 경찰서와 보호관찰소는 참석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참여도 지역연대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민-관 파트너십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형사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신체 치료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의료진 참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협력 기관 외에도 향후 사법기관 중 검찰청이나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담당자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 현재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상담과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논의할 정신과 전문의 등이 더 추가되길 바랍니다.”

한편,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비교적 만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만약 과도하게 지역연대 운영회의가 실무자 중심으로 직급하향이 이루어지면, 지역연대 회의 이후 결국 담당자들이 각 기관에 돌아가 관리자나 기관장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즉, 관리자가 지역연대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큰 그림 차원에서 동의하면, 그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이 따로 접촉하면 되는 것이기에 현재 관리자 및 기관장 중심의 회의 방식이 타당하고 설명하였다.

“운영위원 참석자 직급을 높인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큰 틀을 짜기 위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석해 논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일단 큰 틀을 짜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줄 회의가 필요하고 그게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로 관리자나 기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각 기관에 돌아가 협력을 위해 지시를 내려야 일이 수월하게 성사됩니다. 큰 테두리에서 지시를 해야 일이 진행되는데 실무자와 관리자는 발언의 영향력도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와 기관장이 협의를 하고 각 기관에 돌아가 세부사항 지시를 해야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국, 각 지역 별로 회의에 참석한 개별 대표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 그 지역연대 사업성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회의 참가자 직급의 문제가 지역연대 성과를 바로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하겠다.

다.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순천시의 경우 지금까지 여기 저기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지역연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이 특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의 중복 보다는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센터 등 각기 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지역연대가 없어 모이지 않으면 서로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 지원되고, 재원들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서로 연계해서 공동 작업하는 것이 지역연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는 아동과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위기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가 발생 했을 때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협력하는 모임입니다.”

또한, 다른 유사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중복적으로 계속 특별한 안건 없이 지역연대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더 쉽게 인적, 물적 교류를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는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부탁하는 거 하고 잘 알고 친한 상태에서 부탁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돕기가 쉬워지고 교류를 하다보면 정보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도 더 잘 알게 되죠.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일단은 연대가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모이게 된 것도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순천시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 2회 모이고 사례 팀 회의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소집 횟수 자체보다도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이 필요한 급박한 사건의 경우 관련 기관들이 신속히 모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연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종합 서비스가 신속히 연결되어야 진정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순천시의 경우 비교적 피해자 관련 상담소가 그 역할을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각 개별 기관들이 비상시에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탄력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기관들이 자신의 고유 업무 영역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행동해야 할 때,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여기에서도 지역연대의 통합적 관리와 리더십이 보다 권한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각 기관의 업무가 많다 보니 자기 기관의 업무가 아니면 소홀해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성상 시청에서 아무리 잘해도 지역연대는 관련기관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예방 관련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내용이 아닐지라도 연대해서 최상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들의 역할이 연대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가 연2회 개최되지만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시급하게 연대를 통한 해결이 필요할 시 사례를 상정하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피해자 사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유관기관들의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신과 전문의가 추가로 연대에 합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용이나 사법시스템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지역연대를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 교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전문적인 상담 뿐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치료의 병행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관 중 정신과 전문의가 추가로 구성되었으면 하고 사법기관 중 법원 등도 추가로 구성되어 범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들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바.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지역연대 평가 항목 자체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공 결과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펴 중점화된 사업 위주 등으로 사업 항목을 단순화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연대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별 지역의 여건은 반영되지 않은 채 너무 세분화된 평가 항목에 모든 상황을 맞추다 보니, 그 평가 적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평성 차원의 기본 평가 항목은 필요하나, 그 수를 보다 단순화시키고 각 지역의 개별상황이 하나의 기본 평가 기준점으로 계산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연대를 운영하는 이상 각 지자체별로 기본은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평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이 너무 많아요.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복잡하기도 하구요. 차라리 평가항목을 시군별로 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여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각 지역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항목들을 맞추려면 너무 힘듭니다.”

사.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순천시 지역연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사업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이 최종 평가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고, 자체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지역연대 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아래 심층 면접의 사례 내용과 같이 특정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예방 사업(배움터지킴이 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이 인적 구성원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인력 구성을 바꾸어 나가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배움터지킴이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 퇴직한 선생님들이 맡게 되는데, 남자어른이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게 느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측면에서는 손자 손녀처럼 예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얼굴도 굳어 있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엔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지킴이 활동에 마인드를 가진 여성분들이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

이 들어요. 기관에서 성폭력이나 아동보호에 관한 교육을 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정년퇴직한 여성 교사나 여성 공무원 등이 지킴이 활동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순천시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 단위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예. 보건 진료소) 등을 이용하여 지역연대 예방 사업이 쉽게 읍면동 단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비용-편익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동시에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읍면동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연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외에도 마을단위로 더 침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등의 문제도 있어 기관을 새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미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을의 보건지소를 다기능화 하는 겁니다. 마을마다 진료소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새로운 역할을 쥐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진료소 같은 경우 현재는 진료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소들을 면단위와 마을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해서 마을 단위 지역연대의 중심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소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군구 네트워크에 면-주민자치센터-진료소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짜고 거기에 관련기관까지 포함시켜 촘촘하고 체계적인 구축 망을 마련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기관단체들을 취합하고 빈 부분들을 찾아내서 메우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지역연대 사업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유관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역연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이 읍면동 마을 단위로까지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 마련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일이다.

“지역연대의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물론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읍면동까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까지 지역연대가 구성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마을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것이고, 이웃들 간에도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분 짓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동지킴이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면 연대감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기여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관련 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면이 먼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위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회의장소 하나 빌리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 양해나 부탁만으로는 기관들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련 사례연구 등을 통해 틀을 잡아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연대는 이름처럼 지역이 기반이 되는데 지역은 각각 여건이나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도시형 성범죄와 시골형 성범죄는 그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형·시골형은 어떤 식으로... 또 가족이 많은 지역은 어떤 다른 식의 운영방식으로... 다 다르게 운영방식을 만들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 현실감 있는 정책제언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업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들에게 도움만 요청해서는 결코 지역연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로 바쁘기만한 관련 단체들의 외면만 얻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지역연대 운영 재정지원 및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차. 남아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 미비 문제

순천시 지역연대는 소수 피해자에 속하는 남아 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진행 중인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아 아동과 여 남아 아동을 동일한 성폭력 피해자로 간주하여, 만약 남아 아동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일반 여 남아 피해자와 동일한 맥락에서 개입, 처우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남아 아동·청소년 피해 메커니즘과 남아 아동·청소년 피해과정이 발생원인, 절차, 사후 증상 차원에서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성별-적합(gender-specific) 치료 차원의 개별화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3) 경상남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1) 운영배경 및 연혁

경상남도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아동여성 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연대와 달리 다소 독특한 방식의 민-관 협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연대 위원장도 총 2명으로 관에서 1명, 민간에서 1명을 뽑아서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7월 24일 결성되어 36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아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업무를 하고 있다. 오히려 여가부에서 규정한 지역연대 참여 수보다 실질적인 인권연대 참여 수가 많아 비교적 적극적으로 기관 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다. 경상남도 지역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아동여성 인권연대”라고 명칭을 바꾼 것도 이러한 특성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대표 사업 소개

경남 아동여성 인권연대의 핵심 사업으로는 “친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사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 삼촌 등과 한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대차원의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시작된 사업이다. 남성 가족과 한 이불을 덮고 자거나 한 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먼저 지역연대 차원에서 “방 두 칸 집 얻어주기 사업”을 시도했다. 보일러 가동비 문제로 다시 한방에서 생활하는 집이 생기자, 여성 아동·청소년을 아버지 및 성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친족과 분리 양육할 수 있는 거주공간인 “해피하우스”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내년에는 경상남도 예산으로 ‘성폭력 우려 여성 주거지원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회사 stx의 지원금인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LH주거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 마련 사업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쉼터자리에 그동안 10명이 거쳐 갔고 현재에는 4명(초5, 중2,3, 20대 대학생)의 청소년이 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연대에서는 문제청소년은 일반 가정처럼 가정교육을 하면 힘들어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 이에 해피하우스는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을 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건전한 발육과 양육을 위해 피해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운영하고 있다.

Case1. (할머니-언니-동생) “한 가정에 이혼남 삼촌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성폭행으로 피해 쉼터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삼촌은 재판중이지만 할머니 집에 같이 계속 살기 때문에 동생은 해피하우스에 거주하기를 원하여 이를 도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Case2. (아버지-언니-동생) “의붓아버지가 다방에 자녀를 팔려고 하고, 성적인 시선으로 딸아이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동생이 해피하우스에 거주하기를 요청하여 이를 지역연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본 연구에서 특이하게도 경남지역의 경우, 지역연대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인권연대”

주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인권연대의 시작이 경남지역에서 “여성폭력 방지 협의회”였던 것으로 나타나 주로 아동보다는 여성에게 한정된 성폭력 예방 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담당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관련 사업을 주로 인권연대가 맡고 있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안전지도 제작 사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단 모체가 여성폭력 방지 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사업만 합니다. 아동은 해바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아동은 만18세 미만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3세까지 정도입니다.”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경남 지역연대는 도청이나 국가기관 중심의 운영회의가 아니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간 대표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의 참석자 범위나 직급의 문제보다는 직접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회의 담당자들이 어떤 안전을 가지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회의 참석자 직급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장은 ‘관과 민간’ 한 명씩 두 명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장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사업주체인 진해가정상담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은 보조적으로 지원만 잘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다.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경남 여성인권연대는 기존 사업들과 연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인권연대가 관 주도 방식에서 기존 유관단체를 가운데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직접 개별 서비스를 제공했던 관련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지역의 관 주도 지역연대가 1차 예방에 주력한다면,

경남 지역연대는 1차 예방 이외 2차나 3차 예방에 더욱 주력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3차 예방의 경우 이미 아동·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방 전략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하겠다.

“기존 사회복지협의체 CYS-NET 업무와 우리 연대와의 일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CYS에서 일선사례를 발굴하면 지역연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지역연대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연대는 사례를 해결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상태이고 CYS나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라.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1차 예방보다는 2차, 3차 예방 중심으로 지역연대를 운영하다 보니, 경남지역의 회의 소집 방식은 다른 지역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서비스 제공과 연관이 없는 기관 대표는 아예 회의에 나올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자만 회의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기별 1-2회씩의 공식화된 사전 회의도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반드시 개최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관리팀을 만들어서 정례화 하니 오히려 사업이 잘 안된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나올 필요도 없고 해서 우리는 사례가 생기면 관련자들만 참석합니다. 즉, 사례 별로 대책위원회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진과 유관기관이 모이는데, 통영 건을 예로 들면 경상남도 상담소 시설협의회 임원진 모임이 주축이 되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경남에서는 지역연대를 실제 피해지원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부족 문제는 따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국가 형사사법기관들과의 연계가 부족해 질 우려가 있어 “통합·연대 기구”로서의 역할이행 및 권한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지역연대

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기관의 고유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지역연대가 국가 법집행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도에서는 지역연대를 사업을 직접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는 경찰청 안전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연대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연대 사업 실적으로 그것을 평가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바.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독특한 2차, 3차 예방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지역연대의 경우, 중앙의 평가방식과도 가장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평가 항목 구성에 있어 경남 지역연대 운영방식과 맞지 않는 1차 예방 중심의 사업 항목이나 관 주도의 통합 시스템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평가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자술에 맡긴다면 새로운 평가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회구성원으로 기관장을 넣어놓은 지역은 솔직히 잘 운영도 안 되고 실무능력도 없으면서 그 지역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연대 사업에 평가항목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실적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도 이미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획일화된 기준을 또 다시 만들어서 괴롭히면 절대 안 됩니다. 경남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이 36개나 존재합니다.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듯이 25개 내외로 줄인다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다 잘라야 할 판입니다.”

사.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경남지역에서는 사업 개발, 활용의 문제는 주로 기금 확충과 큰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민간사업 실시 및 서비스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 확충이 사업 개발, 전달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관 주도 방식이 아니라 민 주도 방식의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중앙의 업무분장 시스템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연대의 사업이 보다 성공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어서 사업비가 계속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국비 70에 지자체비 30이 좋겠네요. 마을 지킴이는 경찰이 잘 할 것이니 경찰이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은 행안부일이라고 봅니다. 업무분장을 특성별로 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사업 특색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주도지원이 아니라 민주도 관지원으로 지역연대 사업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읍면도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의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 이웃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확보되어야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사업을 읍면동으로 나누어 놓아도, 정작 예방사업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문제는 사업 지역 단위가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마련이라고 봅니다. 실제 매독 3기 하반기 마비가 온 27세 여성이 있었는데, 아동·청소년기 때 티켓다방 성매매를 하였고 현재 갈 곳이 없어 병원을 전전공공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시설에 넣자니 몸이 너무 아픈 상황이고, 전문 치료를 하자니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여 그 여성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이때에는 ‘솔루션위기개입사례비’가 있어서 이것으로 병원비내고 부산 쉼터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경남 지역연대의 경우 지역연대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20만원의 운영비로는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각 개별 기관의 고유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남 지역연대의 경우, 720만원 중 회의 참석과 관련된 참석자 차비 사례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 비용을 직접적인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민 주도의 직접 서비스 제공단체가 지역연대 운영회의를 주도 하다 보니, 운영회의 방식이나 절차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 국가기관 단체의 참여가 다소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비 명목으로만 돈이 쓰일 뿐 지금의 지원비는 지역연대 차원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 현실적인 연대 차원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지역연대에 주는 돈은 회의비와 다과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720만원으로 참석자에게 심지어 회의비도 안줄 정도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연대 쪽으로 아동·청소년 사례가 와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관기관 고유의 비용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차. 남성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경남지역의 경우, 아동 자체에 대한 예방, 지원 사업보다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왔는바, 남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계획은 아직까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청소년쉼터나 가정폭력 상담소 쪽이 아니라면, 지역연대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서비스 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나온 사례가 실제 있었는데, 그 때에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2 형이 6세 남동생에게 유사성교행위(성기를 입으로 빨아서 사정시키는 행위)를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맡아야하는 사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소년쉼터는 안되고... 결국 우리 여성연대가 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이네요.”

4) 대전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1) 운영배경 및 연혁

대전광역시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기원은 원래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가 2001년 5월 23일 구성된 것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의 지역연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2001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명칭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명칭 변경을 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대전지역 내에서 복지여성국장,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계장(관련 사건조사담당, 단속, 현장출동),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유치원, 초·중, 특수 학교지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학교폭력 및 생활안전 지원), 충남대학교 병원 진료지원과장, 여성긴급전화대전1366 대전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 1명, 배재시 민법률상담소(배재대학부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산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대전 가톨릭 가정폭력 상담소, 대전 YWCA 여성의 쉼터, 대전 성폭력 상담소,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구세군 정다운집,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석을 바탕으로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6월 26일~2014년 6월 25일까지 임명된 지역연대 위원명단이 위와 같고, 현재 전체 위원 중 복지여성국장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을 제외한 14명에게 매 회의 이후 7만원 정도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경찰과 교육청 장학사 2명에게도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표 사업 소개

대전 지역연대의 경우, 자율방범대와 연대해서 이동지킴이 활동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 경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CCTV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직접 배정하여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시 예산에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한 항목을 배정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대전시가 주도하여 관내의 범죄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었다고 하겠다.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대전광역연대의 경우 이동안전지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역연대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나 CYS-NET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도제작 이후의 그 결과물 활용이 다소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실무진들은 거의 없고, 참가자도 거의 겹치고 회의만 늘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고, 광역연대에서 자원을 다 써버리면 기초연대는 연대를 꾸릴 자원도 없지요. 그래서 특히 기초연대는 더 독특한 특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대전 지역연대에서는 비교적 운영위원 참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쪽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해자 재범 억제 차원의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직급상향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관리자나 기관장 참여가 연대 사업 방향을 잡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들 잘 참석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실무자모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기관장 참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섭외가 안 되고 되어도 잘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검찰 참석이 필요합니다.”

다.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대전의 지역연대 명칭이 이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불리게 되면서,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기존 사업들이나

회의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연대 특징이 퇴색되고, 다른 협의체와의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직히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행안부 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다른 관련 협의체들과 업무분장도 명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에서는 각 참가자에게 참가 수당을 지급하지만, 실무협의회에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대전 지역연대의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필요한 경우 긴급 회의소집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매달 3째 주 수요일에 모이고 있지요. 단, 사안에 따라서 참석이 필요한 사람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경우에 회의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모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대전의 경우, 지역연대 업무에서 피해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어디에서부터 개입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 개입범위가 너무 넓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단순히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각 기관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지역연대의 성격이나 개입 역량, 재량의 모호성 등으로 역할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방향성이 짝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장해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가부일로 내려와서 지역연대도 이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우리가 헤드부서도 아니고.....점점 뒤편하는 것인 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 자료의 ‘취합/평가’업무만 하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 교육청 등에 전화하고 자료요청하고 업무연계만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요청은 하지만, 지역연대 차원의 실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평가 자체가 항목의 복잡성, 비현실성 등으로 오히려 지역연대 업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의 의견과 같이, 사업 평가방식이 각 개별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그 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연대 차원에서는 평가받는다든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바로 평가가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기초연대는 평가 항목이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근본적인 자원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뽑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 우수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전의 경우, 지역연대 차원의 우수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업무범위 확정과 사업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또는 현실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상황에서 지역연대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주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세부항목이 아니라 여가부에

서 어떤 지역연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수사례 활동 시행방법을 확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대전의 경우, 충분한 지원을 전제로 지역연대 사업이 다소 읍면도 마을 하부단위로 내려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연대 운영 단위 자체보다는 어떤 예방사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하겠다. 즉, 실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자원이나 역량, 아이디어, 운영자금 등이 충분치 않다면 읍면동 마을단위 연대 역시 형식적인 모임에 불과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대전에서는 지역의 기초연대 사례관리팀이 커버하는 것이 힘들니까 실무협의회와 같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된 광역연대에서 매달회의를 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이죠. 현재 대전시청 담당자는 구청에서 위기관리 사례처리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구청차원에서 안되던 사례관리가 시청차원의 실무협의회인프라로 가능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대전의 경우 지역연대 운영 경비 대부분이 지역연대 위원 회의수당(7만원)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하는 경찰, 장학사 및 일반 관련 단체 대표들도 모두 회의 수당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연대 범죄예방 사업비는 회의 운영비로 쓰인다고 하겠다. 참고로 대전시는 시 예산을 직접 배정받아, 지역 내 CCTV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차. 남성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대전의 경우에도 남성아동에 대한 개별 성폭력 피해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아동은 보통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남성아동 지원 여부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성별에 따른 전문화된 개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도 충분치 않다는 것도 사후 피해자 지원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남성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동은 해바라기를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남성청소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사례가 발생해도 감당이 안되구요. 고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죠. 남성아동을 도와주려면 먼저 전문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서울 중랑구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1) 운영배경 및 연혁

2009년 6월 3일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처음 구성되었다. 이후,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11년 7월에 이루어졌다. 연 4회로 이루어지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모임이 2012년부터 연 2회로 줄어들었고, 아동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위험상황에 지역사회 안전망이 협력하여 함께 긴급구호 체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연대가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중랑구청 내 “여성정책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지역연대 회의가 기존 사업들을 평가, 조절하는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아동지킴이집 등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의가 지역연대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나오게 되었고, 현재 폐쇄 및 변경해야 할 사업들도 함께 지역연대 회의를 통해 조절되게 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기관 사업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연대 차원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랑구청 지역연대 운영회의는 녹색어머니, 경찰청,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병원, 초등학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의 업무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각 기관의 안전예방 업무 범위 및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이 지역연대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대표 사업 소개

연 2회의 “지역연대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연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을 중심으로 아동안전지도를 만들도록 했던 지도사업도 대표적인 지역연대 사업에 해당했다. 2011년에 내려온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만든 “안전지도” 내용이 올라가도록 학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단, 학교 역시 외부에 구청 직원들이 학생을 데리고 함께 나가서 교육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안전 관련하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수업일정 차질에 대한 부담감으로 협조는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중랑구청의 경우 셉티드(CPTED)학회,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학회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2009년 중랑구 자체에서 만든 “안전한 중랑구 만들기” 사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학회와 협조하여 관내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 교육, 홍보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단, 현재는 학회 운영방침 및 분위기가 초기와 달라져 학회 협조가 미진한 상태이지만, 구내 건축 개보수 상황에서 CPTED 범죄예방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중랑구청 지역연대의 경우 아동안전지도 제작활동 시 충분한 연대위원들의 협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했던 학교장이나 기관장, 경찰관이 실제 사업운영 시 당 기관의 고유 업무로 너무 바빠 충분히 지역연대 업무에 협조해 주지 않았고, 일부는 위원 기관이동으로 아예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형식적인 지도 결과물만을 보여주는 식의 사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부의 안전지도 제작이라는 결과 중심의 실적 때문에 교과부의 협조도 없이 무리하게 지도제작 일을 진행했지요.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팀 구성도 중랑구 내에 쉼터나 상담소가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거점형 사례관리 형태로 현실과 지침이 다소 괴리되는 형태가 되었는데, 솔직히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현실적인 교육적 목적에 충분하도록 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네요.”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로 한 해 중량구청에 약 720만원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비용으로 각 위원님들께 10만 원 정도의 인건비(총 10인-12인)와 식사비가 지급되는 수준에서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량구의 경우 관리자나 기관장이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지역연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에 돌아간 후에도 고유 업무 진행에서 제대로 된 연대가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차라리 운영위원회 참가자가 일선 실무자로 채워지는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회의비로 대부분의 지역연대 경비가 소요되고, 결국 실질적인 지역연대 사업비는 구 자체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관장이나 과장급들은 대표로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업무만 발표하고, 문제만 제기할 뿐 실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사업 아이디어는 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운영회의를 위해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실질적인 협력 업무를 이야기하고,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서울 중량구청 지역연대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나 다른 청소년 관련 모임 활동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구청 내 교육지원과나 아동 청소년팀에서 이미 지역연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을 오래 전부터 담당했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청 내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수혜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분장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내에서 지역연대를 2011년부터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연대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실제 기존의 구청 교육지원과나 아동·청소년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유사한 업무를 실시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과”에서 다루었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문제는 “아동·청소년팀”에서 청소년수련관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두어 성인 여성과 청소년이 아닌 초등학생 정도의 저연령 아동만 보호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교과부나 보건복지부, 여가부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위해 대상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이 구청 내에서도 유사한 과들이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과도하게 분리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중랑구 지역연대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유사 운영회에 이미 참석한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역연대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 반복적인 논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참석자들도 고유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사업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어 회의 이후, 진정한 파트너십이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이 서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협력 유인책과 새로운 업무 진행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솔직히 6개월에 한번 정도 과장급 이상 윗분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지역연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연대 회의가 실무자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먼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 참석하신 과장님도 범죄자 개인정보 공유문제는 기존 법률문제 때문에 소극적이시고, 학교 역시 교육 프로그램 문제로 지역연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학교 수업에 ‘우리 고장 알기’와 같은 수업을 교과부의 협조로 아동안전지도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범죄예방 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 텐데, 심지어 안전아동 지도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중랑구청 지역연대 내에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사례관리 업무 및 관련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연대를 직접 경유하여 연대 차원의 피해자 지원 사업은 현재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역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 내의 “여성긴급전

화” 등이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구청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형사사법기관, 일반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지역연대 차원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 지원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여가부에서도 사업이 불가능한 영역은 단순 예방차원에 머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경찰병원으로 보내 다른 구 내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정도의 사업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요.”

바.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중량구청 지역연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여가부의 지역연대 평가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방식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만을 강조하다보니 생색내기, 도는 “보여주기 행정”만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새로운 지역연대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각 환경에서 기존의 우수사례를 새롭게 다시 적용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수정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자세를 평가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해야 할 것이다.

“연말 시상 등의 줄 세우기 평가 정책으로 다른 구청의 우수한 정보를 다른 구청과 공유하지 않거나, 실적만 생각해서 다른 구청의 사업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만 찾아 나서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지역연대 사업 평가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각 지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초기부터 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인구 40만의 구 단위의 안전 계획과 3만도 되지 않는 군 단위의 안전계획이 어떻게 동일하다고 하겠습니까. 작고 세심한 사업이 거창한 안전사업보다 일선 지역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중랑구의 경우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그 우수사례를 재실시 해보도록 여가부가 충분히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훌륭한 지역연대 안전사업이라면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구청이 함께 실시해 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연대의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인해 각 지역사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개별화된 안전 확보 정책들이 너무 동일한 형태로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연말의 실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상/하반기 실적발표 전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중랑구 지역연대의 경우,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이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동 단위 마을 사람들 단위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 내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 등의 업무 분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아래 마을단위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협의회 명칭의 모임은 수도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집에 어떤 아이와 부모가 살고 있는지 실제 이해하고 걱정하는 행동하는 이웃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안전 문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청 내에서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 여성정책팀으로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업무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구청 내 정보공유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중랑구의 지역연대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비용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 운영비로 지원되는 720만원은 참가 위원들 인건비 및 식사비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이다. 순수 회의비 이외에 지역연대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진정한 통합관리 시스템 예방 업무가 가능하다. 지금은 구 자체 경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구청 내 여성정책팀,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들과의 업무 연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연대 고유의 통합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차. 남성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중랑구 역시,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아동에 대한 성보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향후 성별에 입각한 전문화된 피해자 지원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과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을 뿐, 구체적인 남성아동 성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을단위의 지역연대 사업 모델을 구축하면서, 일반 남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들도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6) 경기 군포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1) 운영배경 및 연혁

경기도 군포시의 지역연대는 “여성폭력방지 협의체”를 모체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10개 기관을 상대로 10명의 위원을 위촉한 상황이며, 지역연대 내에서 1명의 간사와 1명의 과장이 있다. 표준조례에 따라 원래 17명-2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야 하지만, 실제 관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10명-13명 범위에서 군포시 지역연대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지역연대의 핵심 업무는 성폭력 사안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사후 피해지원에 유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고, 기관 간 정보공유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개별 범죄예방 프로젝트로 실시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다.

(2) 대표 사업 소개

군포시의 대표 지역연대 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제작 사업이 있었고, 우리아이 지킴이 서명운동도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바 있다. 또한 시청 지역연대를 기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도 대표적인 군포 지역연대 사업에 속한다. 동시에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라는 형식적 사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 사업을 붙여넣어 관내 아동안전 지킴이 집들이 지역 내 범죄예방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한 것도 지역연대의 중요한 대표사업이었다. 특이하게도 군포시는 “움직이는 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여, 집배원이나 야쿠르트 아줌마 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도 적극 실시하였다.

1차 예방 차원에서 군포 지역연대는 아동의 범죄피해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동 인형극”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약 2,8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에게 “휴대용 경보기 나눔”을 실시한 것도 의미 있는 지역연대의 범죄예방 사업이라고 하겠다.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가.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군포시의 경우, 지역연대 운영위원 범위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를 지역 내에서 찾기가 매우 어렵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치안협의회 및 CYS-NET 참가자들과 그 대상이 중복되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포시는 참가자의 직급이 관리자나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회의 후 각자의 기관에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회의 결과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강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의 의미가 없어 기존 회의방식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라리 기관 담당자와 1:1로 다시 접촉하는 것이 정보공유나 지역연대 사업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석하는 분들도 다 중복되는 다른 시청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예요. 기관장들이나 과장급이다 보니, 회의 전에 아래 사람이 써준 원고 내용만 읽고 들어오시죠. 회의 한다는 거 자체가 크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역연대 프로젝트 할 때는 각 기관 담당자들과 다시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다.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군포시의 경우, 기존 사업들과 지역연대 사업이 다소 중복되고 그 참여 인사들도 다른 협의체 참가자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역연대 회의 날짜를 잡을 때도 다른 유사 협의체나 CYS-NET 회의에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상황이다. 지역위원 위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사업들과 많이 중복되는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참가 위원들이 이미 다른 협의체나 치안협의회 쪽에 가입된 분들이라는 거죠. 위원들에 따라 개인성향이 다 다르고, 지역연대에 매우 적극적인 분도 몇 분 있지만, 성향에 따라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분도 있으세요.”

라.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군포시는 운영회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 수를 2번으로 줄이고, 모임 전에 각 참석자에게 회의 주제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자기 기관 이야기만 하고 가는 것은 진정한 지역연대라고 할 수 없어, 탄력적으로 회의 수를 줄이고, 회의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탁상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복되는 회의에 자꾸 형식적으로 얼굴만 보는 건 의미가 없죠. 회수 개최도 2번으로 줄이고, 위원님들이 회의에 오기 전에 미리 회의 안건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완벽히 이해해서 참석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군포시는 일부 사례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0년에 피해자 지원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역연대가

적극 관여하기도 하였다. 주로 청소년수련관,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미혼모 쉼터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역연대 사례관리팀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역연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지원금이 적절한가를 논의한 것이지요.”

바.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군포시 지역연대의 경우, 여가부의 사업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사업 개발 및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역연대가 사업과 관련된 조례 외에도 따로 추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느냐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형식적인 규정여부”만 점검하고 있는 등 현실적인 사업 내용 및 시민 만족도, 기관 환경 고려 평가 등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방식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 평가 자체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평가 자체를 위한 평가가 되어 버리니까, 지역연대 업무 발전에 그 평가결과가 도움이 안 되네요. 조례가 있는데도 이후 다시 관련 규정여부를 묻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군포시 지역연대 역시 우수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구체적으로 군포시에도 다시 소개되어 군포시 환경에 재활용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읍면동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 확대 실시 필요성 문제

군포시의 경우, 마을 단위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이 안전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심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들을 일상에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 마을 단위의 지역연대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효과적인 범죄예방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중복해서 마을 단위의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지역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촘촘 안전망이 형성되겠지요. 동별로 누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위기환경에 처해 있는지 사회복지사들이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면 고위험 성폭력 아동, 청소년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겠죠.”

자. 지역연대 예산 부족 문제

군포시 지역연대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운영 사업비가 단순 회의비가, 회의 참가자 수당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부족한 예산 상황과 함께 지역연대 업무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기본사업 외에 지역 권익증진 사업까지 확대되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상황이다. 관내 성매매 업소 단속 등의 관리업무까지 지역연대 담당자가 맡게 되어 그 1차 예방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된다고 볼 수도 있다.

“지역연대 기본사업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권익증진 업무까지 지역연대가 맡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성매매 업소 야간 단속, 관리업무까지 해야 하니, 이걸 과부하죠. 향후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심 SCHOOL BUS 운영 사업도 계획 중이고, 기금 모금을 통한 취약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요. 실질적인 지역연대 업무 범위 설정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차. 남성아동 성폭력피해 지원 미비 문제

군포시의 경우에도 남성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성별” 특성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대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바, 남성아동에 대한 피해원인, 기제, 사후 증상 등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입·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도 미리 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 5 장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제 5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⁶⁸⁾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상담 제공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증상과 장기적인 증상으로 나누어 대처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손상된 상품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권희경, 장재홍, 2003 : 37),’ 낮은 자아존중감 등으로 인해 성인으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자의 경험이 차후 범죄가해자가 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증상의 치료와 심리상담은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복귀한 후에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wee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인용한 한 아동성폭력피해자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장기적인 서비스와 근접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68) 이 부분은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해서 가보면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기관마다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여 여러 곳을 가야 된다. 기관들이 왜 연계만 하고 직접 지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상담이 밀려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아닌 상담소는 3개월, 10회, 20회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피해아동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10여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먼 길을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사후서비스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모색

많은 경우에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부모들은 그들의 경제활동을 당분간 그만두어야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은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의 해결도 어려운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고 2차 피해의 우려가 많아지게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은 그러한 어려움이 더 크다. 다음 인용은 그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셋인데 지금 현재 가스, 전기, 전화 모두 끊겼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안내를 해주셔서 생계비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기간을 기다려야 해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있지만 이는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월평균소득 및 치료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심의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의후의 지원과는 별도로 피해 아동·청소년 가족이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구체적인 예로는 긴급자금 대여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3) 피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모색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9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이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피해자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소문이나 왕따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신고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왕따나 괴롭힘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인들은 모두 피해자 신원노출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성폭력 매뉴얼을 보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학교에 유포되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장이나 교사들 스스로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잘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구의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퍼뜨리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해 순식간에 사실이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막는 1차적인 방안일 것이다.

(4)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정착 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교사, 학교장, 의료인, 피해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및 장, 아동복지사 등으로 이들은 성폭력의 발생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윤덕경 외, 2011 : 65). 이처럼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인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또는 발생한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형사사건화 하기 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꺼리게 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수십, 수백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과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아동성폭력 대응매뉴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실제상황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워크숍의 형태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연구(이춘화, 윤옥경, 황의갑, 전해진, 2010 : 330)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작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는 혐의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아동·청소년과 가해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2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과태료 등의 방법으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종지원을 하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역량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부정적 자기낙인(self-labeling)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래 한 피해청소년의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마치 성폭력피해자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한다. 주변에서의 과도한 관심과 개입이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만약 상담을 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내가 정하겠다.”

이 경우는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기관이 아닌, Wee센터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은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고 향후 다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해를 통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판단으로 치료나 상담을 강요하는 것은 치료효과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반대로 피해아동의 치료 필요성이 있고, 본인이 원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아동을 위해서 치료명령을 보호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장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동의 치료를 거부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비가해부모인 어머니 역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호를 해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치료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치료명령이 절실하다.

(6)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강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을 증대해야 한다는데 대다수(91.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이나 갈등조절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가족성원간에 유대나 애착이 강하지 않거나 부모의 알콜문제, 폭력문제가 심각한 경우, 또는 부모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정에서 아동·청소년 자녀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의 그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이러한 자녀교육 기술의 부족이나 가족유대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미국사례와 같이 부모양육 기술(parenting skills)이나 가족유대 강화 프로그램(family strengthening programs) 등을 통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피해자녀뿐 아니라 피해가정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충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친족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치료와 상담의 필요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이러한 가족상담을 위해서는 가족치료 등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 방문 서비스 등 지원방안 다양화

앞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치료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다 부모가 항상 동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 아이 혼자서 먼 거리의 기관을 오간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가능성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아래 사례에서와 같이 아동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아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상담소로 가는데, 가끔씩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 다. 일하는 엄마로서 상담때마다 아이와 동행하기는 어렵다. 방문상담이 가능하면 좋겠다.”

방문상담은 아이와 함께 오지 못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이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문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담치료 인력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

(8) 피해의 중첩성에 대한 인식 및 재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성폭력의 경우, 특히 아버지나 계부에 의한 성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아동 또는 청소년은 이러한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고, 그 후에는 성매매로 생존을 이어가게 된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청소년의 7.2%, 여학생의 9.2%가 강간미수나 강간의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소년원 수용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경험율이 38%로 높았으며, 여성시설청소년의 경우 58%에 이르렀다(윤덕경 외, 2011 : 196).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가 2012년 9월에 10대 가출소녀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0%가 성폭행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수가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향신문, 2012년 9월 23일자). 이처럼 성폭력은 가정폭력, 성매매와의 중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때문에 가출을 한 청소년들은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의 경계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아동의 삶의 궤적을 미루어볼 때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은 성폭력의 피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축적과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모두 갖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9)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들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얘기할 때는 주로 여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실상 적지 않은 남성이동과 청소년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2011년 해바라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이동·청소년은 전체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그것을 노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해 여성경찰관과 여성심리상담가를 확보해 준대 반해서 남성 아동·청소년은 수적으로 적다보니 자신들의 이야기를 여성경찰관과 여성상담사 앞에서 털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마다 남성상담사나 남성경찰관의 상주를 요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성이동·청소년의 이러한 점을 치료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의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현재도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국비 예산이 336억이고, 이 중에서 의료비는 10억 3천 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가지원의 부족은 상당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⁶⁹⁾

69) 금년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방침을 전환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의료비 부분만 큼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은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기관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이었다. 앞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은 성폭력피해 극복과정이 성인과는 다르다. 아동피해자의 경우 피해복구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가족을 치료하는 것을 병행해야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고, 특히 아동 친족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양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또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전학이나 자퇴 등 학교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아동피해자가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면 치료나 상담을 중단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차이점을 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needs)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피해자와 청소년 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3) 아동·청소년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확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지원 정책으로써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선정되었다. 성폭력의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중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상담, 치료,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가정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가정적인 갈등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기 힘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기존의 청소년쉼터나 그룹 홈 등에 연계될 수 있는데, 다양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공간보다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용공간의 필요성은 이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윤덕경 외, 2011 : 368).

한편 성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친족간 성폭력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방적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서는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이 아버지나 오빠와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아 해피하우스라는 대안가정을 운영하고 있고, 두칸짜리 방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해피하우스는 국고 예산 없이 도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6명을 수용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친족성폭력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설 및 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시설간의 기관간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피해자 지원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infrastructure)이다. 기관간 연계와 협력은 서비스 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역할 중복 조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보면 긴급지원센터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이어지는 종적 연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사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관 및 시설들 간의 횡적 연계와 협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자 어머니와의 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기관들이 다른 기관을 연속적으로 연계만 하고 실제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부족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다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는 시설 또는 기관의 수용능력이나 상담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신속하게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서비스를 찾아다니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아동보호여성지역연대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논의될 것이다.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⁷⁰⁾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1)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관련 문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선정되었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유해환경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이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이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당국에서 관련 수업시간과 연계되어 안전지도 제작을 필수 수업 내용으로 지정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된 안전지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주변 일대 환경과 지역개발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적으로 위험지역 확인을 새로 업데이트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상가 사람들이나 아동의 부모들도 위험지도의 결과물을 바로 받아보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전지도 활용이 결과물 업데이트나 공개 활용 측면에서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 전체 353개 초등학교에 학교 당 한 개 팀만 구성이 되었는데 아동의 실질적인 지도제작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지도제작 자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연대 운영위원 참석자 확대 및 직급상향 조정 문제

전반적으로 지역연대 회의 시 일반 상담소나 관련 지원센터에 비해 범죄예방을 본 업무로 담당하는 검찰, 법원, 교정 등의 국가기관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 및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형사사법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지역연대 업무에 전제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범죄예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나 기관장 레벨의 위원참여가 실질적인 기관 간 파트너십 수립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 부분은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실무협의 및 사례관리협의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위원 역시 보다 실무자급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를 각 참석자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장소를 바꿔서 운영하거나,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대표자 1인 외에 회의 논의를 주관할 수 있는 기관별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지역 내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일부 지역연대(예. 순천시)의 경우 여기 저기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내 사업들이 지역연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연대는 기존 사업들과 지역연대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기존 사업들이나 회의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연대 특징이 퇴색되고, 다른 협의체와의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방식 및 권한부족 문제

지역연대의 긴급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도 전체 운영위원회가 정기회의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모임이 비교적 탄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기관마다 다르고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소집이 각 기관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날짜를 미리 공지했음에도 운영위원회 참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회의 참석을 관련 단체들에게 설득하고 독려, 강제할 방법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설사 어렵게 긴급회의가 이루어져도 통합관리를 주도해야 할 지역연대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지원 부족 및 개입 한계성 문제

많은 지역연대에서 1차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을 잘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아동·성폭력 사후 피해지원 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자체가 적어 지역연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 피해이동이 직접 피해지원 서비스 기관과 사전에 접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지역

연대를 통해 피해 고위험 아동의 반복피해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 개입,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피해아동 지원 문제를 지역연대 속에서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 및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개입할 방안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대전의 경우, 지역연대 업무에서 피해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 어디에서부터 개입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 개입범위가 너무 넓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단순히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각 기관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지역연대의 성격이나 개입 역량, 재량의 모호성 등으로 역할 갈등이 우려되는바, 구체적인 지역연대의 업무 범위를 다시한번 지역 상황에 맞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6) 지역연대 평가 방식의 문제

대다수의 지역연대 담당자들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평가방식이 보다 정교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항목구성이나 평가방법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세부항목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너무 세세하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어 내실 있는 기본관계 형성 및 지역연대 인프라 구축을 만드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들이 평가지표 결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기본적인 지역공동체회복 자체를 평가하는 보다 항목 수를 단순화시키면서 실질적인 기관 특색 중심의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지역연대 우수사업 개발, 활용, 전달의 문제

지역연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기존사업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이 평가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자체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지역연대 운영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예방 사업(배움터지킴이 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이 인적 구성원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인력 구성을 바꾸어 나가는 시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새로운 우수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보통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남성아동 지원 여부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성별에 따른 전문화된 개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도 충분치 않다는 것도 사후 피해자 지원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성폭력 피해가 여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 피해지원 및 개입 서비스조차도 개별 피해자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역연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반복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예. 강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사후지원 서비스가 지역연대를 통해 보다 일반화·전문화될 수 있다면, 그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별-적합(gender-specific) 치료 차원의 남성 피해아동에 적합한 개별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역연대에서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열거한 열 가지 이슈들이 현재 운영 중인 “지역연대” 활동 개선안에 초점을 둔 “실천 중심의 제안”이라면, 이번에는 철학적·개념적 차원에서 서로 상이한 지역 환경과 역사, 자원들을 가진 개별 지역사회가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어 “이론 차원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없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등의 국가형사사법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그 기본 역할 차원에서 고유의 업무를 잘 이행해 주고, 보다 유기적으로 지역공동체들이 다양한 자원과 경험, 정보, 기술, 노하우들을 사회 내에서 긴밀하게 공유해야 진정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연대 개선안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

첫째, 국가 범죄예방 기관들과 지역사회가 보다 긴밀히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Finkelhor(1990)가 제시한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에서도 고위험군을 선발하는 것과 처벌을 통한 성범죄자 문제행동 억제가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부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연대가 계속 검찰이나 법원 등의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들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참석 자체를 확보하지 않아 현실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활동을 실현할 수

하다. 3차 예방 역시 무조건 교도소나 보호관찰관소와 같은 교정기관이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통합과 사회복귀, 재범억제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있다. 한 예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 우범자나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면, 지역사회공동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 순찰활동이나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리, 전달 등의 3차 예방활동에 관민이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그 단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민간 파트너십은 처음 딱 한 번의 시도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 지역사회 자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이 하나의 통합된 새로운 힘으로 거듭 나야 가능한 것이다.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연대 주력사업이 개별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몇 가지로 구체화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닌 “발전과 화합”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역연대 평가방식이 수정·변화되어 특정 활동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환경에 따라 1차 예방이 더 필요한 곳도 있고, 혹은 잠재적 피해자 집단을 먼저 고려하여 2차 예방에 힘써야 할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인적, 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특정 지역에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 3차 예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역사회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활동들이 중단 없이 매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되고, 지역사회공동체 참여를 통해 매년 추적조사(follow up study) 결과가 공유되는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이 지역연대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은 단순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나 CCTV 증설, 범죄전문가 시민교육, 보안강화 도시설계, 또는 특별 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개별 활동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활동들이 지역사회공동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신뢰를 전제로 했을 때 진정한 범죄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개별 환경에 적합한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활동을 1차, 2차, 3차 예방전략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것을 관민 파트너십 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효과적인 환류 체계를 지역사회공동체 내에 구축시켜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⁷¹⁾

1) 법적 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8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제가 해결되어야한다. 하나는 법적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무운영의 과제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에서 법적 과제가 뜻하는 것은 결국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사법적 효과의 부여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체계의 구축'이다. 논의의 핵심은 공동체의 참여유무인데 이것은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소년사법체계와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로 이원화되어있는 우리 소년사법의 현실에서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도입할지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도입할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순수론자들의 주장도 결국은 형사사법체계와의 조화를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성인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 교육지원을 소년사법체계는 전제로 하고 있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지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참여'가 전제되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도입은 소년사법체계에서는 성인형사사법체계에서의 도입과정보다는 순탄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에게 적합한 지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인 소년심판은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에 따른 보호처분의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적합한 지원과 지지를 위한 핵심인 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 참여는 공동체를 피해자로

71) 이 부분은 강지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보고 공동체의 피해회복을 위한 장치이기 보다는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을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이점에서 일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핵심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범죄해결 권의 공동체로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사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도입은 앞으로 개선해나 가야 할 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화해절차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직후 사과와 용서를 하였고, 사법기관의 인지와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서 가해청소년은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가해청소년은 피해자의 엄마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어 하였으나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가해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의 의사와는 달리 성인 성폭행가해자와 동일하게 강력처벌 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응보적 징벌을 원하고 있지만 소년사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징벌 보다는 요보호성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자의 욕구는 애초에 충족되기 어렵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가해소년이 지는 것을 통해서 보호자의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의 욕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과와 용서 이 외에 가해자에게 다른 피해회복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 사회봉사, 수강, 금전적 피해보상 등).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의 사과는 회복적 사법에서 피해자 치유의 초석이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응보적 가해소년의 처벌도, 가해아저씨의 사과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현재의 형사합의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한 도구인 가해자 ‘사과와 피해보상금’이 전해진 다음의 서면상의 합의를 통한 피상적 ‘용서’가 존재할 뿐이다. 가해청소년 보호자의 의지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될 뿐이다. 관행적인 형사합의의 과정에서는 가해소년이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범죄해결의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에서는 ‘사과와 용서’도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협의 모델의 도입

회복적 사법의 형사사법 도입과정에서 순수론과 확장론의 논쟁은 결국, 기존의 형사사법제도가 영미법계인지 대륙법계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의 형사사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원칙과 소년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원칙은 미세하고도 거대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에서 도입되어 실현, 실천되어야 할 회복적 사법의 원리에 공동체의 참여를 전제해야 하고 복지모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의 소년사법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회복 중심의 범죄대응과정에서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속한 공동체의 도움과 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적합한 모델은 가족집단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범죄(회복적 사법)법에서와 같이 ‘협의’ 모델을 도입하고 실무는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호주의 법조문을 보면 협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족집단협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호주의 범죄(회복적 사법)법에서는 협의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회복적 사법협의의 준비자가 복합 형태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이든 회복적 사법가이드라인에 맞게 협의를 준비하면 된다. 협의의 종류는 가장 화해가 잘될 수 있는 것으로 준비자가 선택한다. 협의의 예를 들면 면대면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서신이나 이메일의 교환, 비디오 녹화물의 교환, 전화협의, 화상협의 등 다양하다.⁷²⁾

하지만 우선, 기소전, 재판단계, 교정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성사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소중지, 양형에서의 참작, 가석방에서의 고려 등 다양한

72) Section 46 Form of conference The convenor of a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 may conduct the conference in any form (or combination of forms) consistent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guidelines that would, in the convenor's opinion, best facilitate—

(a)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b) the promotion of the objects of this Act in relation to the conference.

Examples of conference forms

1 face-to-face meeting

2 exchange of written or emailed statements between participants

3 exchange of prerecorded videos between participants

4 teleconferencing

5 videoconferencing

in Crimes(Restorative Justice) Act 2004,A2004-65, Republication No.13 ,Republication date:17 December 2009 p42

. Page URL: <http://www.legislation.act.gov.au/a/notification/2004.asp>

(2) 학교폭력분쟁조정대상에서 성범죄 제외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잠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하나로 정의하면서도 교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일반인은 성희롱과 형법상의 성범죄를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이 장난으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심각한 성폭력일 수도 있다.⁷³⁾ 교사는 성폭력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대상도 아니다.

학생이 성폭력 관련 피해를 주장하면, 학교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신고유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 바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원스톱지원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은 아동·청소년성폭력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피해학생과 1차적으로 논의하고 사법처리절차와 상담치료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 평상시에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가 어떤 유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신고과정에 대한 연수나 매뉴얼 인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능력이나 조사능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바지내리기, 브레이지어 끈 잡아당기기 등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성폭력은 학교에서 또래 조정을 통해서도 갈등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전문성을 요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분쟁조정 등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운영대상에 성폭력은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성적인 장난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73) 학생들의 성적인 장난에 관한 정도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구지역 부설 중학생 남녀 1,2,3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성적인 장난과 성폭력의 경계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장난이 섞인 답변이 많아서, 연구보고서에 자세한 결과를 실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분석은 가능했다. 강간과 성추행은 쉽게 구분하고 있었으나, 성추행과 장난은 쉽게 구분하지 못했다. 바지내리기, 속옷까지 벗기기, 성기 만지기, 음담패설을 하면서 수치심 느끼는 학생 괴롭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난, 괴롭히기의 일환으로 성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성간의 성추행에 해당하는 성폭력은 장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3) 단계별 운영방안

(1) 현재 운영가능한 방안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은 운영가능하다. 증거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의 해결방안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의 심적 치유와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회부, 합의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처리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화해권고제도를 통해서 운영가능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외의 경우에는 소년에게 적합한 장치로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한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적사법이라고도 불리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원하고 가해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면 심리상담과정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면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해바라기 이동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가 개입하여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할 것이다.

표 V-3-1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가능한 방안

사건처리 절차	가능한 운영방안	필수참여공동체
입건전단계 입건 단계 기소전 단계	○증거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의 해결방안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회부, 합의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음.	대면프로그램의 진행시 모든 단계에서 해바라기 이동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가 개입하여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함.
재판단계	○소년법상 보호사건처리절차의 화해권고 적용가능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적용가능	
교정단계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가능.	
사법절차완료 단계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가능	

(2) 나아가야할 방향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검찰단계에서 기소 중의 법효과가

발행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소년사법과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면 운영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당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가해자 유형패널을 통해서 심적 치유가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폭행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행의 피해가 어떤지 피해자는 진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패널이 서로의 비밀을 엄수한다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심리적 치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표 V-3-2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

사건처리 절차	가능한 운영방안	참여공동체
입건전단계	○증거능력이 불충분하여 고소가 어려운 사건의 해결방안	대면프로그램의 진행시 모든 단계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가 개입하여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함.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에 대한 피해자진술조력인 제도의 명문화를 통한 역할 강화)
입건 단계 기소전 단계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회부, 합의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음. ○검찰단계에서 참고요인으로 고려하여 기소중지의 법효과 발생가능	
재판단계	○형사사건, 보호사건 처리절차 모두 적용가능	
교정단계	○교정프로그램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가능.	
사법절차완료 단계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가능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대면프로그램 참여가능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패널의 운영. 당해 피·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해자 유형으로서 집단적 대면프로그램의 운영	

4) 활용능력 제고방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현유무는 일선에서의 활용능력에 달려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한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일선에서 실무가가 회복적 사법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운영될 수 없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하고 회복적 사법은 법적 정체성도 가져야한다.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공숙자(2010). Wee 프로젝트 개요 및 실제. **상담과 지도**, 제45호.
- 권희경, 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여성**, 8(1), 35-47.
- 김성돈(2005).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성균관법학**, 17(1), 405-436.
- 김용세(2005).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형사제재체제의 개편 (이호중)에 관한 의견을 곁하여. **형사법연구**, 23, 224-253.
- 김지선(역)(2004). 네 가지 회복적 회합모델에 관한 비교(1)(2).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2호, 제83호
- 박강우(2007).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형사정책연구**, 18(2), 49-74.
- 박상식(2010).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18(1), 263-282.
- 박태영, 박소영(2007).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의 가족치료 사례분석: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서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43-363.
- 신기숙(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255-1287.
- 신의진(2010).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 한국모자보건학회.
- 여성가족부(2011).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b).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c).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유재두, 송병호(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133-165.
- 윤덕경 외(2011).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Ⅲ):여성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백철(2002).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이론적 정당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3호, 137-171.

- 이신영, 박선영(2010). 한국과 미국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 현황과 효과성 검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9(2), 25-46.
- 이재희, 이기숙(2009).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부산성폭력상담소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20, 157-189.
- 이진국(1999).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409-435.
- 이진국(2001). 독일형소법상 기소유예규범의 개혁과 정책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12(3), 233-249.
- 이춘화(2011).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3(1), 65-90.
- 이춘화, 윤옥경, 황의갑, 전해진(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호중(2004). 회복적 사범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재편-트로이목마의 투입? 값싼 형벌신상품의 개발?. **형사법연구**, 22, 495-516.
- 이호중(2009). 회복적 사범의 이념과 실무. **법학논집**, 14(2), 1-27.
- 조현지(2008). **형사상 화해·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주소희(2010).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33-68.
- 최상욱(20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1(3), 325-357.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매뉴얼(2012.4.18)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http://www.mest.go.kr/web/60879/ko/board/list.do?bbsId=291>(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
- 경향신문 (2012.9.5). “작년 성폭력 치료비 정부지원 1인당 6만원꼴.”
- 경향신문 (2012.9.23). “집나온 소녀들, 절반 이상이 성매매...왜?”
- 한겨레 (2012.8.30). 학교에서 납치된 어린이 성폭력 피해 법원, “서울교육청 보호 소홀한 책임있다”.
- 해바라기센터(<http://www.child1375.or.kr>)

- 加藤伸宏(2011). 「子ども対象・暴力的性犯罪出所者の再犯防止措置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警察学論集*, 64(5).
- 大西宏治(2007). 「子どものための地域安全マップへの地理学からの貢献の可能性」. *E-journal GEO*, Vol.2(1).
- 小宮信夫(2006). 地域安全マップの誕生と展開—教育に基づく子どもの安全確保—. *警察学論集*, 59(5).
- 松坂規生(2006). 子ども対象・暴力的性犯罪の出所者による再犯防止を含む子どもを犯罪から守るための対策について. *警察学論集*, 58(9).
- 神山憲一・玉川達也(2005). 安全・安心まちづくりの推進について. *警察学論集*, 58(12).
- 安田貴彦(2009). 子どもや女性を性犯罪等の被害から守るための新施策について. *警察学論集*, 62(9).
- 越智啓太(2007). 子供に対する性犯罪に関する研究の現状と展開(2)—防犯と矯正の問題—. *法政文学部紀要*, 第55号.
- 警察庁編(2011). *日本警察白書*.
- 太田達也(2009). 我が国における性犯罪者の再犯防止対策—現状と課題—. *警察学論集*, 62(3).
- 平山真理(2007). わが国における子どもを対象とした性犯罪の現状とその再犯防止対策について. *法と政治*, 58(1).
- 清家春夫・鴨志田康弘(2011). 警察と自治体における子どもの安全施策—大阪府, 滋賀県, 東京都, 神奈川県の事例により—. *警察学論集*, 58(9).
- <http://nirasakihokuto.seesaa.net/article/73699383.html>.
- http://kitayana-hinode-jichikai.blogspot.kr/2011/09/blog-post_07.html.
- <http://yuinomachi.jp/education026.html>.

- Ammerman, R.(1991). The role of the child in physical abuse: A reprisal. *Violence and the Victim*, 6.
-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2009).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0).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08-2009*. Canberra, ACT: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 Bazemore, G., & Schiff, M.(2005). *Juvenil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lishing.
- Bazemore, G., & Umbreit, M.(2001). *A Comparison of Four Restorative Conferencing Models*. Juvenile Justice Bulletin. U.S.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February 2001.
- Bolen, R. M.(2003).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and promotion. *Social work*, 48(2).
- Braithwaite, J., & Pettit, P.(1990). *Not Just Desserts: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 Oxford, UK: Clarendon Press.
- Briere, J., & Elliott, D. M.(2003). Prevalence and symptomatic sequelae of self-reported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27.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2001). *Alcohol, other drugs, and child welf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n.
- Children's Research Center.(1998). *California preliminary risk assessment*, September, 1998. Madison, WI.
- Cohn, A., & Daro, D.(1987). Is treatment too late: what ten years of evaluative research tell us. *Child Abuse and Neglect*, 11.
- Cross, T. P., Whitcomb, D., & De Vos, E.(1995). Criminal justice outcomes of prosecution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19.
- Crosse, S. B., Kaye, E., & Ratnofsky, A. C.(1993). *A report on the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hington, D. C.: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 Daro, D. A.(1994).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4(2).
- Egeland, B., Bosquet, M., & Chung, A.(2002).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breaking the cycle of abuse, in Kevin Brown, Helga Hanks, Peter Stratton, and Catherine Hamilton, eds.,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 Handbook*.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Chap..
- Fattah, E. A.(1993). “Research on Fear of Crime: Some Common Conceptual and Measurement Problems”, in Bilsky et al (Eds),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Ferdinand Enke Verlag, Stuttgart.
- Finkelhor, D.(1990). new ideas for sexual abuse prevention. In R. K. Oates (Ed.), *Understanding and managing child abuse* (pp. 385–396). Philadelphia: W. B. Saunders.
- Finkelhor, D.(1993). Epidemiological factors in the clinical identification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7(1).
- Finkelhor, D.(1994). The international epidemiology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8.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amby, S. L.(2005). Th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y. *Child Maltreatment* 10(1).
- Finkelhor, D., Turner, H. A., Ormrod, R. K., & Hamby, S. L.(2009). Violence, crime, and exposure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Pediatrics* 124(5).
- Herman, J. L.(1990). Sex offenders: A feminist prospective.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177–194. New York: Plenum Press.
- Higgins, D. J., & Katz, I.(2008). Enhancing service systems for protecting children: Promoting child wellbeing and child protection reform in Australia. *Family Matters*, 80, 43–50.
- Hole, C., & Young, R.(2002). *Restorative Justice: Assessing the prospects and the pitfalls*, The Hand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and New

- York: University of Oxford Press.
- Horton, C.(2003). *Protective factors literature review: Early care and education programs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 Hunt, R., & Walsh, K. M.(2011). Parents' views about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6(2).
- Kendall-Tackett, K. A.(2003). *Treating the lifetime health effects of childhood victimization*, Kingston, NH: Civic Research Institute, Inc.
- Lampert, J., & Walsh, K. M.(2010). Keep telling until someone listens: Understanding prevention concepts in children's picture books dealing with child sexual abuse.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41(2), 146-167.
- MacDonald, G.(2001). *Effective interventions for child abuse and neglect: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planning and evaluating interventions*. Chichester: John Wiley.
- MacIntyre, D. and Carr, A.(1999).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ay safe primary prevention programme for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23(12).
- Marshall, T.(1996).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4).
- Marshall, W. L., & Barbaree, H. E.(1990). An integrated theory of the etiology of sexual offending.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257-295. New York: Plenum Press.
- Meintjes, R., Ferreira, M., & Plessis, P.(2003).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South Af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5(1).
- NCCD,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2007). Outcome evaluation of parents anonymous. Report submitted to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stice Program, U. 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Oakland, CA.
- Nelson, E. C., Heath, A. C., Madden, P. A. F., Cooper, M. L., Dinwiddie, S. H., & Bucholz, K. K. et al.(2002). Association between self-reported childhood sexual abuse and adverse psychosocial outcomes: Results from a twin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
- Oates, R. K.(1996). *The Spectrum of Child Abuse: Assessment, Treatment, and Prevention*, Brunner/Mazel Inc. New York.
- Powers, J. L. & Eckenrode, J.(1988). The maltreatment of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12*.
- Price-Robertson, R., Bromfield, L., & Vassallo, S.(2010). *The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Putnam, F. W.(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3).
- Reppucci, N. D., Britner, P. A. & Woolard, J. L.(1997),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through Parent Education*,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Baltimore.
- Scott, D.(2009). “Think child, think family”: How adult specialist services can support children atrisk of abuse and neglect. *Family Matters, 81*, 37-42.
- Shonkoff, J. & Phillips, D.(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Smith, C. & Thornberry, T. P.(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4).
- Smith, M. (2006). What do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work professionally with children know about maltreatment and mandated report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8).
- Trenczek(2003). Within or Outside the System? Restorative Justice Attempts and the penal System, in Weiterkamp&Kerner(Eds.) *Restorative Justice in Context*.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y. *Child maltreatment 2007*(2009).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grave, L.(2000). Extending the Victim Perspective Towards a Systemic Restorative Justice Alternative, 255. In Adam Crawford & Jo Goodey (Eds.), *Integrating a Victim Perspective within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Debates*, Aldershot: Ashgate.
- Walgrave, L.(2004). Restoration in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31, 543–597.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rnham, M.(2005). *An Outside Chance: Street Children and Juvenile Justice—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
- Widom, C.(1998). Child victims: Searching for opportunities to break the cycle of violenc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7.
- Wolfe, D. A.(1999). *Child abuse: Implications for chil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Wright, M.(1992). Victim–offender mediation as a step towards a restorative system of justice. In H. Messmer & H.U. Otto(Eds.) *Restorative Justice on Trial: Pitfalls and Potentials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ternational Research Perspectives*.
- Wurtele, S., & Miller–Perrin, C.(1992).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Sharing the responsibility*.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Zehr, H.(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PA: Herald Press.
-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BZgA) (Hrsg.), Jugendsexualität 2010. Repräsentative Wiederholungsbefragung von 14– bis 17–Jährigen und ihren Eltern – Aktueller Schwerpunkt Migration. Ergebnisse der aktuellen Repräsentativbefragung, Köln, 195–200.
- Dahs(1995). Da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vom 28. 10. 1994–ein Produkt

- des Superwahljahres, NJW 48.
- Dreher/Tröndle. 47. Aufl., § 46a StGB, Rn. 3.
- Kerner, H.-J. & Hartmann, A.(200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Täter–Opfer–Ausgleich in der Entwicklung. Berlin. 4–7.
- Hassemer(1998). *Praktische Erfahrungen mit dem Täter–Opfer–Ausgleich – Befund und Konsequenzen –*.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Dieter Dölling u.a.,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Forum Verlag Godesberg·Bonn. 418.
- Häuser, W., Schmutzer, G., Brähler, E., & Glaesmer, H.(2010). Misshandlungen in Kindheit und Jugend: Ergebnisse einer Umfrage in einer repräsentativen Stichprobe der deutschen Bevölkerung. *Deutsches Ärzteblatt, Jg. 17*, 287–294.
- Loos(1999). *Bemerkungen zu §46a StGB*. In Thomas Weigend/Georg Küpper(Hrsg.). Festschrift für Hans Joachim Hirsch zum 70. Geburtstag, De Gruyter·Berlin u.a. 861.
- Meier(1996). Täter–Opfer–Ausgleich und Wiedergutmachung im allgemeinen Strafrecht. JuS 36, 441.
- OLG Stuttgart NJW 1996, 2109.
- Rössner/Bannenberg(2002). *Das System der Wiedergutmachung im StGB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Auslegung und Anwendung des §46a StGB*, in: Eva Graul/Gerhard Wolf(Hrsg.), Gedächtnisschrift für Dieter Meurer, De Gruyter·Berlin. 171–172.
- Rössner/Klaus(1998). *Rechtsgrundlage und Rechtspraxis*.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Hrsg.). Dieter Dölling u.a.,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Forum Verlag Godesberg·Bonn, 49–65.



부 록

부 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ID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성폭력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관 유형별로 1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사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연구자 : 이유진 박사 (02)-6913-8920

강지명 박사 (02)-6913-8923

※ 다음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칸이 모자랄 경우 늘려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연령 구분없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주십시오)

2. 현재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적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3. 현재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적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4.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여성아동센터 통합 추세의 문제점 및 해버라기 아동센터와 같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필요성 포함)

5. 현재 남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현재 운영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6.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연대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지역연대 구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공동체는 무엇이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기관이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7.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과정에서 가정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와 개입정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8.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과 개입할 수 있는 타 기관의 유형 및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9.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성인가해자에 대한 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해결의 중심에 두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에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자-피해자의 화해나 조정 등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 사건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0.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건의 및 요구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11. 조사대상자 특성

- 1) 성별
- 2) 연령(만)
- 3) 직위
- 4) 근무경력(년)

2. 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ID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성폭력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연구자 : 이유진 박사 02-6913-8920 강지명 박사 02-6913-8923
조사대행기관 : 마켓비전 컨설팅그룹	실사담당자 : 박나영 02-515-7114 회신용이메일 : epoll@daum.net 회신용 팩스 : 0505-810-3291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①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②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③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④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기타의견 :	

2. 다음 문항은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 는 편	보 통	있 는 편	매우 있 음
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② 사건조사 및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③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④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연계망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①	②	③	④	⑤
⑦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산부인과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⑧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①	②	③	④	⑤
⑨ 피해자 자립·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취학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⑩ 가해자인 친족과 분리된 생활환경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3-1. 13세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3-2.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
- ② 아동·청소년·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
- ③ 아동·청소년·여성 성폭력 및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시설 운영
- ④ 기타의견 :

4.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시청 및 구청 등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 주도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관 주도 유지 ② 민간 주도로 재구성

4-1. 민간 주도로 재구성한다면 지역연대의 허브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관련기관 ② 지역아동센터
- ③ 위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 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건강 관련기관 ⑥ 주민자치위원회
- ⑦ 기타의견 :

4-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4-3.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4-4.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4-5. 다음 문항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①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② 실무자 교육이나 모임을 통한 지속적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③ 서비스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 논의구조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④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 조정	①	②	③	④	⑤
⑤ 아동, 여성, 가정, 학교 등 대상을 달리하는 분과회의 개최	①	②	③	④	⑤
⑥ 구청에 성폭력 전문가 배치하여 시청보다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⑦ 학부모 대표 및 피해아동 부모 대표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⑧ CYS-Net이나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관련단체와의 역할 중복문제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⑨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직능단체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5. 다음 문항은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한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①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② 아동·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법적 권한 강화 및 친권박탈과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③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④ 비가해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⑤ 피해아동의 탄원서가 법적효력이 없도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가족치료사의 가족상담 및 현 직원에 대한 가족개입 훈련	①	②	③	④	⑤
⑦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의 경제적 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합적 원스톱 체제로 구축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6. 다음 문항은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① 신고의무자는 피해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철저 이행 및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숙지	①	②	③	④	⑤
② 아동·청소년의 피해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지양 및 정확한 정보 전달	①	②	③	④	⑤
③ 피해 아동·청소년 및 부모 심리치료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④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교육기관을 떠나는 일 방지 및 피해아동·청소년 중심의 사건 처리	①	②	③	④	⑤
⑤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피해 예방	①	②	③	④	⑤
⑥ 위센터와 교육청의 개입	①	②	③	④	⑤
⑦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⑧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①	②	③	④	⑤
⑨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적 처벌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⑩ 사건발생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 및 처벌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7.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성인가해자에 대한 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해결의 중심에 두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에는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자-피해자의 화해나 조정 등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이 사건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7-1. 다음 문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이념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복	①	②	③	④	⑤
② 가해 학생이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③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④ 피해 가해 학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⑤ 가해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상담·지도하고 선도 및 재활 치료	①	②	③	④	⑤
⑥ 사법체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⑦ 피해자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사건 해결과정에 가해자의 사과 유도	①	②	③	④	⑤
⑧ 화해과정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⑨ 가해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8.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치우하고 있습니까?

- ① 아동(13세 미만) 치우 ② 청소년(13세 이상-19세 미만) 치우 ③ 아동·청소년 모두 치우

8-1.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성아동 또는 남성청소년 전문기관
 ② 남성아동 또는 남성청소년 치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③ 남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
 ④ 기타의견 :

9. 정부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개를 선택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 ② 성교육 미흡 ③ 취약계층 증가
 ④ 지역 공동체의 해체 ⑤ 음란물 등 유해환경 증가 ⑥ 왜곡된 성문화
 ⑦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미흡 ⑧ 신고율 증가
 ⑨ 기타의견 :

10. 다음 문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들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대책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 는 편	보 통	있 는 편	매우 있 음
① 성교육	①	②	③	④	⑤
②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③ 성폭력 상담	①	②	③	④	⑤
④ 보호시설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⑤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①	②	③	④	⑤
⑦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①	②	③	④	⑤
⑧ 전자발찌제도	①	②	③	④	⑤
⑨ 화학적거세제도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11. 다음 문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안함	별 로 안 함	보 통	안 간 의 함	매우 의 함
① 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자유형 부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②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③ 예비부부 및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④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의 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응급키트 과일링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기관 분리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⑦ 성폭력 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⑧ 성폭력 관련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⑩ 가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명령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 감사합니다 ◆

3.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지

ID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관한 조사

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면접조사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신상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1.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3.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면접대상자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6. 그 밖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7. 면접대상자 특성

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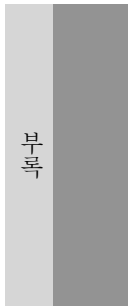
2) 연령 : (만 세)

3) 현재 하고 있는 일 : ① 학과교육 ② 직업교육 ③ 기타()

4) 피해자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5) 피해자 연령대 : ① 13세 미만자 ② 13세 이상 19세 미만자 ③ 성인

6) 피해자와의 관계 : ① 모르는 사람 ② 아는 사람 ③ 가족



4.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ID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관한 조사

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면접조사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신상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1.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3.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오.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면접대상자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6. 그 밖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7. 면접대상자 특성

- 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2) 연령 : (만 세)
- 3) 현재 하고 있는 일 : ① 학생 ② 취업 ③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 4) 가해자 연령대 : ① 19세 미만자 ② 성인
- 5) 가해자와의 관계 : ① 모르는 사람 ② 아는 사람 ③ 가족



5. 피해아동·청소년 부모 면접조사지

ID

--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관한 조사

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면접 조사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신상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1.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3.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면접대상자 자신이 받고 싶은 도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6. 그 밖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7. 면접대상자 특성

1) 성별 : ① 부 ② 모

2) 연령 : (만 세)

3) 학력 : ① 대졸이상 ② 고졸 ③ 중졸 ④ 초졸 이하

4) 현재 하고 있는 일 : ① 직장생활 ② 가정주부 ③ 무직

5) 가정의 경제적 수준 : ① 상 ② 중 ③ 하



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조사지

ID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우수사례 조사

조사목적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 없이 함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나간다는 공동체의식이 있다면 흉악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추천받은 전국 6개 지역연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례조사입니다.

1. 운영현황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운영내용 개관(간단하게)
- 전체 운영내용 중에서 아동 성폭력 관련 운영내용(상세하게)
- 아동안전지도 내용소개

2.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안전망 구축에 있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해당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평가 포함)

3. 현재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안전망 구축에 있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및 향후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관

4.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남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여부 포함)

5.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의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Harassment I : How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mplement community restoration with regional solidarity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introduce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as a measure for sex offenders of children and youths as well as the victims.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stud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 (7 person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484 persons for questionnaire survey), interview survey (14 persons) and case research (6 regions) were perform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pecialist investigation on opinion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in preventive policies against sexual violence on children and youths was education and promo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hile plac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intende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was also the most important in victim support policies. The most effective measure for agencies against sexual violence was provisio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o victims. They agreed positively tha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and ones for children under 13 to 18 age group are needed, and that regional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female · children should be extended to villages in smaller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Interview survey showed that not a few victims among children and youths were investigated at schools or transferred to agencies not associated with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later to Sunflower Centers, which resulted in inflicting secondary damage.

Child and youth victims as well as sex offenders expressed high demand for confidentiality. They also expressed high demand for economic support, especially those from single-parent families because their fathers or mothers had to stop working because of the uneasiness with their children.

Case research showed that safety maps developed by the regional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female · children were not used often enough within the regions. For more effective progress of the projects being operated by various regional solidarity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they should be extended to smaller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Based on su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ies were proposed: First, a plan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 and youth victims should be made. There should be a close observation on long-term aftermath of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reatment and counseling, an economic support for their families,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by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detailed case-by-case guidelines as to how those with legal obligation to report should act. I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male children and youths, an expansion of concern for male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In addition, s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and build infrastructures dedicated to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or those for youths under 13 to 19 age group, newly set up such agencies, and secure experts with an understanding of difference between child and youth victims.

Second, there should be a community recovery pla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Safety maps, which were developed by regional solidarity for protection of female · children, should be actively distributed by schools. For more active progress of the child and youth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jects, regional solidarity in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is needed. If existing facilities currently being operational in the community are to be used,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jects with regional solidarity can be easily extended to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A close partnership between national crime prevention agencies and communities should be formed, activities for bringing a change in actual sexual crimes and their victims should be embodied and operated by local residents themselves by stages, and major specific activities with each regional solidarity should be constantly evaluated every year to improve any existing problem.

Third, a restorative justice model for child and youth sex offenders and victims should be introduced. A fitting model for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gainst sexual violence is Family Group Conferencing. If the victim and offender do not want to meet face to face, a psychotherapy talk based on the victim/offender-oriented panel can be held.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중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의주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이명수·윤명주·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최보영·유준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김준홍·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김지연·최수미·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김희진·김준홍·김정희·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의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또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중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김현우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교정보호학과 · 교수)

◆ 자문진 ◆

- 서영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과장)
강정민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과장)
정미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문위원)
박정연 (창원해바라기쉼자리 · 소장)
심보영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 · 부소장)
부명숙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상담전문가)
양금선 (제주YWCA통합상담소 · 부장)
김안순 (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 · 팀장)
김선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 소장)
박노경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서기관)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총괄팀장)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 은문 / 감사 ◆

-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박석정 (강남대학교 법학과 ·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

연구보고 12-R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인 쇄 2012년 12월 26일

발 행 2012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9. 3. 18. 제385-2009-00005호

인쇄처 나모기획 전화 02)503-545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587-7 (93330)